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03호

2017. 4. 6.(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46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

[규 칙]

제3548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5
제3549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7
제3550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38
제3551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62
제355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3
제3553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74
제3554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8
제3555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	79
제3556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0
제3557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87
제355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9
제355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1

[입법예고]

제2017-861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4
제2017-86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95

◆ 고 시

제2017-115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97
제2017-1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07
제2017-117호 충정로3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08
제2017-1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17
제2017-119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118
제2017-120호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주택재건축사업부문]	119

제2017-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22
---	-----

◆ 공 고

제2017-828호 2017년도 제6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24
제2017-82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25
제2017-831호 서서울호수공원(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26
제2017-83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128
제2017-84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28
제2017-847호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129
제2017-848호 환경건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134
제2017-849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134
제2017-858호 20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134
제2017-859호 소방시설업 폐업 예정 공고	145
제2017-860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45
제2017-86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147
제2017-872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49

◆ 구 고 시

제2017-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199
제2017-47호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200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202
제2017-2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203
제2017-3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용산구)	207
제2017-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북구)	209
제2017-33호 양천리누리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은평구)	211
제2017-4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213
제2017-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214
제2017-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양천구)	217
제2017-21호 신정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고시(양천구)	219
제2017-50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220

제2017-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구로구)	223
제2017-26호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224
제2017-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송파구)	236
제2017-4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238

◆ 구 공 고

제2017-258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중구)	243
제2017-2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성동구)	244
제2017-4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성북구)	249
제2017-388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도봉구)	251
제2017-466호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서구)	253
제2017-467호 수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서구)	259
제2017-581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266
제2017-39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금천구)	267
제2017-4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268
제2017-4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관악구)	269

◆ 사업소고시

제2017-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71
제2017-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71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46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하역단체 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화물이나 수하물을 싣거나 내려서 정리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하역업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도매시장을 유지·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운영 주체 중에 하나임.
- 이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역단체의 “하역원 대기실”, “하역단체 근로자 사무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은 도매시장법인들이 시설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음.
- 즉, 현행 하역단체의 사무실 등 편의시설은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계약 면적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계약 면적 외에 추가 사용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하역업자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하역단체의 ‘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역단체의 ‘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본문 단서조항 신설).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548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5조 관련)

[별표] <개정 2017.1.19.>

☐ 시민소통기획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민봉사 담당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 신청접수 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다. 여권 등의 교부 라.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마.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바. 수수료 징수	○ 「여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청장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청장

☐ 평생교육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 소 년 담당관	1.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구청장

☐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융합 경제과	1. 대중문화예술평산업 발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평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 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평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말소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제납처분 포함) 아.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 자. 법 제41조 1항 제7호·제9호 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중문화예술평산업발전법」 제26조 ○ 같은법 제30조제2항 ○ 같은법 제31조제1항 ○ 같은법 제31조제2항 ○ 같은법 제33조제1항 ○ 같은법 제33조제2항 ○ 같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 제6호 및 같은조 제3항	구청장
민생경제과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4호·제5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생경제과	라.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소비자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구청장
	2.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	
	나.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 「대외무역법」 제5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5호)	
	다.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4호)	구청장
	3.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 「양곡관리법」(' 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구청장
	4.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생경제과	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마.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 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마.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바.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사.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제2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4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8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9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생경제과	아.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구청장
	자.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차.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같은 법 제8조	
	다. 의견 청취	○ 같은 법 제9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20조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구청장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2.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사무 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조) ○ 같은 법 제18조 제5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제18조 제6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제31호·제53호·제54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청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제17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택시물류과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접수 및 자격심사 2.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4.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이 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9.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9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 제4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1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청장
	12.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 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구청장
	12-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구청장
	12-3. 내압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 제3항)	구청장
	1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구청장
	13-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2)	구청장
	14.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4-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3호)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5-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6.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업무 중 검정신청 접수·검정 의뢰 등 검정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17.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의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품질시험 소장
	18.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구청장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다. 허가기준에 관한 항의 신고	○ 같은 법 제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타. 허가취소 청문 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하. 화물운송종사 자격에 대한 청문 2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 같은 법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차. 허가취소 청문 21.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운송사업·화물) 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취소 및 청문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 「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청장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구청장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역사문화재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단,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취소 다.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라. 개선부담금의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8조 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통매소 제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및 공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구청장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과	다.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구청장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차. 보고명령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카.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 등의 청문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3.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중 「대기환경 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과	가.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다목)	구청장
	나. 법 제44조 제7항 및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4조 제7항 및 제45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라목)	
	다.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마목)	
	라. 법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바목)	
	마.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4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 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5호)	구청장
	5.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표지판의 설치	○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마. 자료제출의 요구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사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나.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가. 설치승인(신고수리포함, 이하 같음) 및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등 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4.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구청장
생활환경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활환경과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8호)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9호)	
	차.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0호)	
	카.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1호)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구청장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나. 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 같은 법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다. 금고의 합병인가	○ 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라. 금고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74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마. 청문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 재 무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산관리과	1. 국유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 리 나. 대 부 다. 매 각 라. 등기·등록 마. 은닉재산 등의 신고접수 바. 은닉무주재산 환수	○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구청장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나. 서울시 소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다. 자치구 소관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법인 명칭의 변경, 관할 시·도 및 자치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관련사항(처분 및 편입 또는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이외의 정관변경 사항 라. 법인관련 지도·감독 - 설립후 재산이전 신고 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 접수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3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 같은 법 제32조	구청장
	마.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합·봉인 등의 처 분	○ 같은 법 제34조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같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아. 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제49조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구청장
	2.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호 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 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제2항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권한의 위임)제3항	
생활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 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 담당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구청장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구청장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구청장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구청장
	바. 시정명령·지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도로 및 구거에 한함)	○ 「국유재산법」 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축사업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외)	○ 「건축사법」 제23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4호) ○ 같은 법 제28조·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6호) ○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8호)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0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건축사사망신고 수리 사. 처분내용의 통지 2. 「항공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항공 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비행장 표점으로 부터 반지름 15km외의 지역에 한함) 3. 승강기 검사업무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항공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청장 구청장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호)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방지의 지정 나.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의 시행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라. 사방사업의 시행	○ 「사방사업법」 제4조 ○ 「사방사업법」 제6조 ○ 「사방사업법」 제20조 ○ 「사방사업법」 제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바. 공무원의 조사 등 사. 손실보상 및 보상금의 결정 아. 수익의 귀속 자.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 제7조의 2 ○ 「사방사업법」 제9조 ○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 「사방사업법」 제17조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다. 법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희석 처리에 관한 인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제1항 제8호)	구청장
	사.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명령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제1항 제9호)	
	아.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 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제1항 제10호)	
	자.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제1항 제11호)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제1항 제12호)	
	카. 법 제44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제1항 제14호)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 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81조 제1항 제15호)	
	하.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 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81조 제1항 제16호)	
	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 행령 제81조 제1항 제17호)	
	너.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 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60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더.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보 고명령·자료제출 요구·출입·채취·검 사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81조 제1항 제23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러.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4호)	구청장
	머. 법 제72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5호)	
	버.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6호)	
	서.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27호	
	어.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제1항 제28호	
	저.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9호	
	처.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 제1항 제30호	
	커.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 제1항 제31호	
	터. 배출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 제1항 제32호)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이행여부의 확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다. 이행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라. 사업장 등에서의 출입·조사	○ 같은 법 제15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구청장
	마. 자료 및 조사결과 의 공표	○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 「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라목)	
	마. 과오납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바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관리과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 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 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청 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아. 하천관리원의 임명 자.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 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에 한함) 차.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 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함) 카.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 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 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타. 허가수수료의 징수 (구청장 또는 한강사 업본부장이 허가하는 사항에 한함) 파.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 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 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타목) ○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차목)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거목)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2호)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2. 소방용 기계·기구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에 재위임 된 사무 중 서울시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사무를 일부 환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위임사무 일부 환수

◆ 서울특별시규칙 제3549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 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관된 자치법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규칙에 기능 조항 삭제 (안 제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0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보조자"란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

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승소"란 시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주관한다. 다만, 법률지원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고려하여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주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시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하고,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별도로 지정한 사건(이하 "소송주관부서 별

도지정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에 대한 응소·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반소·제소 및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한다.

⑥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소방침

-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와 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 바. 접수받은 소장
-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 마. 소송수행자등·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 바. 전심 판결문
-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 나. 청구취지
-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 마. 소송수행자등·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를 각 지정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 또는 후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소송수행자등 : 소송주관부서의 사무관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 2. 소송보조자 : 각 소송지원부서의 사무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 하급자)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 ③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법률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송수행자와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1.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3.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 ⑤ 시장 등과 그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입회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판결 확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패소원인 분석표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등 참석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소송대리인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송방침 결정, 서면제출 등의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수집, 제출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경우의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또는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가지급금 지급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반환가능성, 제12조제3항에 따른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 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 의한다.

제4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판결금(특별회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별도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다수 사건에서 유형적이거나 반복적 처분이 있었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처분으로 유사 소송이 계속되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재처분,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모순, 결함, 불비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19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0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제2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을 받아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2. 당해 공무원이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제25조(중재사건의 수행) 시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행정심판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31조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2.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또는 중재사건
3. 기타 특별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한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30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5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어 위임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급할 수 있다.

⑥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제1항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까지 산정하여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중요소송 지정사건) ①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단,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1억원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심급별로 이미 지급한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물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④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30억원으로 본다.

⑤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이상 승소 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⑥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의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재판정 확정시에 5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1.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6%, 8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8%
2. 중재철회 또는 합의로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5%

제9장 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

제32조(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과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결정
2. 법률지원담당관이 상정하는 사건에 관한 화해 및 조정, 상소포기 등 중요사항의 결정
3.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4.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특별승소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
6.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7. 그 밖에 시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조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및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2명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송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송무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소송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3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소송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시장 등이 소가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송무취급 공무원
- ② 포상금은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심급별로 지급한다.
1. 소송보조자 : 소송사건 1건당 1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보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액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2.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소송수행자등 : 소송사건 1건당 15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자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액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3. 법률지원담당관 소속의 소송수행자등 및 송무취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호, 2호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가. 소가 3,000,000원 이하인 사건
 - 나. 도로구상금 소송, 운수과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시장이 포상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5. 포상금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소가 500,000원 이하 사건
 - 나. 소취하(상소취하 포함)되어 3개월 미만에 종결된 사건
 - 다.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③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에 대하여 소가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는 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송사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 진행사항에 따른 보고 관련
4. 소송 결과 조치의 이행사항
5.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재정에 영향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사전협의 및 직무수행 규정 등 위반)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등 직무수행 규정을 위반하여 소송사건의 패소 또는 패소범위 확대가 우려되거나, 실제 패소하거나 패소범위가 확대된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자치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미리 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서울특별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고한 소송사건에 참가여부를 검토한 후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사건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제39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나. 기타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1,000,000 200,000 400,000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또는 인낙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감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	1,5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0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3.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000,000 7,000,000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 5,000,000 7,0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기타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하되, 본안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급함
 4. 제28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입료 등은 행정소송사건에 준하여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과 ○○○(주담당),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2. 당 사 자 원고
 피고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월 일

원(피) 고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00법원(제○○부)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20 드 (즈) (담당재판부: 제 단독)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 - 이 메 일 주 소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간단하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 ○ 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 '에, 피고의 경우에는 ' (피) '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서울특별시(장)는

주소 :

성명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
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
권 포기 (7)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8)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집행문 부여신청, 송달증
명원 및 확정증명원 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 울 특 별 시 (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시장 ○ ○ ○

위임인 서 울 특 별 시 장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4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패소원인				
패소원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증거멸실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소송 수행 잘못	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주장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타				
제 안 사 항				

※ 패소원인 구분은 해당란에 “○” 표시

[별지 제5호서식]

소송 진행 사항 보고서

사건번호	1심		사건명	
	2심			
	3심			
원고			피고	
소송물 가액			공동소송 특이사항	
소송수행자			지원부서 소송보조자	
소송대리인				
변론기일			다음기일	
소송 진행 상황				
구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입증방법
원고				
피고				
재판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지원부서 협조요청 및 지휘사항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인 (원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 (원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청구인 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금액 [확정금] 金 원정
가집행선고금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판결서正本(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간역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甲(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에 즉시 변제할 것과,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서울특별시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공무원 甲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송수행업무 통합에 따른 부서별·담당자별 역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업무 통합에 따른 역할 변경 사항 반영

-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주관부서 변경, 소송지원부서 신설(안 제3조)
 -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음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응소 등 방침 수립(안 제6조)
 - 예외적으로 제소 방침의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서 방침 결정
- 소송수행자, 소송보조자 등 지정 관련(안 제7조)
 - 소송수행자 :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2명이상
 - 소송보조자 : 소송지원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2명이상
- 판결 확정 이후의 주요 조치사항 구분(안 제16조, 제17조)
 - 소송주관부서 : 소송비용 추심 및 지급,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등
 - 소송지원부서 : 판결금 등 추심 및 지급, 공탁금 회수 등

나. 소송수행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 세분화

- 소송수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조·항 체계 조정
 - 소송 주관부서, 소송수행 방침결정, 수행자 등 및 대리인 지정, 역할지정, 소송 결과 조치, 중요소송 지정, 소송심의회 운영 등
- 현행 6개의 장별 규정을 10개의 장으로 구성 체계 세분화
 - 총칙,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직무 관련사건,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소송비용의 지급, 소송심의회, 보칙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사항 반영

- 소송수행 중 중요사항 결정 시 소송심의회 심의 결정을 통하여 소송수행자의 부담경감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2호)

라.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판결금 등 지급 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활용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안 제17조)
 - 판결금 지급의 시급성 등을 고려,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 소송수행 중 자료제출 지연 등 직무수행 규정 위반 시 조치(안 제37조)
 -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패소범위 확대 또는 패소가 우려되거나, 패소한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안 제34조)
 - 소송업무 통합에 따라 소송보조자, 소송수행자등을 구분하여 지급

- 형사사건 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조정(안 별표1)
 - 착수금 일부 상향 및 승소사례금 규정 폐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게 용어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1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신청 및 지급기준 등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최초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

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의 신고)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째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반환·환수 처분 등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해

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포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수 등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포상금의 지급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

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시장에게 접수된 포상금 지급 신청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 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신고 내용

< 작성기준 >

－ 지방보조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입증서류 >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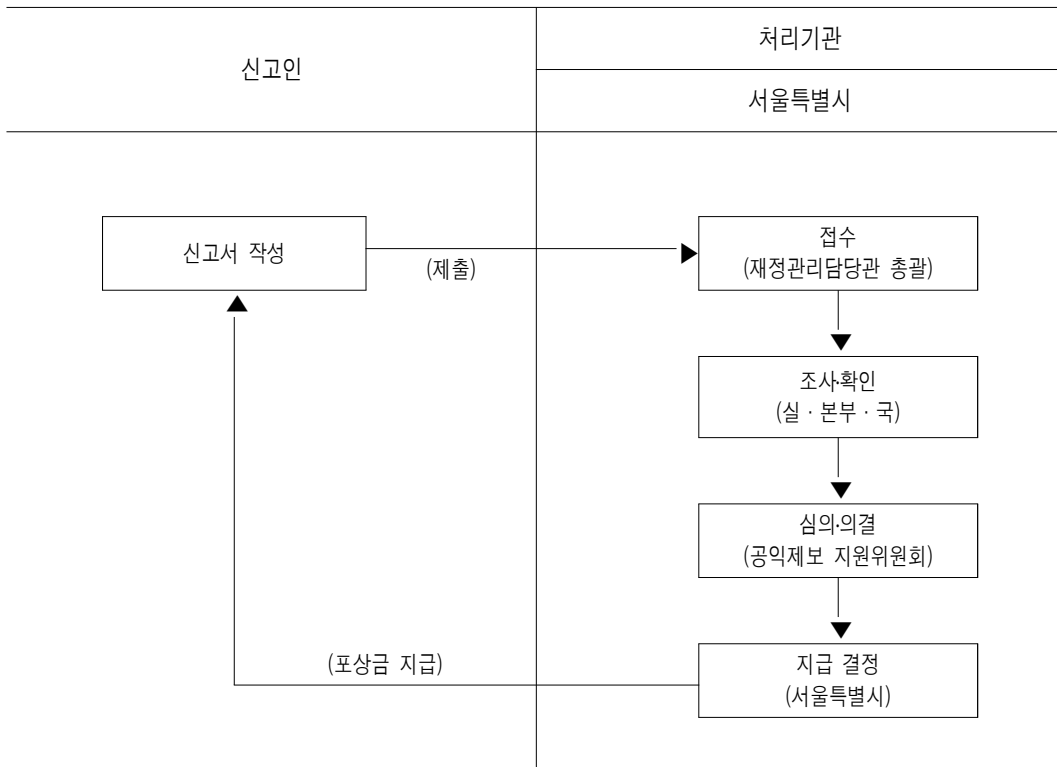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과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 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④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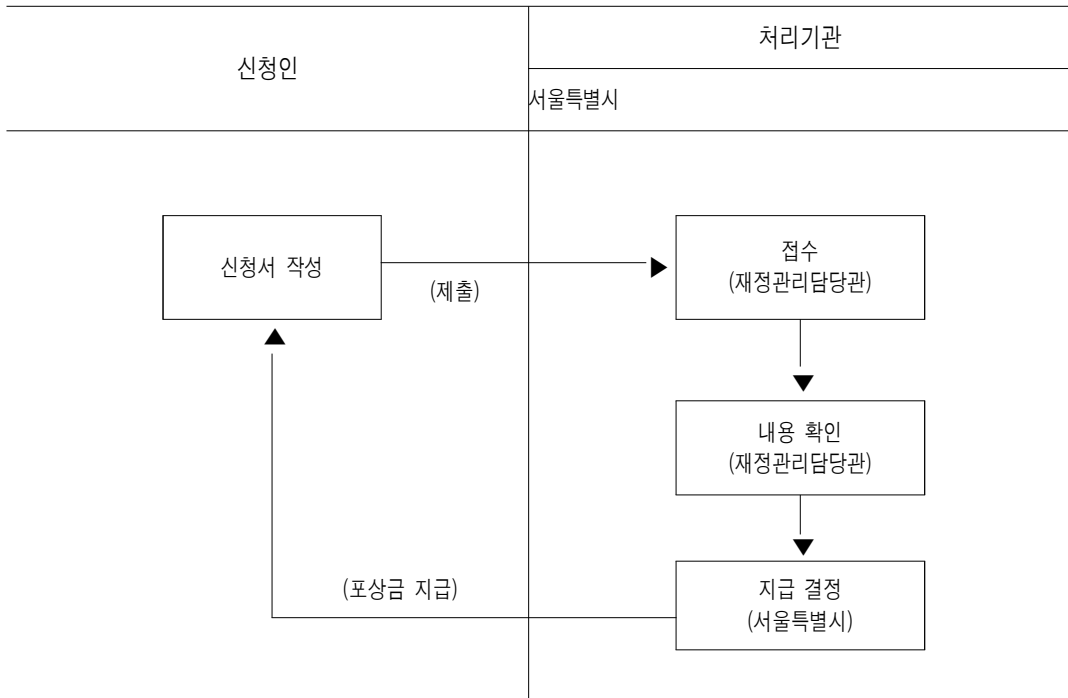
※ 구비서류(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에 따라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과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시에서 결정 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도)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

[illegible]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2015.12.2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의 개정(2016.6.28.)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신청 및 지급기준 등 (안 제3조 ~ 제8조)
- 다. 포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수 등 (안 제9조 ~ 제12조)
- 라.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3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 또는 준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주택 소유자”를 각각 “임대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겪고 있는 민간주택 이외 ‘준주택’ 거주 주거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거주 유형을 확대 필요

나. 준주택 거주 시민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2. 주요내용

가. 종래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었던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준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

나. 종래 ‘주택 소유자’에 한정되었던 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의 상대방을, ‘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준주택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의 상대방에 포함되도록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3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계획(평가 포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
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규모 및 내용

라.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장애인자립생활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아. 종합계획 이행에 따른 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향상에 필요한 사항

2. 실태조사

- 가. 중증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 나. 주거영역
- 다. 소득보장 영역
- 라. 고용영역
- 마. 활동지원서비스 영역
- 바. 자립생활 지원 영역
- 사. 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영역
- 아.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
2.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3.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②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자치구별로 한 개 이상의 센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수요 및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센터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센터의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기 공모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2. 종사자의 임금을 착취한 경우

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제5조(센터의 평가와 지도·감독)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또는 그 밖의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상시 지도·감독에 응해야 하며 평가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7조(인권교육 및 장애인자립생활교육)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UN)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4. 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훈련,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직업 활동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주거지원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및 주택 개조는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1.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 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
 - 다.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2. 주택개조 지원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 다.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으로 주택개조가 시급한 경우
 - 라. 주택소유주가 신청인과 다를 경우 주택소유주가 주택개조를 허락한 경우

제9조(세부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과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안 제2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구분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분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주기 규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 5년 마다 수립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 : 1년 마다 수립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규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추진전략 및 방향 등
 -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주거, 소득 영역 등
-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실시의 예외 사항 규정
 -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에서 규정된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 생략 가능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기준(안 제3조)

-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센터의 자격 규정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된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경비 지원에서 제외함(TF팀 회의 시 단체의 건의사항 반영)
-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준 및 지원 기간 규정
 - 지원 기준
 - ① 각 자치구별로 한 개 이상의 센터를 지원
 - ② 장애인자립생활 수요 및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지원 센터수를 조정
 - 지원 기간 : 3년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공모에 반영 가능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제재(안 제4조)

- 회계 부정,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등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

-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평가와 지도·감독(안 제5조)
 ○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 :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6조)
- 바.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안 제7조)
- 사.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지원 대상 장애인 규정(안 제8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4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한 건 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타 법령의 유상운송 금지 신고포상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처분건당 100만원에서 처분건당 20만원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5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가.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음
 나.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의 내용을 대신할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을 폐지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6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로, ““납세고지서 등””을 ““납세고지서 등””으로, “건수에”를 “건수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제3조”를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오백원 상당액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5백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1천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제1호에 따름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 등 납부할 세액의 차감

제3조제4항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우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
6.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

제3조제4항제7호(중전의 제5호) 중 “그 밖에 전자납세자”를 “전자납세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6조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번 호 :

유효기간 :

성명(법인명) :

위의 사람(법인)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자격증명사항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수혜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발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연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심의청구이유	
--------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 납세자(유공납세자)로 선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인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증빙서류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발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등록자번호	

주소(사업장) _____

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_____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 분	성 명	모범납세자 선발		서명 또는 인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발결과 통보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	
납세자 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심 의 결 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발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 거소 또는 영업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			
청구이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심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	
첨부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서울특별시

수신자

제 목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결정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모범납세자 자격심사 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청 구 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		
대 리 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		
심 사 결 정 내 용			

끝.

서울특별시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폐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함.
- 전자매체를 이용한 세금납부 활성화를 위해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확대 및 사용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적립액 차등(제3조제3항)
- 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방법 다양화(제3조제4항)
- 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 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별지서식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7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조 (목적)”을 “제1조(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를 “제2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 (비상임이사의 권한) ①공단의”를 “제3조(비상임이사의 권한) ① 공단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에 의해”를 “②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검직승인)”을 “제4조(검직승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제5조 (대행사업)”을 “제5조(대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자로 하여금”을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③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조 중 “제6조 (원가산출)”을 “제6조(원가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①조례”를 “①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공단이”를 “② 공단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원가”를 “③ 원가”로, “채 의뢰”를 “채의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 (이사장과의 경영계약)”을 “제7조(이사장과의 경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를 “② 제1항의”로, “매회계년도별”을 “매 회계연도별”로, “매회계년도 개시전”을 “매 회계연도 시작 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8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현재 부르는 명칭인 “서울시설공단”인데 반해, 조례 시행규칙상 명칭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문서, 계약서 등에 표기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며,
 - 현재 각종 간판,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안내문, 명함 등이 “서울시설공단”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명 변경 시에도 관련 비용 미발생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에 따라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 되어가는 추세임
 - 부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수원시설공단 등
- 또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란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명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제1조, 제2조, 제4조)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3)(가)에서 정한 입목축적 조사 및 산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호에 따르되 입목축적 비율 산출은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2 중 제1호가목(1)(가)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 활착된 입목축적을 측정하여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도 및 임상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7.1.1.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에 적용한다.

[별표 3] 입목축적 비율 산출방법(제10조 관련)

1. 입목축적 정의

개발대상 필지의 입목에 대한 수종, 수고, 가슴높이직경, 본수를 ha당 조사결과로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평균입목축적(m³) 적용 시 비율(100분율)로 산정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대상지 ha당 입목축적 산출

가. 대상지 입목축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나. 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대상지 입목축적을 ha당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면 ‘대상지 ha당 입목축적’이 된다.

3.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평균생장률 적용)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산출한다.

4. 입목축적 비율 산출

$$\text{입목축적 비율} = \frac{\text{대상지 ha당 입목축적}}{\text{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times 100$$

[예 시]

□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방법 예시(평균생장률 적용)

- 2012. 12. 6.까지 : 110.71m³(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그대로 적용)
- 2012. 12. 7. ~ 12. 31.까지 : 110.71m³ + (110.71m³ × 3.9%) = 115.03m³
- 2013년 : 115.03m³ + (115.03m³ × 3.9%) = 119.52m³
- 2014년 : 119.52m³ + (119.52m³ × 3.9%) = 124.18m³
- 2015년 : 124.18m³ + (124.18m³ × 3.9%) = 129.02m³
- 2016년 : 129.02m³ + (129.02m³ × 3.9%) = 134.05m³

※ 산출결과 값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방법 및 산출 방법 등을 개정 및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목본수도 조사방법과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입목축적 조사 방법과 산출기준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0조, 별표3)

나. 경사도 산정방법과 조사방법을 삭제함(안 제11조, 별표4)

다.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 해제방법을 개정함(안 별표2)

◆ **서울특별시규칙 제355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토,일,공휴일은 이용 금액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토. 일. 공 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 금액은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 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 용)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 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 3,000 2,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야영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		*1회 이용은 1박2일 기준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오토캠핑 1회당	18,000				
			중량캠핑숲 1회당	25,000				
			전기이용료 1회당	3,000				
	야영장 물품대여료		일반 야영텐트 1회당	5,000				
			중량캠핑숲 야영텐트 1회당	10,000				
			1인용 매트 1회당	1,00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 한다.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초과 시간당	6,500				
	강의실 대여료		1시간당	20,000				
*공원의 시설이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남 산 공 원	남산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환경친화적 차량(CNG,CNG하이브리드, 전기사용자동차) 또는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남산 차량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4,000		
서울 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어린이 대공원 · 서울숲	야외무대 이용료	주간 1회 2시간	100,000		◦공원이용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은 주간의 2배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
중랑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10,000 7,000 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불암산	더불어숲 (챌린지 로우코스)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10,000 7,000 5,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30인 이상) - 단체 할인 적용시 별도 할인 미적용 (코스연계 할인 미적용) ◦ 2개 코스 이상 이용시 10% 할인 ◦ 챌린지액티브코스는 터널메이즈와 짚코스터 또는 플라잉팩스로 구성되며 개별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음 - 터널메이즈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 짚코스터 또는 플라잉팩스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더불어숲 (챌린지 하이코스)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 6,000 4,000		
	더불어숲 (챌린지 액티브코스)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 6,500 5,000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15,000		○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 전기료 별도 ○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 추가 주차 시 별도 요금 징수
		오토/데크캠핑	25,000		
		캐빈하우스	30,000		
※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구분 ▷(11월~2월)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4:00 ▷(3월~10월) — 주간 : 09:00 ~ 19:00 야간 : 19:00 ~ 24:0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신규 조성되는 불암산 더블어숲, 초안산 캠핑장 이용료를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불암산 더블어숲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챌린지로우코스 이용료를 “어른 1회당 10,000원, 청소년 1회당 7,000원, 어린이 1회당 5,000원”으로 함
 - 챌린지하이코스 이용료를 “어른 1회당 8,000원, 청소년 1회당 6,000원, 어린이 1회당 4,000원”으로 함
 - 챌린지액티브코스 이용료를 “어른 1회당 8,000원, 청소년 1회당 6,500원, 어린이 1회당 5,000원”으로 함
 - 나. 초안산 캠핑장 이용료를 “일반캠핑(주차분리형) 15,000원, 오토/데크캠핑 25,000원, 캐빈하우스 30,000원”으로 함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1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는 한편,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부과의 취소 및 변경, 시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충당,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다. 고액채납액의 인계·인수, 채납처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2133-3356, FAX: 2133-1033, E-mail: 200905131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채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시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라.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체납액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마.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함 (안 제14조~제16조)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2133-3356, FAX: 2133-1033, E-mail: 200905131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5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8호(2015.12.3)로 결정(변경)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I.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외 5필지
- 면 적 : 6,735.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7년 3월 30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인번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 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110114-0194495
(주)효성	이상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110111-003049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포구 서교동	395	43	대	2,565.6	멀티 에셋 자산 운용(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100%	없음	-	
2		395	49	대	1,620.2						
3		395	54	도	126.6						
4		395	62	대	285.3						
5		395	63	도	65.1						
6		395	176	대	2,073.1						
계					6,735.9	-					

2) 지장물조서 : 별도 지장물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305,043	-	305,043	'87.2.4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6,735.9	-
변경 (신설)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6,735.9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6,735.9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4)와 마포구청 4층 주택과(02-3153-9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외 5필지
- 면 적 : 6,735.9㎡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시행자의 성명	대표자	주소	법인번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110114-0194495
(주)효성	이상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110111-0030497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19.11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6,496.44	96.4	임대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239.46	3.6	도로용지
합 계	6,735.90	100.0	-

※ 도로는 설치 및 조성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

5. 인구·주택수용계획

- 1) 수용인구 : 1,181인
- 2) 주택건설계획 : 973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17.92 TYPE	382	39.3	382	32.4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37.64 A TYPE	208	21.4	208	17.6	
	37.64 B TYPE	208	21.4	416	35.2	
	소 계	798	82.1	1,006	85.2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7.92 TYPE	88	9.0	88	7.6	
	37.64 A TYPE	87	8.9	97	8.2	
	소 계	175	17.9	175	14.8	
합 계		973	100.0	1,181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	10m	국지 도로	40	광(주)2-58 (양화로)	서교동 395-49	일반 도로	-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지 내 자연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도·광장 등의 포장면은 지양하며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을 실시하여 생태면적을 최대 확보, 비오톱 향상을 도모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 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탄소흡수림 조성

- 사업지의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구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305,043	-	305,043	'87.2.4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6,735.9	-
변경 (신설)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6,735.9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6,735.9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735.9	-	6,735.9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11.1	감) 3,211.1	-	-
준상업지역	3,524.8	감) 74.24	3,450.56	51.23
일반상업지역	-	증) 3,285.34	3,285.34	48.77

■ 결정(변경) 사유서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	10m	국지 도로	40	광(주)2-58 (양화로)	서교동 395-49	일반 도로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1)	·도로 신설 - 폭원 : 10m, 연장 : 40m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지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 역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신설

(2)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불허용도(변경)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 조서(기정)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준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불허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변경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준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주거환경 저해용도 도입을 불허함.

(나) 권장용도(변경)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기정)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전층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양화로변 업무기능 특성화지역
	1층 전면부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지하층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전지역

주) 1.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적은 제외)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

구분		권장용도	비고
변경	전층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1층 전면부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지하층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전지역

■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권장용도 중 숙박시설, 업무시설 제외

(다) 지정용도(변경)

■ 건축물 지정용도 결정조서(기정)

구분		지정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

■ 건축물 지정용도 결정조서(변경)

구분		지정용도	비고
변경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단, 지하1·2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설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

주)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지정용도로 결정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준주거지역(기준/허용/(상한)) : 250%/350%/(5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기준/허용/(상한)) : 200%/200%/(250%)이하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준용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시의 상한용적률 운용 체계 변경	• 기본용적률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680%, -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400%,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높 이	• 준주거지역 : 60m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m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m 이하 • 준주거지역(간선변) : 60m 이하

■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함.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높이기준은 80m 이하로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함.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정 : 인센티브적용 기준 A 적용(양화로변)
- 변경

사업조건 항목		내 용	완화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용	·공공기여율 16.9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 전체 구역면적(6,735.9㎡)에 대한 비율임.	기본용적률 541.59%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용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 주거 : 비주거 = 9 : 1 적용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화항목 변경 : 서교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 →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 기준을 준용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기정	변경
건축선	·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4m) ※남서측 및 북동측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확폭 (폭 2m→4m)	·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 남서측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 북동측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4m)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 함 ·양화로변에서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진출입 가능하록 일부 차량 진입 허용
공개공지	·양화로변 결절점 공개공지 위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	-

바) 공공기여 계획

구 분	면 적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 고 주)
공공임대주택	건축연면적 10,662.317㎡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019.05㎡	15.13%
기반시설(도로)	부지면적 239.46㎡	도로 설치 및 제공	239.46㎡	3.55%
공공시설 (공연장, 공공업무시설)	건축연면적 4,502.10㎡	구분지상권 및 부속토지	1,075.79㎡	15.97%

주) 전체 구역면적(6,735.9㎡)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기반시설(도로)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내수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
- 공사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

- 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 2) 사면재해
- 지하굴토 공사시 토압의 증대, 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흠막이를 실시토록 계획
 - 공사시 건축 슬래브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단계별 굴착 계획
- 3) 지반 및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포구 서교동	395	43	대	2,565.6	멀티 에셋 자산 운용(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100%	없음	-	-
2		395	49	대	1,620.2						
3		395	54	도	126.6						
4		395	62	대	285.3						
5		395	63	도	65.1						
6		395	176	대	2,073.1						
계					6,735.9	-					

- 2) 지장물조서 : 별도 지장물 없음
- 3) 토지취득 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해당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도 로	기점 : 광(주)2-58(양화로) 종점 : 서교동 395-49	239.46㎡	- 1개 노선 신설(일반도로) ※ 도로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
공공시설 (공연장, 공공업무시설)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건축면적 4,502.10㎡	- 위치 : 지하1층, 지상2층 일부

나)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도로 및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6,735.90	100.0	-	-	-
주택건설용지	6,496.44	96.4	자체사용	승인후	-
기반시설용지	239.46	3.6	서울시	승인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외 1
(대표자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외 1인)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서교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19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외 5필지
 - 나. 대지면적 : 6,496.44㎡
 - 다. 건폐율 : 58.50% (건축면적: 3,800.33㎡)
 - 라. 용적률 : 650.99%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42,291.04㎡)
 -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행복주택) 175세대/기업형임대(뉴스테이) 798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규 모 : 1개동, 지하 5층/지상 24층, 연면적 67,953.14㎡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소방법 등
6. 기타사항
 -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

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7호**

**충정로3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I.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정로3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번지 일원
- 면 적 : 5,412.3㎡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7년 3월 30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시행자 명칭 : (주)원석디앤씨
- 대표자 성명 : 김 지 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21, 201호 (동교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454216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	1	대	1,327.0	주식회사 원석디앤씨	마포구 연희로21, 2층 201호	1/1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7,320,000,000원		
2		72	6	대	2,590.2	주식회사 원석디앤씨	마포구 연희로21, 2층 201호	565/800	주식회사타이에 스저축은행	강남구 논현로 42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50,000,000원		
						김일운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83	233/800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4,040,000,000원		
						김재홍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83	1/400					
3		72	21	대	1,341.4	주식회사 원석디앤씨	마포구 연희로21, 2층 201호	1/1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7,320,000,000원		
4		116		대	78.1	김범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10동 1103호	1/1					
												주식회사타이에 스저축은행	강남구 논현로 422
5	115		대	75.6	김재홍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83	1/1						
계					5,412.3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	지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충정로 3가	72	6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	1979- 12-31	4,969.73	1	4	주식회사에 스디에듀	주식회사타이에 스저축은행	강남구 논현로 42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50,000,000원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4,040,000,000원 (채무자 김일운)
계								4,969.73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결정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번지 일원	5,412.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5,412.3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7. 관계 서류 열람방법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2)와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02-330-15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충정로3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번지 일원
- 면 적 : 5,412.3㎡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
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원석디앤씨
- 대표자 성명 : 김 지 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21, 201호 (동교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4542167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0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5,412.3	100.0	임대주택용지
합 계	5,412.3	100.0	-

5. 인구·주택수용계획

- 1) 수용인구 : 671인
2) 주택건설계획 : 499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16 TYPE	13	2.6	13	1.9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17 TYPE	17	3.4	17	2.5	
	35A TYPE	9	1.8	24	3.6	
	35B TYPE	10	2.0	27	4.0	
	소 계	49	9.8	80	12.0	
기업형 임대주택	15 TYPE	23	4.6	23	3.4	
	16 TYPE	56	11.2	56	8.4	
	17 TYPE	119	23.8	119	17.7	
	21 TYPE	96	19.2	96	14.3	
	28 TYPE	48	9.6	48	7.2	
	31 TYPE	23	4.6	23	3.4	
	35A TYPE	7	1.4	19	2.8	
	35B TYPE	6	1.2	16	2.4	
	36A TYPE	24	4.8	64	9.5	
	36B TYPE	24	4.8	64	9.5	
	39 TYPE	24	4.8	64	9.5	
	소 계	450	90.2	590	88.0	
합 계		499	100.0	671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획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문화집회시설 및 공공청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등	서대문구 총정로3가 72-1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1,671.83	건축물 기부채납 (위치 : 지하2층)
신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12.82	

※ 문화집회시설 및 공공청사는 설치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지 내 자연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도·광장 등의 포장면은 지양하며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을 실시하여 생태면적을 최대 확보, 바이오톱 향상을 도모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 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탄소흡수림 조성

- 사업지의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구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결정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번지 일원	5,412.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5,412.3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12.3	-	5,412.3	100.0
준주거지역	-	증) 5,412.3	5,412.3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412.3	감) 5,412.3	-	100.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대문구 총정로3가 72-1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412.3	-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해당 없음

다)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	총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1	서대문구 총정로3가 72-1번지 일원	-	증) 5,412.3	5,412.3	

(2)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단, 지하1·2층, 지상1층 비주거용도 설치가능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등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 창고시설 • 공장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결 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이하 • 상한용적률 : 474%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높 이	• 최고높이 90m 이하(건축물 부분)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사업조건 항목		내 용	완화내용	비 고
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 · 제공비율	· 공공기여율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포함)	기본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 비주거비율 제한 없음 - 대상지 지형 및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비주거 비율 확대 적용 주거 : 비주거 = 75 : 15 적용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 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사유
-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지 침 내 용
건축한계선	· 동측, 서측, 북측 : 건축한계선 3m · 남측 : 건축한계선 4m

바) 공공기여 계획

구 분	면 적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 고(주)
공공임대주택	건축면적 2,946.76㎡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397.26㎡	7.34%
공공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공청사)	건축면적 1,884.65㎡	공공시설(구분지상권) 및 부속토지	823.75㎡	15.22%

주) 전체 구역면적(5,412.3㎡)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내수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
- 공사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사면재해

- 지하굴토 공사시 토압의 증대, 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흙막이를 실시토록 계획
- 공사시 건축 슬라브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단계별 굴착 계획

3) 지반 및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	1	대	1,327.0	주식회사 원석디앤씨	마포구 연희로21, 2층 201호	1/1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7,320,000,000원
2		72	6	대	2,590.2	주식회사 원석디앤씨	마포구 연희로21, 2층 201호	565/800	주식회사티에 스저축은행	강남구 논현로 42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50,000,000원
						김일윤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83	233/800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4,040,000,000원
						김재홍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83	1/400			
3		72	21	대	1,341.4	주식회사 원석디앤씨	마포구 연희로21, 2층 201호	1/1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7,320,000,000원
								주식회사티에 스저축은행	강남구 논현로 42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50,000,000원	
4		116		대	78.1	김범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10동 1103호	1/1			
5		115		대	75.6	김재홍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83	1/1			
계					5,412.3	-					

2)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	지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충정로 3가	72	6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979- 12-31	4,969.73	1	4	주식회사 에스디에듀	주식회사티에스 저축은행	강남구 논현로 42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50,000,000원
												신한은행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4,040,000,000원 (채무자 김일윤)
계								4,969.73	-					

3) 토지취득 방법 : 구역면적의 83.1%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소유이며, 개인부지는 협의를 통해 소유권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충정로3가 72-6번지에 위치한 건물을 존치하고 잔여부지에 증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공공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공청사)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1,884.65㎡	위치 : 지하2층

가)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서대문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5,412.3	100.0	-	-	-
주택건설용지	5,412.3	100.0	자체사용	승인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서대문구 충정로3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주)원석디앤씨(대표자 : 김 지 우)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21, 201호(동교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0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번지 일원
 - 나. 대지면적 : 5,412.3㎡
 - 다. 건폐율 : 53.73% (건축면적: 2,907.90㎡)
 - 라. 용적률 : 463.81%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5,102.96㎡)
 -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49세대/민간임대 450세대),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바. 규 모 : 2개동, 지하6층/지상26층, 연면적 40,212.43㎡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소방법 등
6. 기타사항
 -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9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환경성, 안전성, 보행성, 자원성, 이용편리성, 지역성 측면을 검토하고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유형 : 역사문화형 보행자전용길
2. 지정대상 : 서울로7017 본선(본선 연결로 포함)

시설명	폭(m)	연장(m)	기점	종점
서울로7017	8.6~10.3	1,024	퇴계로 45	만리동1가 83

3. 소 재 지 : 중구 남대문로 5가 526일대
4. 운 영 일 : 2017년 5월 20일 부터
5. 지정필요성
 - 가.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자길이 신설된 사항으로, 보행랜드마크로서 향후 많은 유동인구의 집중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 나. 이에 ‘서울로7017’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6. 주요내용
 -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에 의거 ‘서울로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
 - 나. 지구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하는 차마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02-2133-2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7017 보행자전용길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0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주택재건축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1. 기본계획 변경내용

- ① 동대문구 4(미주아파트)구역 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위치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제기동 892-68	1.0	210%	50%	-	1	공동	8m도로
변경	제기동 892-68	1.0	210%	50%	-	1	공동	8m도로 폐지

※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단지내 도로(보차혼용통로)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금회 상정 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차혼용통로와 연결한 획지 내에서 보도(2m)를 추가 확보할 것

2. 지형도면 : 첨부 도면과 같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42) 및 동대문구청 건축과(☎2127-475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결정(기정)도]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0호('16.9.1.)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호('17.1.19.)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70호('17.3.16.)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열람공고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 명 칭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역고가도로(보행자전용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36-2 ~ 만리동1가 62 일대
- 규 모 :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역고가도로) : 폭 10.3m, 연장 810m
 -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폭 8.6m ~ 10.3m, 연장 214m
 -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 10,353.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바.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변경)

- 건축허가 의제 건축물 현황

연번	구분	명칭	용도	구조	건축개요				비고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1	기정	만리동 관리사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6.91m	279.5㎡	279.5㎡	
	변경	서울로 관리사무소			지상1층 지하1층		405.94㎡	478.96㎡	

연번	구분	명칭	용도	구조	건축개요				비고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2	기정	만리동 키오스크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3.78m	9.08㎡	9.08㎡	
	변경	도토리 풀빵							
3	기정	퇴계로여행자카페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7.30m	225.87㎡	225.87㎡	
	변경	서울로여행자카페					119.79㎡	229.72㎡	
4	기정	관광안내소 +7017기념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05m	13.53㎡	13.53㎡	
	변경	서울로 안내소							
5	기정	Shop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05m	13.53㎡	13.53㎡	
	변경	서울로 가게							
6	기정	꽃집+카페 (범의귀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5.00m	42.50㎡	42.50㎡	
	변경	수국 식빵							
7	기정	카페(목련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75m	16.12㎡	16.12㎡	
	변경	목련 다방				4.55m			
8	기정	전시장(아욱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75m	16.12㎡	16.12㎡	
	변경	서울로 전시관				4.55m			
9	기정	카페(장미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5.00m	41.48㎡	41.48㎡	
	변경	장미 김밥					41.84㎡	41.84㎡	
10	기정	정원관리체험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65m	16.12㎡	16.12㎡	
	변경	정원 교실							
11	기정	만리동여행자카페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4.40m	119.79㎡	119.79㎡	
	변경	7017 서울화반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관련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신청사 10층)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생사업반(☎ 02-2133-86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28호

2017년도 제6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17. 3. 23.(목) 14:00 ~ 16: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7건 7작품 (조각 6, 회화 1)
 라. 심의결과 : 승인 2작품, 부결 5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강동구 현대백화점 천호 (증축)	조각	Space-less	○		
2	송파구 I PARK	조각	사랑이 머무는 곳		○	- 건축물과의 부조화 - 작품표현이 진부함
3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	조각	문(門)		○	- 설치위치가 부적절함 - 작품성 부족
4	강남구 미왕빌딩	회화	물방울		○	- 설치위치가 부적절함 - 건물의 크기에 비해 작품의 수와 질이 부족함
5	송파구 송파농협 복합시설	조각	고향의 기억		○	- 브론즈 조형물과 메인 조형물의 부조화 - 부결사유가 반영되지 않음
6	송파구 퀸즈파크 9	조각	두 개의 기둥을 위한 앙상블 (Ensemble of two columns)		○	- 출입구에 설치된 조형물로써 안정성부족 - 부결사유가 반영되지 않음
7	영등포구 모아미래도	조각	‘여유의 정원’	○		* 권장사항 - 바닥에 위치한 석재조형물을 없애고, 브론즈형상을 강화하여 안정성에 주의 할 것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2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장순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일시 : 2016-11-10 04:41 장소 : 잠실대교 북단 (송파대로) 내용 : 경기90자2259(카고)차량 폭 0.48미터 초과	처분일 : 2016. 12. 26.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2. 28. 독촉일 : 2017. 3. 15.
박지영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일시 : 2016-11-28 14:35 장소 : 강변북로(독도아리수정수센터 방면) 내용 : 경기07고6926(크레인)차량 축하중 5.0톤 초과	처분일 : 2016. 12. 26. 과태료 : 15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2. 28. 독촉일 : 2017. 3. 15.
홍성화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대덕길	일시 : 2016-11-01 03:08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전남98사8378(트레일러)차량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6. 12. 26.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2. 28. 독촉일 : 2017. 3. 15.
이상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일시 : 2016-11-17 00:10 장소 : 신내동 내용 : 충남99사6145(트레일러)차량 길이 2.3미터 초과	처분일 : 2016. 12. 26.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2. 28. 독촉일 : 2017. 3. 15.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4. 3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31호**

서서울호수공원(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33호(2008.9.2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58호(2015.3.5.)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69호(2015.11.26)로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 된 양천구 신월동 149-20 일대 서서울호수공원(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서서울호수공원(문화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149-20번지 일대
3. 면 적 : 217,946㎡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따로붙임
5. 변경개요 :
 - 기존 다목적운동장 풋살장과 족구장등으로 시설변경(위치 : 신월배수지 정상)
 - 공원부지 교환에 따른 공원편입 지역 공원조성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300-5534),
양천구 문화체육과(☎2620-3412)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원(서서울호수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계		217,946.00	76,589.55	3	2,124.16	1,379.77	229	217,946.00	76,549.11	4	2,124.16	1,379.77	299	시설면적 감:40.44㎡	
	소 계	11,152.06	11,152.06				18	11,111.62	11,111.62				18	감:40.44㎡	
	도 로	8,277.00	8,277.00					(8,277.00)	(8,277.00)						
	광 장	2,875.06	2,875.06				18	(2,834.62)	(2,834.62)				18	(감:40.44㎡)	
조 경 시 설		11,350.14	11,350.14				3	11,350.14	11,350.14				3		
휴 양 시 설		9,835.95	9,835.95				18	9,835.95	9,835.95				18		
은 동 시 설		25,069.05	25,069.05	1	142.40	225.08	98	25,069.05	25,069.05	1	142.40	225.08	98	변동없음	
교 양 시 설		18,415.98	18,415.98	1	1,826.72	999.65	5	18,415.98	18,415.98	1	1,826.72	999.65	5		
편 의 시 설		766.37	766.37	1	155.04	155.04	8	766.37	766.37	1	155.04	155.04	8		
관 리 시 설							79						79		
녹지및기타		141,356.45						141,396.89						증:40.44㎡	
공 원 시 설 율	(76,589.55㎡ ÷ 217,946.00㎡) × 100% = 35.14%							(76,549.11㎡ ÷ 217,946.00㎡) × 100% = 35.12%							감:0.02%
공 원 건 폐 율	(2,124.16㎡ ÷ 217,946.00㎡) × 100% = 0.97%							(2,124.16㎡ ÷ 217,946.00㎡) × 100% = 0.97%							변동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3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2012. 9. 28. 字 조직개편이후 부서 회계직인 추가 사용

2. 직인명 및 등록일자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7.03.29	'12.9.28. 字 조직개편 이후 부서 회계직인 추가 사용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7.03.29	'12.9.28. 字 조직개편 이후 부서 회계직인 추가 사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4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임병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5, ***동 ***호(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1단지)	일시: 2017-02-13 08:44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차량: ***8329 내용: 제한 높이 0.14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47호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산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명단 별첨)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14개 업체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26개 업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4월 28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박정우 (02-2133-233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1320	노스이스트 항운(주)	박*희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11 한림타운 101동 ***호(가양동)	2016-08-24
2	1551	(주)엠케이해운	양*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 (마포동)	2016-07-24
3	2742	(주)재우라인	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 552, ***호 (목동, 대우마이빌)	2016-09-16
4	2791	준오션라인(주)	김*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 3층(성산동)	2016-08-30
5	2908	(주)메타폴라월드	조*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호	2016-07-10
6	3524	코리아컨테이너라인즈 주식회사	런*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종로타운 비 동****호 (종로1가)	2016-09-21
7	3869	(주) 에이치에스 지엘에스	김*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3길 * (당산동3가, 레드빌딩) *층	2016-08-31
8	3871	주식회사 피엘티로직스	강*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 (서교동)	2016-08-10
9	4122	주식회사 트래킹아이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 9층 (역삼동, 라인빌딩)	2016-07-31
10	4205	(주)링크브릿지 카고	신*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33, ***호 (서교동, 서교타워)	2016-08-24
11	4207	(주)휴먼앤로지스	유*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역삼동, 황화빌딩) 1114호	2016-09-17
12	4209	(주)케이씨지엘 에스	김*락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 503호	2016-09-24
13	4364	영통(주)	장*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 (서교동, 아내뜨빌딩) 202호	2016-09-02
14	4371	(주)미라클로지스틱스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2길 ** (청담동, 인성빌딩) 204호	2016-09-21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753	뉴웨이인터내쇼날 (주)	최*령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빌딩401호(장안동)	2016-11-01
2	856	삼협해운항공(주)	유*목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등촌동)	2016-10-05
3	959	(주)클라스킨코리아	이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빌딩 5층(한남동)	2016-12-31
4	1622	(주)제이앤비코리아	문*선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1 **빌딩 5층	2016-12-07
5	1802	케이에스물류(주)	김*식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4길*, 2층 (방배3동)	2016-10-09
6	1833	에스넷코리아물류(주)	이*종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회관403호(신수동)	2016-12-31
7	2055	(주)성심씨앤에어	김*일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서교동)	2016-11-24
8	2065	(주)파스코리아	왕*식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638 신도림에스케이뷰 10*동***호(신도림동)	2016-11-11
9	2078	월드링크로지스틱스(주)	박*영, 최*욱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 (여의도동, ***** 관) ***호	2016-12-11
10	2176	(주)동보그로베	이*환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1, **빌딩409호 (관수동)	2016-10-06
11	2447	(주)에스알티랜스	홍*우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빌딩제2신관202호(도화동)	2016-11-18
12	2539	(주)파인로지스틱스	박*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 (망우동, **빌딩) 401호	2016-11-03
13	2813	(주)스핀들로지스틱스	김*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 4층 (가양동, **가양빌딩)	2016-10-18
14	3105	주식회사 하이웰	위*택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38길*, **빌딩6층(역삼동)	2016-12-26
15	3187	㈜제티어스 로지스틱스	백*환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 (대흥동) 201호 (**빌딩)	2016-10-01
16	3875	주식회사 위드유물류	공*영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길 ** (서교동, **빌딩) 212호	2016-12-24
17	3898	주식회사월드카고	박*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에이동 ****호	2016-10-23
18	4041	(주)에스아이5	박*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 (홍제동, 조이빌딩) 7층	2016-11-05
19	4186	인니인베스트먼트(주)	최*선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층 (순화동, ***타워)	2016-11-25
20	4187	(주)무브스코리아	문*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302호(잠원동)	2016-11-16
21	4229	(주)에이블로지스	김*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 (당산동4가) 5층	2016-10-21
22	4250	(주)글로벌리프트	김*태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 (영등포동8가, 케이엔케이디 지털타워) ****호	2016-12-11
23	4251	(주)성광물류	이*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 (동교동)	2016-12-23
24	4381	(주)두웰로지스	박*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 (신도림동, 신도림1차푸르지오) 104-***호	2016-10-21
25	4387	(주)케이티그린로지스	김*국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2길 ** (삼성동, 명신빌딩) 302호	2016-10-30
26	4397	(주)덕방로지스틱	유*연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 (대림동)	2016-12-0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48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주)삼우에이앤씨
2. 대 표 자: 조만희(1968. 5.20.)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1,(사당동 1049-7)
(중앙대학교동창회관빌딩 2층)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58호
6. 등록취소일자: 2017. 3.29.
7.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4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헤브론스타 주식회사
2. 대 표 자 : 김형진(1975.11.15.)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5층
(역삼동, 금강빌딩)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7호
6. 등록일자 : 2017. 3.29.
7. 전화번호 : 02-417-932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58호

20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의 집수

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서울가꿈주택 사업
-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 ☐ 대상주택 : 단독 및 다가구주택 40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타용도 복합 건축물 제외)
- ☐ 사업내용 : 지역 내 서울가꿈주택단지 조성
 - 개별주택 :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
 - 기반시설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단체 신청시 우선 정비)

2. 모집개요

-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창신송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도4, 암사) 내 소재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소유주
- ☐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인 신청
 - (단체) 근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3인 이상이 집수리를 희망할 경우 신청
 - * 사업 대상자 선정시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
- ☐ 신청 접수기간
 - 단체 신청 접수기간 : 2017.04.06.(목) 09:00 ~ 2017.04.26.(수) 18:00
 - 개인 신청 접수기간 : 2017.04.27.(목) 09:00 ~ 2017.05.10.(수) 18:00
- ☐ 신청접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자치구 담당부서(우편 또는 방문 접수)

도시재생지원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로구 지봉로 5길 5(창신동 237) 3층	02-2133-8465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산구 신흥로 95-17(용산2가동 1-485)	02-2199-73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로구 가리봉동 111-5(가리봉동 현장소통마당)	02- 830-7855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성수동1가 13-445) 2층	02-2286-7790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북구 장위로 61(장위1동 주민센터 3층)	02-2241-2811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9, 2층	02-3140-8343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작구 성대로29길 53(상도4동 주민센터 3층)	02- 820-2885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동구 올림픽로97가길 57(암사1동 주민센터 2층)	02-3425-6042

-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 단체 신청
 - ① 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참여자 서명부, 구역현황 사진 포함
 - ② 개인 참여 신청서(개인) : 건물현황 사진, 집수리 예정 현황 사진 포함

※ 단체로 참여 주민 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에 한함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④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 신청

① 개인 참여 신청서(개인) : 건물현황 사진, 집수리 예정 현황 사진 포함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④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 신청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5 담당 김철기)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상담기간 : 공고기간 내

○ 찾아가는 주택 진단 상담서비스 : 집수리 닥터단 방문상담

- 신청 : <https://jibsuri.seoul.go.kr> (집수리닷컴)

* 집수리 닥터단 : 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개략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해드리는 전문가 집단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사업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1순위: 단체(단체 사업 참여 및 기반시설 정비 연계 사업 효과 큰 곳)

- 2순위: 외부(외부 개선 사업 효과 큰 곳)

- 3순위: 공사범위가 넓고, 집수리 타당성, 실현 가능성, 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 고려

3. 주요 지원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 까지, 최대 1천만원 이내

(단, 내부공사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보조금 지원 기준>

-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 ✓ 지원범위 :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공사(신축 및 증축(층수 증가)하는 제외)
 - ① 외부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 외단열, 방수, 외부 창호공사 등
 - ② 내부공사 : 도배, 장판, 실내창호(문), 내단열 등 내부 공사
- ✓ 지원조건 : 준공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건축가이드라인 준수
- ✓ 지원결정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 시공업체 :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받은 후 개별 선정

☐ 집수리 관련 전문가 운영(서울시 공공건축가 등) : 집수리 상담 실시

4. 선정결과 최종 발표

☐ 발표일시 : 2017. 5. 29(월) 예정

* 조기 선정 완료시 발표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음.

☐ 방 법 : 개별통보

5. 유의사항

- ☐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아래의 경우 사업비를 회수함>

-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
-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할 경우
-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 ①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02-2133-8465)
- ②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2199-7397)
- ③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
- ④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02-2286-7790)
- ⑤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02-2241-2811)
- ⑥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3140-8343)
- ⑦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02-820-2885)
- ⑧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02-3425-6042)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5)

※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	------	------

신 청 인 (대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사업내용	① 사업위치(도로명):	② 참여주택 수:
	③ 주요 집수리 내용 (간략히 작성)	
	④ 기반시설 정비 내용 (간략히 작성)	

상기 본인 외 주민 00명은 '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참여주민

서명부 제출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신청서(개인) 및 관련서류 각 1부 ※ 단체로 참여한 주민 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에 한해 제출
------	---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가꿈주택 참여자 서명부

연번	성명	주소	공사내용 (복수선택 가능)		서명
			집수리	골목길 정비	
1			0	0	
2					
3					
4					
5					
6					
7					
8					
9					
10					
11					
12					

※ 골목길 환경개선 : 외부 담장 개선 또는 도로 포장 등 골목길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
(공사예시 : 외부 담장 벽화, 도로 포장 등)

[별지 제1-2호 서식]

☐ 구역 현황 사진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2호 서식]

'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 신청서(개인)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신 청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주택현황	①소재지		②사용승인일자	
	③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④주택규모	• 연 면 적 : • 층 수 :
			⑤총 가구수/ 세입자 가구수	
공사 계획	분류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수선()		
	범위 (복수 선택)	① 외부공사(복수선택 가능) • 외단열() • 방수[②지붕(), ④벽(), ④지하()] • 조경() • 대문[②도색(), ④교체(), ④기타()] • 기타공사() ② 내부공사(복수선택 가능) • 도배[②1층(), ④2층(), ④지하(), ④기타()] • 욕실[②타일(), ④위생기구(), ④기타()] • 기타공사()		
		• 담장[②도색(), ④재료변경(), ④기타()] • 지붕() • 외벽[②도색(), ④재료변경(), ④기타()] • 외부창호[②1층(), ④2층(), ④3층(), ④기타()] • 장판[②1층(), ④2층(), ④지하(), ④기타()] • 실내창호[②1층(), ④2층(), ④지하(), ④기타()] • 설비 [②보일러(), ④난방(), ④상·하수(), ④기타()]		
금액	백만원(예상)			

상기 본인은 '17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1부
3.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자치구에서 조회 및 첨부)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미제출자는 직접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 건물 현황 사진

주택전면사진	주택측면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예정 현황사진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17년 서울가꿈주택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가꿈주택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에 동의함

2017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지원조건
※ 지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지원

- 건축 지침 사항,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주민협정안 결정시 동의
- 전문가 사전승인 (현장조사, 공사과정 및 준공검사)
-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
 - 계약체결시 장기계약 체결, 기간만료전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 약속
- 공사업체는 사회적기업(집수리분야), 마을기업(집수리분야) 등 시공업체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선정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전시홍보물 설치 협조
- 공사완료 후 1개월간 홍보관 활용 제공(해당 주택으로 선정시)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시 대상자(건물주)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가.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상기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위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이를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2017 . . .

위 동의인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59호
소방시설업 폐업 예정 공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17.2.10.자 법인 파산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직권으로 폐업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장

- 예정된 행정처분 : 소방시설업 폐업
- 업체현황

등록번호 (등록일)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 서초2002-23호 (2002.9.27.)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주)승창이앤씨	이억수	서울시 서초구 바우뚝로43길 56 (양재동)

-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의견제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0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153호(2016.11.3.)’로 열람공고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3.2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8,400	-	148,400	100.0	-
주거지역	소 계	139,086	-	139,086	93.7	-
	제1종일반주거지역	24,800	감) 22,145	2,655	1.8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6,903	감) 26,90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63	증) 48,387	60,750	4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91	증) 661	14,452	9.7	-
	준주거지역	61,229	-	61,229	41.3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314	-	9,314	6.3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성수동1가 685-429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145	•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실현을 위한 용 적률 체계를 마련하고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변경	성수동1가 668-69번지 일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903	
변경	성수동1가 656-551번지 일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661	•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나눔공 유센터 부지로 지역 내 필요한 주민공동 시설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열람기간 : 2017.4.6. ~ 4.20.(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다.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86),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2286-5561)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도서로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당 운송사업자
2. 예정된 행정처분
 - 등록취소 처분 대상 : 2개 운송사업자 [명단 별첨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처분근거 :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4월 21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최준영 (02-2133-2323)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부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첨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업자

(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상)

연번	사업면허	차량 번호	성 명	주 소
1	824*	서울32바92**	이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8길 1* (방화동)
2	4621*	서울32아45**	김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 (시흥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72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음의 서류를 2017년 3월 10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 ☐ 성 명 : 임동언 등 총 1,069명
- ☐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 “지방세 체납자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제출안내
-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귀하(사)의 인적사항 및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이 문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 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02-2133-3458)

붙임 : 지방세 체납자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공시충당 대상자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충당)사유
1	1	임등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4길 13 (사당동)	지방소득세	7	166,510,080	기타(보관기간경과)
2	2	장영수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12 106동 1406호 (부송동, 익산부승1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6	20,859,310	폐문부재
3	4	염영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2 301동 1302호 (자곡동, 엘에이치강남3단지)	지방소득세	11	71,945,210	기타(보관기간경과)
4	6	최향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79길 7 (면목동)	지방소득세	1	23,964,900	기타(보관기간경과)
5	7	조호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8길 46 809동 310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3	19,150,28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6	8	이기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21-9 104동 301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지방소득세	2	19,985,860	폐문부재
7	11	박영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나길 13-4 2층 (오류동)	지방소득세	15	16,416,54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8	12	김현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 68 (구로동)	지방소득세	5	23,558,270	이사불명
9	13	신현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 5 (신길동)	지방소득세	7	103,419,200	이사불명
10	14	박용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4길 62 102호 (상도동)	지방소득세	4	15,993,050	기타(보관기간경과)
11	16	이이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303호 (서초동, 두산베어스텔)	지방소득세	10	33,302,510	수취인불명
12	18	이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51-3 201호 (반포동)	지방소득세	11	58,612,750	수취인불명
13	19	안신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25 529호 (서초동, 서초리시온아파트)	지방소득세	6	85,552,260	수취인불명
14	20	이옥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0 1동 902호 (삼성동, 푸른솔아파트)	지방소득세	1	26,733,190	수취인불명
15	21	조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4 1506호 (청담동, 청담휴먼스타빌)	지방소득세	1	159,131,840	이사불명
16	23	이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71길 30-1 (세곡동)	지방소득세	3	65,846,070	수취인불명
17	24	이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4나길 8-1 402호 (가락동, 대경빌리지)	지방소득세	23	48,419,50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18	25	여상운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6길 7-2 (도선동)	지방소득세	2	20,508,260	이사불명
19	26	이준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38길 26-14 105호 (종동)	지방소득세	7	24,790,71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
20	27	이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월내로 78 (망원동)	지방소득세	10	39,256,060	기타(보관기간경과)
21	30	김용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6길 30 (독산동)	지방소득세	6	38,866,360	주소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22	32	박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동32길 22 (서초동)	지방소득세	1	39,054,120	주소불명
23	34	진구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리길 13-24 (신길동)	지방소득세	6	24,705,15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24	37	이기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16길 28 204호 (구의동)	지방소득세	3	48,669,400	이사불명
25	38	이숙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1길 10 402호 (미아동, 정원베스트빌)	지방소득세	5	19,195,640	기타(보관기간경과)
26	39	정재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9길 17 (중화동)	지방소득세	2	20,775,050	기타(보관기간경과)
27	42	박영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7-11 2층 (불광동)	지방소득세	6	31,058,180	폐문부재
28	44	김종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가길 54 (화곡동)	지방소득세	3	47,460,680	폐문부재
29	45	서양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5길 13-4 (봉천동)	지방소득세	2	21,926,930	기타(보관기간경과)
30	46	임계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31길 19 (봉천동)	지방소득세	1	64,513,140	기타(보관기간경과)
31	47	장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24 301호 (논현동, 동천테라스)	지방소득세	8	24,312,310	수취인불명
32	51	오문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16 403호 (삼전동, 임페리얼벨라스)	지방소득세	1	12,193,50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33	53	박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16 (가산동)	지방소득세	5	81,891,950	주소불명
34	55	장예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3길 40-5 (도봉동)	지방소득세	2	74,602,470	기타(보관기간경과)
35	56	정유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9길 24 (도봉동)	지방소득세	6	80,404,210	기타(보관기간경과)
36	61	백미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03길 36 102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4	39,946,740	수취인불명
37	62	임재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43길 38-5 (마천동)	지방소득세	3	23,195,180	주소불명
38	63	오현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7-23 (무교동)	지방소득세	8	57,415,850	수취인불명
39	64	양영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0길 48 201호 (창전동)	지방소득세	10	105,438,550	기타(보관기간경과)
40	65	김종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평대로 240 502동 610호 (반포동, 반포미도2차아파트)	지방소득세	7	43,529,600	수취인불명
41	66	최성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가길 10-17 A동 01호 (대조동)	지방소득세	3	42,179,360	폐문부재
42	69	박현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2길 15 302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3	23,703,78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43	70	송기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6길 39-5 (신길동)	지방소득세	3	77,927,92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44	71	고도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28-13 303호 (잠실동)	지방소득세	4	13,503,900	수취인불명
45	73	김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837호 (개포동, 대치타워)	지방소득세	3	15,724,750	기타(보관기간경과)
46	76	이상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 107동 1606호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	52,061,540	기타(보관기간경과)
47	78	강송자	서울특별시 관진구 자양로45길 100 (종곡동)	지방소득세	1	30,122,720	기타(보관기간경과)
48	81	이종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길 11 202호 (개봉동)	지방소득세	4	22,979,660	수취인불명
49	83	이승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303동 512호 (중계동, 목련아파트)	지방소득세	1	44,410,09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50	84	최승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길 268 8동 005호 (신림동, 해바라기주택)	지방소득세	2	54,932,460	기타(보관기간경과)
51	86	이인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1다길 21 (봉천동)	지방소득세	1	13,739,750	기타(보관기간경과)
52	87	임형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24-4 (고덕동)	지방소득세	1	76,417,990	폐문부재
53	88	김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 (풍납동)	지방소득세	1	35,596,830	수취인불명
54	91	김성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36길 5 1층 (오금동)	지방소득세	1	18,418,360	수취인불명
55	92	김영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길 51 (동소문동2가)	지방소득세	1	22,007,980	이사불명
56	96	정미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0다길 5 1층 (성수동1가)	지방소득세	1	202,911,960	기타(보관기간경과)
57	97	장성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5나길 43 b01호 (이문동)	지방소득세	5	29,766,440	수취인불명
58	98	김복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83 101동 1003호 (정릉동, 피오레아파트)	지방소득세	5	34,962,280	기타(보관반송)
59	99	이의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1057 501호 (종암동, 우전빌딩)	지방소득세	6	28,332,390	기타(보관반송)
60	100	채현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양로 638 102동 304호 (우이동, 성원아파트)	지방소득세	5	69,707,480	기타(보관기간경과)
61	101	조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6 612동 602호 (논현동, 어진마을원화꿈에그린아파트)	지방소득세	1	18,923,150	폐문부재
62	102	남궁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신월동)	지방소득세	5	16,253,630	수취인불명
63	103	권정현	서울강서구기양동10/4도시개발아파트515-1110	지방소득세	32	13,762,680	폐문부재
64	104	라기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길 15-53 (오류동)	지방소득세	8	106,198,11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65	105	이오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48번길 13-8 (학운리)	지방소득세	3	69,776,260	주소불명
66	106	송영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5길 14 1동 113호 (봉천동, 관악그린벨라 지층)	지방소득세	4	16,576,310	이사불명
67	107	이정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12길 19 2호 (신림동, 지층)	지방소득세	6	88,055,360	수취인불명
68	108	홍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재마을길 35-3 (내곡동)	주민세	5	31,789,32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
69	109	김국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2동 511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방소득세	6	62,854,420	기타(보관기간경과)
70	110	류옥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3길 26 B01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5	29,204,390	수취인불명
71	112	장원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16-43 201호 (삼전동)	지방소득세	2	16,499,150	수취인불명
72	114	노상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1 407호 (장안동)	지방소득세	8	21,087,820	기타(보관기간경과 후반송불필요)
73	115	이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26길 21-5 202호 (화곡동, 동도빌라)	취득세	1	31,507,040	폐문부재
74	116	강병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1길 4 (전농동)	지방소득세	9	78,661,270	이사불명
75	118	강한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5가길 41 209동 1210호 (상계동, 은빛아파트)	지방소득세	5	323,259,420	수취인불명
76	119	이현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16-1 201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2	16,807,590	수취인불명
77	120	최봉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계로3길 14-10 (도화동)	지방소득세	2	12,021,250	기타(보관기간경과)
78	121	신용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15 B동 1218호 (양재동, 트윈타워)	지방소득세	7	13,501,430	수취인불명
79	123	이기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12-11 102호 (마천동)	지방소득세	4	25,368,040	수취인불명
80	124	나친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93길 37 101동 1402호 (길동, 길동우성아파트)	지방소득세	2	48,542,260	폐문부재
81	125	정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5 (구로동)	지방소득세	8	90,626,710	이사불명
82	130	이청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꽃길 63 (방배동)	지방소득세	2	13,498,13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83	134	연구덕외1인(권희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리랑로5길 12-2 5층 (동소문동7가)	지방소득세	11	12,743,700	기타(보관반송)
84	135	강창균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3길 18 (미아동)	지방소득세	2	20,282,050	기타(보관기간경과)
85	136	하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슬샘로 159 105동 1604호 (미아동, 벽산라이프파크아파트)	지방소득세	1	13,990,100	기타(보관기간경과)
86	141	이현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49 A-503호 (서교동)	지방소득세	3	47,019,15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87	143	이영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7길 12 (구로동)	지방소득세	3	62,218,63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88	149	이귀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5길 17-5 (가리봉동)	지방소득세	1	13,751,90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89	151	지병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21 (성수동1가)	지방소득세	2	19,988,870	기타(보관기간경과)
90	154	강호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1 102동 2505호 (서초동, 레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지방소득세	1	27,451,830	수취인불명
91	155	허윙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34길 29 101동 2106호 (이촌동, 현대한강아파트)	지방소득세	6	75,621,760	기타(보관기간경과)
92	156	정영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89 (영등포동3가)	지방소득세	1	46,217,54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93	158	김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72 310동 905호 (아탑동, 탑마을)	지방소득세	4	15,534,260	수취인불명
94	160	고승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19-11 301호 (공릉동)	지방소득세	2	12,387,23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95	161	성건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22 103동 702호 (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지방소득세	1	14,968,270	기타(보관기간경과)
96	167	유계순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90번길 15 A동 203호 (검암동, 유원사인빌)	지방소득세	1	73,370,180	폐문부재
97	168	김영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2길 28 (미아동)	지방소득세	1	112,414,100	기타(보관기간경과)
98	169	강진모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가길 25 (미아동)	지방소득세	2	20,830,960	기타(보관기간경과)
99	170	최정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7길 43 506동 906호 (신원동, 서초포레스타5단지)	지방소득세	2	14,684,130	수취인불명
100	171	신유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5 101호 (화곡동, 노블리안시티)	취득세	1	107,907,440	주소불명
101	177	이명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33동 2303호 (잠실동, 트리지움)	지방소득세	1	26,727,080	수취인불명
102	178	강부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9-1 (팔판동)	취득세	8	12,681,000	폐문부재
103	180	서제환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63번길 25 102호 (문흥동)	지방소득세	9	26,364,89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104	182	우진수의 ¹ (우용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변영로9길 12-4 (자양동)	지방소득세	6	108,254,110	기타(보관기간경과)
105	183	황봉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55-2 5층 (식사동)	지방소득세	7	26,454,840	폐문부재
106	184	김승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113-8 (미아동)	지방소득세	7	62,869,700	기타(보관기간경과)
107	185	김은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70 101동 308호 (불광동, 북한산현영수자리아파트)	지방소득세	1	15,044,300	폐문부재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08	187	이명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39 302호 (갈현동)	지방소득세	5	22,902,290	이사불명
109	189	최응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440 (변목동)	지방소득세	3	15,240,750	이사불명
110	191	방태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60-5 B-2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2	38,748,430	기타(보관기간경과)
111	192	이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422길 125 (내곡동)	지방소득세	2	36,838,880	수취인불명
112	199	김춘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화로 210 402호 (원효로2가)	지방소득세	9	21,116,970	기타(보관기간경과)
113	201	정진홍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 32 501호 (묵동, 묵동공감데이파트)	지방소득세	1	60,837,790	기타(보관기간경과)
114	202	고유진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9번길 15 (철산동)	지방소득세	4	121,153,440	기타
115	203	홍경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길 25 202호 (방학동)	지방소득세	3	29,486,140	기타(보관기간경과)
116	204	김경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1길 25-8 101동 707호 (방학동, 극동아파트)	지방소득세	5	111,407,280	기타(보관기간경과)
117	205	박공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21 101동 204호 (상계동, 중계센트럴파크)	지방소득세	3	52,744,46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118	207	이철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길 12-4 1층 (불광동)	지방소득세	4	18,161,480	폐문부재
119	208	경원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5길 15 302호 (잠원동)	지방소득세	9	58,686,95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120	209	국찬우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119 (정교리)	지방소득세	7	34,723,600	수취인불명
121	210	정동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49 110동 516호 (수서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8	109,046,110	기타(보관기간경과)
122	213	김한승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6길 17 1708동 411호 (창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2	37,248,210	기타(보관기간경과)
123	214	인영식	서울특별시 중구 대신로36가길 26-12 (신당동)	지방소득세	3	19,019,280	이사불명
124	215	김주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80가길 34-3 (수유동)	지방소득세	4	55,494,760	기타(보관기간경과)
125	218	장항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46 101호 (목동, 수정빌라)	지방소득세	3	16,924,880	기타(보관기간경과)
126	219	전준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6리길 27 (공향동)	지방소득세	5	14,356,880	이사불명
127	220	최정욱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5길 132-17 101동 106호 (고척동, 삼익아파트)	지방소득세	2	30,755,720	수취인불명
128	223	김준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14호 (청담동, 현대리버스텔)	지방소득세	3	13,899,370	기타(보관기간경과)
129	224	관금옥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32 2동 107호 (도남동, 우주아파트)	지방소득세	2	32,519,82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30	225	김학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3길 17 (명일동)	지방소득세	10	26,082,450	폐문부재
131	229	문맹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91길 25 (구로동)	지방소득세	4	32,353,610	수취인불명
132	231	이재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4-5 426호 (자곡동, 강남 지엘홈B동)	지방소득세	5	52,316,550	기타(보관기간경과)
133	232	김승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7길 39-17 (성내동)	지방소득세	2	29,532,410	폐문부재
134	233	조한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4길 5-8 (영등포동5가)	지방소득세	4	13,616,94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135	235	김규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41동길 4 (감삼동)	지방소득세	2	15,095,080	기타(보관기간경과)
136	236	황욱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꽃4길 19-1 1층 (병배동)	지방소득세	3	27,694,680	수취인불명
137	237	오영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5길 23-1 (양평동4가)	취득세	7	122,483,670	주소불명
138	240	최성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2길 33 다동 202호 (구의동, 삼익빌라)	지방소득세	3	46,528,010	기타(보관기간경과)
139	241	조수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비104호 (신설동, 동광동대문베르빌)	지방소득세	3	86,582,48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140	244	왕필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지문2길 8 201호 (홍은동)	지방소득세	7	14,139,940	폐문부재
141	246	나상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4길 6-5 2층 (도봉동)	지방소득세	4	36,301,040	기타(보관기간경과)
142	247	최병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신두로175번길 26-18 (정발산동)	지방소득세	1	23,618,080	폐문부재
143	248	송운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지현2길 40-30 (월산리)	지방소득세	3	61,807,150	기타(보관기간 경과)
144	250	이수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13번길 36 (초읍동)	지방소득세	2	74,595,570	폐문부재
145	251	정익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03 501호 (문정동)	지방소득세	2	104,581,58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146	253	김형복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가길 5-7 201호 (역촌동)	지방소득세	2	23,689,810	폐문부재
147	254	박송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23 B동 202호 (평창동)	지방소득세	2	32,168,44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148	255	김순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북로 167 216동 1903호 (장안동, 래미안장안2차아파트)	지방소득세	2	16,339,660	수취인불명
149	256	신대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6 2층 (천연동)	지방소득세	2	51,241,090	이사불명
150	260	김재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2 306동 1201호 (자곡동, 엘에이치강남3단지)	지방소득세	2	20,989,170	기타(보관기간경과)
151	261	신순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7-23 (무교동)	지방소득세	11	24,340,06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52	262	서병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32 102동 1001호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지방소득세	10	51,225,070	수취인불명
153	264	정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22 (휘경동)	지방소득세	3	16,462,570	이사불명
154	265	이승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3길 35 214동 904호 (종암동, 래미안 세레니티)	지방소득세	3	23,230,540	기타(보관반송)
155	266	안정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46 301동 512호 (하월곡동,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지방소득세	28	13,034,360	기타(보관반송)
156	268	박진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107 102동 1503호 (신수동, 신촌삼익아파트)	지방소득세	1	61,228,980	수취거절
157	271	박선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레로18길 20 B02호 (화곡동)	지방소득세	2	25,456,710	폐문부재
158	272	신홍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2길 19-6 (독산동)	지방소득세	14	46,958,370	수취인불명
159	273	신동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리위길 161-14 101동 207호 (봉암리)	지방소득세	4	39,089,390	기타(보관기일경과반송불요)
160	275	이형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5 (서초동)	지방소득세	17	14,775,990	수취인불명
161	279	이승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38길 63-4 102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4	23,593,920	수취인불명
162	280	최낙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50동 1102호 (잠실동, 리센츠)	지방소득세	6	26,230,210	수취인불명
163	281	안려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13-5 102호 (석촌동)	지방소득세	2	29,197,930	기타(보관기일경과 반송불요)
164	283	임무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4길 44-2 2층 (삼선동5가)	지방소득세	3	13,794,820	기타(보관반송)
165	286	김태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5길 26-3 4층 401호 (갈현동)	지방소득세	4	25,795,790	폐문부재
166	288	강명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3길 5 (신길동)	지방소득세	1	22,132,70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일경과반송) [특수계])
167	289	신강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1다길 15 302호 (봉천동)	지방소득세	7	17,611,050	이사불명
168	290	박수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68길 66 (천호동)	지방소득세	2	40,927,890	폐문부재
169	291	김승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15길 34 (후암동)	지방소득세	4	53,098,040	기타(보관기일경과)
170	295	양상평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5길 9 (독산동)	지방소득세	2	42,340,780	기타(보관기일경과후반송)
171	297	박영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96길 11-3 (영등포동)	지방소득세	1	64,292,870	주소불명
172	299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3길 13-21 (암사동)	지방소득세	9	17,612,900	폐문부재
173	301	김동기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길 101-38 (선단동)	지방소득세	3	16,013,710	주소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74	302	김영광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2길 18-3 지층 (불광동)	지방소득세	3	18,201,240	폐문부재
175	304	유재병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21 (한남동)	지방소득세	4	43,315,430	기타(보관기간경과)
176	307	송명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32-9 301호 (삼전동)	지방소득세	1	43,944,57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177	308	홍순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928호 (신설동, 동광동대문베르빌)	지방소득세	2	29,582,490	이사불명
178	311	이재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3길 53 1층 101호 (대치동, 신한카드빌라)	지방소득세	1	128,577,020	수취인불명
179	313	정은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79번길 22 201호 (복정동)	지방소득세	1	12,842,810	기타(보관기간경과)
180	314	송육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70길 9-5 202호 (수유동, S.s클래스)	지방소득세	2	38,305,790	기타(보관기간경과)
181	315	임화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라길 9 (도림동)	지방소득세	1	13,176,87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세])
182	317	임태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1길 17 3동 408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	13,857,950	기타(보관기간경과)
183	319	박춘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5길 52 (상도1동)	지방소득세	5	13,681,300	기타(보관기간경과)
184	321	이명균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33	지방소득세	1	15,930,570	기타(보관기간경과 불요)
185	322	이종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1 101동 411호 (신내동, 성원아파트)	지방소득세	2	43,500,230	수취인불명
186	323	한민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25-1 1층 (사근동)	지방소득세	1	17,755,170	기타(보관기간경과)
187	324	서영문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211번안길 126 203호 (갈마동, 주은빌라)	지방소득세	1	16,306,020	폐문부재
188	326	노규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150 101동 411호 (고척동, 경남차이파트)	지방소득세	1	52,915,110	이사불명
189	327	김재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7길 16 1002호 (신대방동, 보라매아카데미타워)	지방소득세	1	20,043,430	기타(보관기간경과)
190	328	조유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13동 904호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취득세	1	34,061,830	폐문부재
191	330	이강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4길 17 1층 (목동)	지방소득세	2	13,213,050	기타(보관기간경과)
192	331	한찬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8길 10-31 401호 (방배동)	지방소득세	1	52,060,720	수취인불명
193	333	정성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2길 38 403호 (남현동, 우현빌리지)	지방소득세	1	17,460,930	기타(보관기간경과)
194	334	정문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20 423동 501호 (서현동, 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1	234,127,700	폐문부재
195	335	김갑동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36번길 87 305동 901호 (역동, e편한세상)	지방소득세	1	18,875,04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96	338	권혁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가길 4-0(목동)	지방소득세	1	32,777,980	기타(보관기간경과)
197	342	함대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0가길 14 (화곡동)	지방소득세	1	12,794,400	폐문부재
198	344	양광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908호 (광장동, 현대골든텔)	지방소득세	12	46,494,720	이사불명
199	346	김형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길 139 (도봉동)	지방소득세	14	43,526,080	수취인불명
200	347	김선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904동 1006호 (등촌동, 등촌9단지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5	19,710,300	폐문부재
201	350	김진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양곡2길 15 C동 206호 (금곡동, 백합빌라)	지방소득세	11	199,190,910	기타(보관기간 경과)
202	352	박경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신로8길 24 208동 1302호 (거여동, 거여2단지 효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	31,135,090	수취인불명
203	353	김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4길 45 201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3	28,312,450	기타(보관기간경과)
204	354	오창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길 21-1 (암사동)	지방소득세	6	22,291,680	폐문부재
205	356	김형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61-1 (길음동)	지방소득세	3	22,706,650	수취인불명
206	357	박노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길 61-22 203호 (내발산동)	지방소득세	6	19,040,450	폐문부재
207	360	신숙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94 413호 (잠실동)	지방소득세	23	18,032,64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08	366	정석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00-8 105동 1102호 (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	지방소득세	2	15,281,680	기타(보관기간경과)
209	368	이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37-20 (논현동)	지방소득세	4	50,785,920	수취인불명
210	369	문광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1길 19 201호 (공릉동)	지방소득세	2	29,351,92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211	370	유정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1길 51-19 4층 (성내동)	지방소득세	3	36,894,010	폐문부재
212	373	박정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50가길 34 (이문동)	지방소득세	1	20,341,07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213	374	김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8안길 13 4층 502호 (합정동)	지방소득세	1	20,404,970	기타(보관기간경과)
214	376	심민보	대전광역시 동구 신내로 1314-32 (남월동)	지방소득세	2	41,599,790	기타(3월16일보관후 반송불요)
215	377	신문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임로 71-1 4동 306호 (후암동, 미주아파트)	지방소득세	4	65,197,810	기타(보관기간경과)
216	378	김병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1길 51 (중곡동)	지방소득세	3	54,711,160	기타(보관기간경과)
217	379	이경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15 1006동 609호 (신내동, 신내아파트)	지방소득세	6	22,279,20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218	381	김종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68 864동 604호 (능동, 동탄숲속마을 자연에너지(아파트))	지방소득세	3	28,619,530	폐문부재
219	382	이호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가길 6-1 501호 (역촌동, 임창에버빌)	지방소득세	3	14,490,570	수취인불명
220	383	전영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2길 27 (신길동)	지방소득세	6	278,897,370	기타(수취인부재 (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221	384	심동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8가길 8 (사당동)	지방소득세	2	162,631,140	이사불명
222	385	강현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67 (망원동)	지방소득세	5	14,699,030	기타(보관기간경과)
223	389	윤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4길 16 422호 (역삼동, 성우스타우스 오피스텔)	지방소득세	2	21,055,140	기타(보관기간경과)
224	390	심상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4길 10 (미아동)	지방소득세	2	62,273,480	기타(보관기간경과)
225	391	장숙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인동1다길 8 102호 (송인동, 삼성빌라)	지방소득세	4	25,709,86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26	394	조성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73-3 (망월동)	지방소득세	2	152,267,200	기타(보관기간경과)
227	395	김민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19 4층 (가리봉동)	지방소득세	3	14,429,500	수취인불명
228	396	이선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화로 82-3 지층 102호 (용산동2가)	지방소득세	6	30,612,900	수취인불명
229	397	이광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1-19 401호 (송파동, 광현빌라)	지방소득세	1	15,427,20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30	398	홍영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20 102동 2005호 (인창동, 한진아파트)	지방소득세	4	39,372,150	폐문부재
231	400	이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0 (자양동)	지방소득세	1	34,232,890	수취인불명
232	401	강미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0 517동 305호 (중계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1	13,775,45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233	403	손옥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8라길 35 (화곡동)	지방소득세	3	89,355,910	폐문부재
234	408	이덕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길 133-15 103동 1904호 (개봉동, 개봉동아파트)	지방소득세	3	26,781,27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235	409	조시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 8동 84호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지방소득세	4	29,667,680	기타(수취인부재 (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236	411	김종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길 15 B02호 (일원동)	지방소득세	2	119,855,000	수취인불명
237	412	고정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43 A동 402호 (청담동, 삼호빌라)	지방소득세	4	15,825,180	이사불명
238	413	정귀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8-1 (돈의동)	지방소득세	2	21,285,03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239	415	운영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3길 35 209동 2204호 (종암동, 래미안 세레니티)	지방소득세	2	16,966,610	기타(보관반송)
240	416	지옥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48길 7 202호 (홍은동)	지방소득세	1	113,983,070	이사불명
241	421	유지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7 502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7)	취득세	4	21,194,570	수취인불명
242	425	김영권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11 30동 1101호 (월계동, 아파트)	지방소득세	3	12,246,150	수취인불명
243	426	김성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길 25 708동 607호 (하계동, 청솔아파트)	지방소득세	1	16,963,530	수취인불명
244	427	이명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가길 42 401호 (봉천동, 관전아트빌라)	지방소득세	1	24,635,680	기타(보관기간경과)
245	428	서병덕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52번길 57-6 101호 (광동리, 하성그린빌)	지방소득세	2	25,694,67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246	431	최창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48길 5-10 202호 (수유동, 동양빌)	지방소득세	1	13,614,640	기타(보관기간경과)
247	433	이인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17-9 (동자동)	지방소득세	1	31,261,410	기타(보관기간경과)
248	435	최용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23 (공덕동)	지방소득세	1	15,864,490	수취인불명
249	436	정희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97 (변목동)	지방소득세	1	15,207,270	수취인불명
250	437	김동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8길 16 (남가좌동)	지방소득세	1	111,843,380	기타(보관경과)
251	438	김정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12길 4 지층 B02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1	198,695,790	기타(보관기간경과)
252	439	김남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0-1 B1층 (청운동)	지방소득세	8	25,246,020	수취인불명
253	440	김의택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13동 204호 (광장동, 위커힐아파트)	지방소득세	5	44,276,960	폐문부재
254	441	김병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5나길 18 (신내동)	지방소득세	3	58,997,070	기타(보관기간경과)
255	442	김동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길 30 1동 306호 (안암동3가, 삼익아파트)	지방소득세	6	12,231,180	수취인불명
256	445	백금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2길 6-8 지층 2호 (불광동)	지방소득세	8	11,868,000	폐문부재
257	446	이명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나길 6 (화곡동)	지방소득세	17	24,450,020	폐문부재
258	447	박완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2 B동 1108호 (여의도동, 정미아파트)	지방소득세	1	17,766,200	수취인불명
259	450	이종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0길 28-2 301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11	18,316,320	수취인불명
260	452	홍종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1길 6 (통인동)	지방소득세	3	32,680,390	이사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261	455	이춘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28-10 (수유동)	지방소득세	2	41,803,430	이사불명
262	456	김진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 9-1 101호 (신사동, 신일하이빌)	지방소득세	5	16,803,820	이사불명
263	461	김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56 B동 303호 (부암동, 테바하우스)	지방소득세	10	20,062,53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64	464	홍응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5길 11-3 (중화동)	지방소득세	10	13,422,890	기타(보관기간경과)
265	465	장현덕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16길 11 (수유동)	지방소득세	2	13,122,960	기타(보관기간경과)
266	467	이민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95 106동 1207호 (쌍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지방소득세	4	25,004,340	기타(보관기간경과)
267	470	예진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34 (화곡동, 우장산동주민센터)	지방소득세	3	22,851,260	수취인불명
268	474	김응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910호 (청담동, 경원하이츠)	지방소득세	6	23,846,680	이사불명
269	476	윤승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2 (영등포동)	지방소득세	5	15,601,24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270	478	정성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3 912호 (백석동, 성우아파트오피스텔)	지방소득세	2	37,920,900	폐문부재
271	480	인태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804호 (가산동, 한신 IT TOWER II)	지방소득세	3	48,891,730	수취인부재
272	481	엄선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나길 14 (독산동)	지방소득세	5	25,529,94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273	483	김형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20-21 B01호 (석촌동)	지방소득세	3	19,366,64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74	484	김창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49 34호 (거여동)	지방소득세	3	64,680,85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75	488	박성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34길 29 101동 2106호 (이촌동, 현대한강아파트)	지방소득세	1	13,047,290	기타(보관기간경과)
276	489	신성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 501호 (사당동)	지방소득세	1	17,303,590	기타(보관기간경과)
277	490	황희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43-1 (사당동)	지방소득세	1	20,376,520	기타(보관기간경과)
278	492	김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8길 14 101호 (길동, 동원힐하우스)	지방소득세	3	52,448,180	폐문부재
279	493	김문화 외 1인	서울특별시 중구 민리제로 185 102동 1503호 (민리동2가, KCC파크타운)	지방소득세	4	52,375,830	폐문부재
280	494	조정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16길 85 (구의동)	지방소득세	4	43,164,170	수취인불명
281	495	전영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바길 36-14 (염리동)	지방소득세	2	29,519,030	이사불명
282	496	박양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4길 23-9 402호 (기락동, 에스디셀리체아파트)	지방소득세	2	21,039,27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283	497	이명우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29-39 1301동 1002호 (낙양동, 용암마을13단지)	지방소득세	3	13,190,440	폐문부재
284	499	최상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23 2동 501호 (신내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지방소득세	6	23,499,420	수취인불명
285	501	김환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7길 3-2 301호 (상도동, 청운파크빌)	지방소득세	1	129,461,870	기타(보관기간경과)
286	506	김정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92 (목동)	지방소득세	1	42,961,980	기타(보관기간경과)
287	510	최찬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62번길 25 (일산동)	지방소득세	4	25,193,720	수취인불명
288	511	임영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9길 2-3 303호 (중동, 더하우스)	지방소득세	2	22,398,230	기타(보관기간경과)
289	512	이건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49-20 (합정동)	지방소득세	1	67,323,340	기타(보관기간경과)
290	513	최두연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고량로22길 11-3 (중곡동)	취득세	1	43,807,040	기타(보관기간경과)
291	514	윤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5길 17-9 나동 302호 (갈현동, 경원에이스)	지방소득세	1	22,298,560	폐문부재
292	518	신인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74 702호 (증산동, 두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	82,310,180	폐문부재
293	520	강연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3가길 3-8 (성수동1가)	지방소득세	1	13,986,350	기타(보관기간경과)
294	521	김태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명산길 19 105동 1003호 (창신동, 쌍용아파트)	지방소득세	1	81,315,72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95	522	김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고량로7길 35-1 (중곡동)	지방소득세	2	20,835,140	기타(보관기간경과)
296	525	신광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3가길 19 (사당동)	지방소득세	9	17,057,370	기타(보관기간경과)
297	526	백덕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304동 303호 (우면동, 엘에이치서초3단지아파트)	지방소득세	3	51,770,88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298	528	이금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2-25 (암사동)	지방소득세	4	16,311,460	수취인불명
299	530	서순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48 (송인동)	지방소득세	6	52,728,56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300	532	장두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4길 23 501호 (중화동)	지방소득세	1	88,878,070	수취인불명
301	534	민창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4길 11 (수유동)	지방소득세	5	14,195,250	기타(보관기간경과)
302	537	김상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00-19 202호 (양재동, 삼원빌라)	지방소득세	8	27,080,680	이사불명
303	539	김종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67길 7 (아현동)	지방소득세	6	29,804,920	기타(보관기간경과)
304	543	김동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7길 11-9,101호(삼성동)	지방소득세	5	75,003,69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305	544	이경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8길 3 102호 (송파동, 민속빌라)	지방소득세	1	42,188,75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306	545	김수익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64 103동 1101호 (정선동, 정상형술치아파트)	지방소득세	1	14,894,440	폐문부재
307	546	박상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72 106동 1801호 (금호동4가, 금호대우아파트)	지방소득세	4	84,385,250	이사불명
308	547	이인학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5길 16-1 나동 204호 (역촌동, 삼우주택)	지방소득세	15	29,064,540	폐문부재
309	548	최인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54 702동 1003호 (성사동, 신원당마을)	지방소득세	2	15,880,610	폐문부재
310	551	박광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길 52 305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4	25,795,120	기타(보관기간경과)
311	555	이원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24 1106동 1504호 (마곡동, 마곡엠밸리11단지)	지방소득세	1	22,897,500	수취인불명
312	557	신종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25-5 402호 (구산동, 웨스트빌리지)	지방소득세	2	64,169,340	수취인불명
313	559	박현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32 (영등포동)	지방소득세	4	16,036,680	주소불명
314	560	라호태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163 708호 (황학동, 올리브1)	지방소득세	2	20,521,720	수취인불명
315	561	조경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길 23 (북창동)	지방소득세	4	16,684,120	수취인불명
316	564	임우택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산2길 14-10 (금산리)	지방소득세	1	29,579,180	기타(민원실 보관후 기일경과 반송불요처리)
317	565	김동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1 5동 1007호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지방소득세	3	19,555,77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318	567	윤창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리재로 184-1 (서계동)	지방소득세	2	31,061,960	기타(보관기간경과)
319	568	김철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0길 34 (군자동)	지방소득세	4	34,279,580	기타(보관기간경과)
320	570	정승운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69길 7-21 1층 (후암동)	지방소득세	1	158,425,890	기타(보관기간경과)
321	572	이인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1길 44 라동 108호 (가리봉동, 대흥아파트)	지방소득세	3	23,609,510	수취인불명
322	574	임혜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2번길 11-5 (이매동)	지방소득세	1	17,640,070	주소불명
323	575	조혜덕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57-8 203호 (길동)	지방소득세	4	14,796,530	수취인불명
324	576	이명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31 102동 1501호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지방소득세	1	50,536,260	폐문부재
325	577	김효식	서울특별시 관진구 긴고랑로38길 20-4 B동 102호 (중곡동)	지방소득세	1	53,239,030	기타(보관기간경과)
326	578	이명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일로121길 20 나동 206호 (종화동, 세광하이티문)	지방소득세	5	33,634,72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327	579	김인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2길 11 (월계동)	지방소득세	1	82,487,05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328	582	양덕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2길 7-13 (신정동)	지방소득세	3	18,446,620	주소불명
329	583	윤미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1가길 4 (공향동)	지방소득세	1	65,732,720	폐문부재
330	590	변무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64 1513호 (등촌동, 등촌동두산위브세티움)	지방소득세	3	16,351,610	폐문부재
331	592	박석웅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6길 2-5 (신림동)	지방소득세	1	168,249,610	기타(보관기간경과)
332	595	김범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320호 (용답동, 그랜드오피스텔)	지방소득세	4	19,915,070	이사불명
333	596	유택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195 109동 501호 (쌍문동, 삼익세라피아파트)	지방소득세	14	46,413,660	기타(보관기간경과)
334	598	김필열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15 101동 301호 (신사동, 라이프시티아파트)	지방소득세	9	20,706,680	폐문부재
335	599	김남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7길 1-6 204호 (갈현동, 하늘드리움)	지방소득세	5	35,484,050	폐문부재
336	600	김용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8길 31-7 (서초동)	지방소득세	4	14,137,400	수취인불명
337	601	성명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10-13 (개봉동)	지방소득세	5	10,606,33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338	602	김명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마길 50 109동 801호 (옥수동, 옥수하이츠아파트)	지방소득세	8	15,229,370	수취인불명
339	603	정지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5길 29 201호 (신림동, 관악빌라)	지방소득세	1	180,015,270	기타(보관기간경과)
340	604	최승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5길 20-2 (반포동)	지방소득세	3	86,774,09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
341	605	이승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32 102동 1202호 (방화동, 방화동두산트레빌)	지방소득세	5	11,719,980	폐문부재
342	611	문태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9 1018호 (용답동, 어반 오피스텔)	지방소득세	7	17,046,900	기타(보관기간경과)
343	617	홍성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4-18 403호 (삼전동)	지방소득세	2	70,855,60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344	618	강봉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8길 22-3 (송인동)	지방소득세	7	42,513,21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345	621	이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2길 72 (용두동)	지방소득세	1	29,070,300	이사불명
346	622	북화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90 115동 102호 (하월곡동, 래미안월곡아파트)	지방소득세	3	47,065,930	수취인부재
347	623	김우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4길 39 402호 (묵동, 웰빙대성아파트)	지방소득세	3	18,217,920	기타(보관기간경과)
348	627	한해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00 602동 1526호 (마곡동, 마곡엠밸리6단지)	지방소득세	6	49,042,720	폐문부재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349	633	이종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847번길 26-1 B동 201호 (조원동, 정은빌라)	지방소득세	1	15,225,470	기타(보관기간경과)
350	636	이재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402 (신도리)	지방소득세	4	18,480,030	폐문부재
351	638	양옥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28번길 21-11 105동 1001호 (구갈동, 한양아파트)	지방소득세	1	58,581,860	수취인불명
352	642	유정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차산로 451 1201호 (구의동, 세림리오빌아파트)	지방소득세	3	20,604,450	기타(보관기간경과)
353	644	박두성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기곡로 114 1층 (기곡리)	지방소득세	2	12,734,770	기타(보관기간 경과)
354	646	장수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36 513동 1206호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지방소득세	3	12,545,900	폐문부재
355	647	이기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17 (방배동)	지방소득세	4	37,908,77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356	648	이종석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53 103동 1102호 (보일천리, 승촌토타이즈아파트)	지방소득세	2	26,093,480	수취인불명
357	649	이세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8 202동 308호 (구로동, 예성유토피아)	지방소득세	3	17,034,210	수취인불명
358	651	김영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8길 110 202호 (정릉동, 정릉체르빌)	지방소득세	1	13,800,170	기타(보관반송)
359	653	김영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22길 37 202호 (시흥동)	지방소득세	4	63,766,59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360	654	박선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219길 18 (상일동)	지방소득세	1	121,898,960	폐문부재
361	656	심재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9-26 5층 (관산동)	지방소득세	1	12,191,370	수취거절
362	659	박용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9길 11 지층 101호 (갈현동, 동아빌라)	지방소득세	3	29,760,930	폐문부재
363	660	권오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7길 11 710호 (신천동,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지방소득세	1	40,782,86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불능)
364	663	박근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0길 94-6 (시흥동)	지방소득세	2	34,334,31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365	665	김선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6길 60 101동 705호 (내발산동, 청솔숲속마을아파트)	지방소득세	1	15,526,440	이사불명
366	666	정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B동 1107호 (여의도동, 수경아파트)	지방소득세	2	13,094,740	수취인불명
367	668	정용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534호 (여의도동, 극동VP오피스텔)	지방소득세	1	22,006,240	수취인불명
368	671	이민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15길 15 (시흥동)	지방소득세	3	60,080,28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369	674	이정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0 (성북동)	지방소득세	1	15,871,640	수취인불명
370	675	서기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30-11 (충신동)	지방소득세	12	33,520,010	이사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371	677	신종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91 (신정동)	지방소득세	4	81,965,260	주소불명
372	679	김니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2 (신사동)	지방소득세	5	20,081,640	주소불명
373	680	박성모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49길 15 (두류동)	지방소득세	5	17,339,700	폐문부재
374	682	김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89 602호 (신월동, 조광아파트)	취득세	3	268,773,290	기타(보관기간경과)
375	685	정강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9길 5 102호 (신길동)	지방소득세	6	26,868,25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376	688	이상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길 64-4 (청파동2가)	지방소득세	3	95,156,390	기타(보관기간경과)
377	689	김병우	서울특별시 관진구 능동로 33-13 (자양동)	취득세	6	18,264,700	기타(보관기간경과)
378	690	장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9길 73-23 405호 (잠원동)	지방소득세	3	40,965,850	수취인불명
379	691	전장복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32가길 12 (보광동)	지방소득세	4	44,050,860	기타(보관기간경과)
380	692	정해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5가길 9-38 (시흥동)	지방소득세	1	25,786,05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381	698	김유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4길 25 202호 (길동)	지방소득세	1	16,570,600	폐문부재
382	702	임응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40길 93 (신월동)	지방소득세	18	16,213,650	기타(보관기간경과)
383	708	김종진	대전광역시 동구 석천로 7-11 106호 (남월동)	지방소득세	2	46,832,230	기타(3월16일보관후 반송불요)
384	709	김봉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0길 66 지하 101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4	29,275,130	기타(보관기간경과)
385	710	허정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가길 32 (신림동)	지방소득세	4	17,434,960	기타(보관기간경과)
386	712	김장복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가길 13 (신당동)	지방소득세	3	18,291,430	폐문부재
387	713	류중모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도화사동길 195-99 (구암리)	지방소득세	3	81,653,470	이사불명
388	714	황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5 505동 1002호 (중산동, 하늘마을)	지방소득세	4	19,963,540	폐문부재
389	715	허미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3길 18 B01호 (반화동)	지방소득세	1	273,352,060	폐문부재
390	717	전경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로1길 23 (옥수동)	지방소득세	2	187,837,810	기타(보관기간경과)
391	720	김광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10-14 (도선동)	지방소득세	1	24,810,14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392	721	박정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20번길 40-1 103동 B02호 (퇴계원리, 한림드림빌)	지방소득세	4	23,349,790	폐문부재
393	724	김진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89길 58 104동 106호 (영창동, 영창동아아파트)	지방소득세	1	13,911,300	폐문부재
394	725	채순석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 840-18 (옥길동)	지방소득세	1	18,726,840	폐문부재
395	726	이재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화대로89길 33 202동 1206호 (장안동, 형인허브빌아파트)	지방소득세	2	24,423,37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396	727	김영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3길 12 (묵동)	지방소득세	8	13,949,560	기타(보관기간경과)
397	728	김남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2길 51 619호 (연동)	지방소득세	9	21,224,000	수취인불명
398	730	하현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자길 28 501호 (사당동, 가아홈타운)	지방소득세	4	56,717,050	기타(보관기간경과)
399	731	엄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2길 19-3 (내자동)	지방소득세	11	17,718,450	수취인불명
400	732	관옥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93-6 (면목동)	지방소득세	4	15,015,530	기타(보관기간경과)
401	737	현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동로92 2층 204호 (성산리)	지방소득세	4	38,836,530	수취인불명
402	740	이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02동 1902호 (신천동, 파크리오)	지방소득세	5	68,286,99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불능)
403	741	최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7길 13-7 302호 (용산동2가, 금강타운)	지방소득세	3	81,933,190	기타(보관기간경과)
404	743	정이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8길 18-8 (신림동)	지방소득세	4	37,202,960	기타(보관기간경과)
405	745	김종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95번길 12-8 104호 (인계동, 아름다운집)	지방소득세	1	20,681,130	기타(보관기간경과)
406	747	관종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3길 11-5 202호 (삼성동)	지방소득세	2	17,258,190	기타(보관기간경과)
407	751	정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3동 601호 (상계동, 벽산아파트)	지방소득세	1	70,893,01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408	752	김정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16가길 22 401호 (봉천동)	지방소득세	3	52,055,170	기타(보관기간경과)
409	753	이명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56 (구룡포리)	지방소득세	2	12,005,170	주소불명
410	754	박필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1 502호 (양평동2가, 사브망)	지방소득세	1	28,543,19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세])
411	756	조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서교동)	지방소득세	5	19,082,690	주소불명
412	758	이춘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60-13 (양재동)	지방소득세	1	18,597,28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413	759	정승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7길 80-1 501호 (반배동, 미래빌라)	지방소득세	15	2,251,086,16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414	760	원정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64-27 301호 (반포동)	지방소득세	23	29,888,830	수취인불명
415	762	김태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 105동 107호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지방소득세	7	21,944,870	기타(보관기간경과)
416	766	최정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8가길 10-1 B02호 (불광동)	지방소득세	7	21,231,000	이사불명
417	768	이리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버길 40 201호 (창동)	지방소득세	5	900,421,920	기타(보관기간경과)
418	770	김정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고개로 100 402호 (봉천동, 생모리츠아파트)	지방소득세	1	24,561,470	이사불명
419	771	고사레 외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4길 12 601호 (신사동, 압구정아인빌)	지방소득세	1	22,263,170	수취인불명
420	773	하재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33길 5 703호 (용문동, 용문 하이오피스텔)	지방소득세	6	38,550,050	이사불명
421	774	서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04 라동 635호 (이촌동, 강변아파트)	지방소득세	5	18,241,080	기타(보관기간경과)
422	776	최철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42 3층 (합정동)	지방소득세	1	19,594,260	기타(보관기간경과)
423	780	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39-16 (신당동)	지방소득세	1	16,204,430	폐문부재
424	782	신광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27 210호 (역삼동, 대명벨리온)	지방소득세	3	144,901,500	기타(보관기간경과)
425	784	이행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113동 401호 (대원리, 한려아파트)	지방소득세	4	22,392,150	폐문부재
426	786	이선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7길 4 7동 201호 (오금동, 대림아파트)	지방소득세	7	12,860,390	폐문부재
427	788	윤성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89 102동 208호 (월계동, 청백아파트)	지방소득세	4	20,476,78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428	790	정재승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7길 14-11 1층 (창동)	지방소득세	5	100,762,220	기타(보관기간경과)
429	791	전경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63길 35-4 A동 401호 (우이동, 이산스카이빌)	지방소득세	4	12,428,270	기타(보관기간경과)
430	795	김홍석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6길 17 1708동 411호 (창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4	164,227,420	기타(보관기간경과)
431	796	오영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5-21 (증산동)	지방소득세	1	84,631,700	폐문부재
432	798	김재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4가길 80 108동 1103호 (종암동, 래미안 러센트)	지방소득세	8	11,829,970	기타(보관반송)
433	799	이정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7길 23 102동 302호 (시흥동, 시흥베르빌아파트)	지방소득세	3	50,790,420	수취인부재
434	800	이승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1길 8 (화곡동, 글로벌아빌)	지방소득세	1	176,090,410	주소불명
435	801	박영엽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11길 36 (송정동)	지방소득세	1	44,228,71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436	804	이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68 206동 603호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지방소득세	2	34,040,890	폐문부재
437	807	이헌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24-4 (옥인동)	지방소득세	1	37,227,26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438	808	이문수	경상남도 거제시 피솔길 147 (장명동)	지방소득세	16	53,451,740	주소불명
439	809	신정균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16-13 207동 1202호 (지행동, 지행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3	28,824,930	기타(보관기간경과)
440	810	이창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28 201호 (화곡동, 해테드림타운)	취득세	8	58,028,710	폐문부재
441	811	박용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길 75 (신림동)	취득세	22	25,856,590	기타(보관기간경과)
442	814	양진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107 502호 (홍은동)	지방소득세	3	31,023,120	수취인불명
443	815	유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1길 10-5 (역삼동)	지방소득세	7	18,426,370	수취인불명
444	816	유지탁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39 (화곡동)	지방소득세	5	15,931,100	주소불명
445	817	박석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49-15 5층 (창천동)	지방소득세	19	52,975,350	수취인불명
446	819	김윤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707호 (가산동)	지방소득세	2	144,075,440	이사불명
447	820	장준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14길 4-5 (제기동)	지방소득세	5	57,309,020	수취인불명
448	821	박국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22-4 B동 201호 (신정동, 목동 파크빌)	지방소득세	5	12,931,950	기타(보관기간경과)
449	823	이재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승배기로22길 11-3 (노량진동)	지방소득세	4	20,182,800	기타(보관기간경과)
450	826	김신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22길 47-8 2층 (구기동)	지방소득세	1	27,323,65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451	830	여길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99길 8 2층 203호 (대치동, 경일빌라비동)	지방소득세	1	23,826,830	수취인불명
452	834	심양숙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55 14/1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101동 1501호	지방소득세	1	14,096,710	수취인부재
453	837	박은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370 101동 602호 (수유동, 힐트리움)	취득세	4	17,681,850	이사불명
454	839	맹광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화서로 57-49 (수인리)	지방소득세	5	25,347,430	수취인불명
455	840	김혁운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11 24동 1207호 (월계동, 아파트)	지방소득세	3	17,622,17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456	843	김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58 (구로동)	지방소득세	1	24,478,280	주소불명
457	845	박용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140동 1501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지방소득세	10	26,963,980	폐문부재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458	846	김재현외1인 (허은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29 302호 (성산동, 대현하이빌)	취득세	2	16,323,550	수취인불명
459	848	곽종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5길 25 404호 (연희동, 존스빌)	지방소득세	5	26,673,930	기타(보관경과)
460	851	이호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38-6 109동 707호 (풍납동, 한강극동아파트)	지방소득세	1	69,849,80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461	853	정석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33-13 403호 (신내동, 리치빌)	지방소득세	1	46,292,200	이사불명
462	855	유희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6길 12 301동 1001호 (신부동, 대림한숲아파트)	지방소득세	1	23,381,29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요처리)
463	856	김영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길 9 (자양동)	지방소득세	27	12,732,720	기타(보관기간경과)
464	857	김동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4길 31-7 (면목동)	지방소득세	8	24,262,770	기타(보관기간경과)
465	862	박종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12 (하월곡동)	지방소득세	1	14,244,500	이사불명
466	863	정봉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9라길 30 402호 (계기동, 웰드캐슬아파트)	주민세	4	277,399,940	이사불명
467	864	김연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6길 29-20 103호 (공릉동)	지방소득세	1	37,115,32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468	865	박영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길 72-7 (독산동)	지방소득세	5	20,513,10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469	869	박진용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16번길 9-26 401호 (호평동)	지방소득세	5	61,255,640	기타(보관기간 경과)
470	871	이우중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45-1 (동고도리)	지방소득세	6	114,761,350	폐문부재
471	872	김원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신망로 13-1 (상리)	지방소득세	2	38,194,770	폐문부재
472	873	김경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8-1 (대흥동)	지방소득세	2	40,825,510	기타(보관기간경과)
473	876	정옥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0길 27 가동 B102호 (상도동, 칠성빌라)	지방소득세	1	26,321,650	기타(보관기간경과)
474	877	이병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7길 62-2 302호 (반배동)	지방소득세	2	44,451,15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475	878	심행이	전라북도 군산시 성신면 동군산로 234-9 (고봉리)	지방소득세	1	15,996,690	기타(보관후반송)
476	880	박환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가길 15-13 (번동)	지방소득세	1	17,538,970	기타(보관기간경과)
477	881	박제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가길 11-1 (사당동)	지방소득세	3	12,823,760	기타(보관기간경과)
478	884	임현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48길 31 (면목동)	지방소득세	1	386,251,620	기타(보관기간경과)
479	885	이신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3-67 202호 (석촌동, 현대파크빌)	지방소득세	1	29,118,69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480	889	김성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71 (성북동)	지방소득세	4	21,383,940	수취인불명
481	896	김승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4길 7-19 (사당동)	지방소득세	4	167,978,980	기타(보관기간경과)
482	897	유한회사 포도주류미산	서울 강서구 방화동 850 [개화동로21길 20]	지방소득세	21	26,539,230	수취인불명
483	898	주식회사이에스플러스 코리아	서울금천구가산동60-25에이시하이엔드타워61004호	취득세	3	40,173,860	수취인불명
484	899	새우강엔테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44-13	지방소득세	1	21,209,030	이사불명
485	900	골든시그너스 (주)	서울서초구양재2동316-35층	지방소득세	10	34,989,490	이사불명
486	901	맴얼라이언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9 엔에스씨빌딩 4층	지방소득세	6	16,773,390	수취인불명
487	902	다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116호(역삼동, 성지3차오피스텔)	지방소득세	3	23,452,210	수취인불명
488	903	주식회사 서울온누리에셋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6-9, 4층 (대치)	지방소득세	5	16,711,670	수취인불명
489	904	(주)현주디앤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54 광진빌딩 4층	지방소득세	7	17,389,870	수취인불명
490	906	(주)엑세스팀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1길 8, 4층(역삼동, 형정빌딩)	지방소득세	3	16,204,940	수취인불명
491	907	㈜올트리푸드머스	서울송파구석촌동216-81층102호	지방소득세	10	23,433,820	수취인불명
492	908	주식회사 에이치 엠지엔터테인먼트	서울송파구방이동196대덕빌딩3층	지방소득세	4	104,858,060	이사불명
493	909	주식회사 상록수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26-10, 5층 (북창동)	지방소득세	2	163,857,110	수취인불명
494	910	주식회사용진테크	서울용산구서울용산구청파로132나진상가19동기열324,325호	지방소득세	6	38,189,080	수취인불명
495	911	준투유	서울용산구한강로3가15-2나진상가17동내열225호	지방소득세	6	22,672,040	수취인불명
496	912	(주)엔티크	서울용산구한강로2가15-14선인상가22동4층32호	지방소득세	6	14,785,090	수취인불명
497	914	에드코레아산업	서울마포구합정동359-37서인빌딩2층	지방소득세	11	52,942,520	수취인불명
498	915	주-진흥이앤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59, 2층(구로동)	지방소득세	4	38,783,930	이사불명
499	916	(주)아티클로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90한라시그마밸리1610	지방소득세	5	26,563,820	수취인불명
500	917	니즈라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캐슬 1동 708호	지방소득세	8	18,546,25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501	919	주식회사 티앤레드에셋 (T and RED Asset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7-6, 8층(역삼동)	지방소득세	2	11,819,520	수취인불명
502	920	주식회사 해뜨는세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1013호(역삼동, 한리클래식오피스텔)	지방소득세	7	221,522,860	수취인불명
503	921	주식회사 오성인터내셔널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25(7좌동, 엘파크수출단지 에이13호)	지방소득세	2	35,115,440	수취인불명
504	922	제이에스마린 (주)	서울종로구낙원동58-1종로오피스텔1002호	지방소득세	9	16,098,940	이사불명
505	923	피티엘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601 (가산동,IT프리미어타워)	취득세	2	18,441,350	이사불명
506	924	(주) 송우테크놀로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509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9차)	취득세	4	44,233,130	수취인불명
507	925	(주) 더 헬시	서울서초구잠원동21-3지층	지방소득세	7	68,142,390	수취인불명
508	926	㈜우리강남에이엠씨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23 연당빌딩 7층 [테헤란로 439]	지방소득세	9	43,390,210	수취인불명
509	927	멀티컴퍼니	서울시구로구가마산로27길52,3동707호(구로동,미주프라자)	지방소득세	2	29,235,860	이사불명
510	928	(주) 페라	서울시종로구중화동324-61층	지방소득세	11	16,169,910	기타(보관기간경과)
511	929	(주) 비즈웨이 (BIZWAY CO. Ltd.)	서울금천구가산동345-500아이티프리미어타워606호	취득세	3	47,292,990	이사불명
512	930	바우리호텔랑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14(서초동)	지방소득세	13	88,828,270	수취인불명
513	931	(주) 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52-7,옥상(종로5가, 무궁화빌딩)	지방소득세	4	33,134,76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514	932	주식회사 골든에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2동성보빌딩4층	취득세	1	64,603,250	수취인불명
515	934	주식회사 휴먼엠피에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46길88,4층(서초동,동관빌딩)	지방소득세	3	17,799,150	이사불명
516	935	주식회사 비에스에이치컴퍼니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4-24송암빌딩5층동	지방소득세	2	19,927,400	수취인불명
517	936	주식회사 태명전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8 대한통운빌딩 지하1층	지방소득세	5	21,151,470	수취인불명
518	937	주식회사 굿모닝에드닷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 1214호	지방소득세	6	43,841,34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불능)
519	938	지현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5길 44, 712호(등촌동, 청림빌딩)	지방소득세	4	18,343,280	폐문부재
520	939	(주)하나유에스아이	서울금천구가산동429-1뉴티캐슬404호	취득세	3	69,856,030	수취인불명
521	940	주식회사 오렌지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408호 (가산동, 더루벤스밸리)	취득세	4	712,030,90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522	941	(주) 동신마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초원빌딩4층	지방소득세	2	24,801,490	수취인불명
523	942	아이원아이홀딩스	서울 강남구 논현로317,3층(역삼동)	지방소득세	3	130,725,230	이사불명
524	943	에원인테리어	서울 용산구 이촌로 105(한강로3가)	지방소득세	2	70,967,620	이사불명
525	944	(주) 파크앤시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2-37 투밸리805호	지방소득세	2	40,981,050	이사불명
526	945	하닉스 바이오파마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563-154층	지방소득세	1	32,996,870	이사불명
527	946	(주) 시양인테리어 베스트먼트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0층	지방소득세	3	27,487,860	주소불명
528	947	그레이스앤존	서울 강남구 논현동181-99인성빌딩4층	취득세	1	51,182,250	수취인불명
529	948	주식회사 은성종합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한서그린빌리지오피스텔810호	지방소득세	1	17,810,65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530	949	(주) 드림칸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14사길3-1, (흑석)	지방소득세	2	80,829,780	기타(보관기간 경과)
531	950	(주) 알앤알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50, 1층 (반학동, 퍼스티안2)	지방소득세	1	44,237,450	기타(보관기간 경과)
532	951	코인스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2, 1201호 (역삼동, 한신인터벨라24빌딩 서관)	지방소득세	2	18,128,290	수취인불명
533	953	(주) 윈디텍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15-13나진19동3층라열327	지방소득세	5	109,970,730	수취인불명
534	954	(주) 이상토씨티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38-7 그라비타스빌딩 5층 [우면로22길 117]	지방소득세	5	36,448,070	수취인불명
535	955	주식회사 신일이엔씨	서울특별시 강북구 숲샘로 316, 1층(미아동)	지방소득세	8	30,191,630	수취인불명
536	956	(주) 교딤 무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401호 (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2차)	취득세	5	58,858,580	이사불명
537	957	주식회사 엠엘지유폴라스	서울 양천구 신정동88-5외1필지제비동호1층	지방소득세	5	102,178,450	이사불명
538	958	주식회사 넥슈	서울 금천구 가산동550-1롯데아이티캐슬1-1016	지방소득세	15	25,065,880	수취인불명
539	959	(주) 한국건설품질안전기 술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97, 5층(서초동, 금당빌딩)	지방소득세	11	23,437,460	수취인불명
540	960	주식회사 이룰산업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9길 13, 802호(역삼동, 닛켄빌딩)	지방소득세	5	52,242,870	이사불명
541	962	한국금융투통(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3, 5층 510호(종로3가, 교영빌딩)	지방소득세	3	18,810,790	수취인불명
542	963	주식회사 아로씨앤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6 한강현대하이엘 제1107호	지방소득세	4	21,120,35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543	964	주-한트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99,309호(성내동)	취득세	1	18,648,150	이사불명
544	965	주식회사 하나물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88길 82, 606호(등촌동, 강서아이티밸리)	취득세	2	16,780,290	수취인불명
545	966	(주)원익스프레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지방소득세	3	31,475,470	수취인불명
546	967	성진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27길 88 고래메빌 101호(반포동)	지방소득세	17	14,821,170	이사불명
547	968	(주)지엔지피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22길54(서초동, 신평빌딩)	지방소득세	8	292,750,230	수취인불명
548	969	(주)제이엠디에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19-28 메트로빌딩 4층	지방소득세	8	1,766,570	수취인불명
549	970	(주)지이에치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0-4, 4층(을지로2가)	지방소득세	8	26,878,750	수취인불명
550	971	주식회사 수현지엘에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105호 [경인로 775]	취득세	3	22,558,100	수취인불명
551	972	(주)동호토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1205호 (서초동, 중앙로알오피스텔)	지방소득세	8	25,196,490	수취인불명
552	973	주식회사 크로스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5, 301호(광장동)	지방소득세	4	38,283,950	수취인불명
553	975	주식회사 지표토건	경기평택시평남로 671, 상기동 206호 (비전동, 경남아너스빌)	취득세	1	40,901,860	수취인불명
554	976	토탈프린팅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4(태평로2가, 해남빌딩)	지방소득세	1	90,158,250	수취인불명
555	977	(주)다자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0-12 [와우산로 24]	취득세	2	166,012,820	수취인불명
556	978	장안건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823호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지방소득세	3	38,433,350	수취인불명
557	979	주식회사 경도하이텍	서울용산구한강로2가15-3나진상가19동1층가열125호	지방소득세	6	29,656,680	수취인불명
558	980	(주)코코스탁임포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5-29 금성빌딩 309호	지방소득세	6	111,513,440	수취인불명
559	981	주식회사 재운무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로 213,에이동 309호(여의도,금호리첸시아)	지방소득세	4	91,618,77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560	982	크레디아	서울 중구 명동2가 31-1 M플라자 5층 [명동중앙길 28]	지방소득세	3	34,377,260	수취인불명
561	983	(주)리버스코리아	서울노원구공릉로165,노원빌딩5층(공릉동)	지방소득세	4	25,322,200	이사불명
562	984	가림정보기술(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8-28 아로마빌딩 4층	등록세	2	24,420,860	수취인불명
563	985	(주)현우어페럴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428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	23,016,77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564	986	(주)허리우드	서울영등포구양평동3가30-26	지방소득세	2	43,361,45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565	987	(주)청산리벽계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길 71, 1층(사당동)	지방소득세	6	39,287,630	이사불명
566	988	(주)프리존스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 504호(구로동, 구로선경오피스텔)	지방소득세	1	20,502,830	이사불명
567	989	주식회사 지인티페이스	서울성동구성수일로8길 5, A동 507호 (성수동2가, 서울숲SK V1타워)	취득세	1	15,383,180	수취인불명
568	990	덕도건설(주)	서울광진구자양동661-27	지방소득세	1	633,289,550	수취인불명
569	991	유아이홀딩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 9층 (역삼동, 삼부빌딩)	지방소득세	1	15,807,560	수취인불명
570	992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744-4	취득세	1	26,315,320	수취인불명
571	993	파워디젤코리아	서울영등포구양평동2가37-1909	취득세	2	76,445,090	이사불명
572	994	(주) 문현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1동대영빌딩7층	지방소득세	2	16,843,680	수취인불명
573	995	㈜모바일포레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7, 4층(송내동, 세움프라자)	지방소득세	1	10,869,030	이사불명
574	996	세창종합주방(주)	서울 중구 마장로 82(황학동)	지방소득세	11	16,197,230	수취인불명
575	998	㈜렌드마크갤리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길 3출(석관동)	지방소득세	16	22,909,980	수취인불명
576	999	(주)알티엔디	서울강북구구변2동437-11창강빌딩607동	지방소득세	33	22,313,310	수취인불명
577	1000	주식회사 한성토건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10, 선정빌딩 601호(독산동)	지방소득세	4	159,220,760	수취인불명
578	1001	(주)다물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902호(여의도동, 동화빌딩)	지방소득세	2	17,043,030	이사불명
579	1002	(주)휴먼산업개발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61금호리첸시아B209호	지방소득세	4	16,180,65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580	1003	코웰스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1305호(역삼동, 유니온센타오피스텔)	지방소득세	10	19,153,980	수취인불명
581	1005	대천씨엔디(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1, 3층(가락동, 광노빌딩)	지방소득세	28	18,835,420	수취인불명
582	1007	에이치와이디엔아이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3동678-2	지방소득세	14	27,880,750	주소불명
583	1008	(주)이지스에셋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2503호(서초동, 부띠크모나코)	지방소득세	7	29,643,270	수취인불명
584	1009	(주)씨피디아이엔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14, 2층(역삼동, 예일빌딩)	지방소득세	19	110,900,34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585	1010	주-케이에치인터넷내셔널 (주) 트라이코코리아	서울성동구성수2가1동299-96	취득세	12	15,440,420	수취인불명
586	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83 301호 (길월동, 국제영상빌딩)	등록세	2	146,133,000	수취인불명
587	1012	하나로중량텔레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09, 2층 201호(상봉동, 에스더타워)	지방소득세	5	24,241,540	수취인불명
588	1013	델타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길 17, 307호(역삼동, 제이플러스스타워)	지방소득세	1	138,005,390	수취인불명
589	1014	주식회사마다코리아	서울강남논현레지던스에이치1201호	지방소득세	9	188,393,760	수취인불명
590	1015	농업회사법인 대림씨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1213호 (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지방소득세	4	65,744,470	기타(보관기간경과)
591	1017	증권투자개발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36(익선동)	지방소득세	4	41,211,030	수취인불명
592	1018	가산전기	서울금천구시흥대로97시흥유동센터19동309호	지방소득세	2	34,272,470	이사불명
593	1019	모젠텔레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3-329(시흥동, 유동상가)	지방소득세	2	29,206,95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594	1020	주식회사 에듀아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벌로81번길 31	취득세	1	23,001,430	수취인불명
595	1021	법무법인 소호	서울서초구반포4동44-1장학재단빌딩701	지방소득세	3	16,623,450	수취인불명
596	1022	(주)벽성디앤에스	서울송파구마천2동205호	지방소득세	2	35,610,140	수취인불명
597	1023	송림씨티	서울은평구녹번동155-23해명빌딩에이동4층	지방소득세	1	46,360,860	수취인불명
598	1024	(주)팜코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1134호(여의도동, 진미파라곤)	지방소득세	3	131,407,20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599	1025	주식회사 중심도시개발	서울영등포구신길동59-2앤씨티오피스텔1710호	지방소득세	3	16,645,16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600	1026	이에스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2, 202호(신정동, 세양형마루2차주상복합)	등록세	6	247,763,950	수취인불명
601	1027	동오영 주식회사	서울시동작구남부순환로2075, 지상7,8층(사당동, 용촌빌딩)	지방소득세	1	22,628,100	기타(보관기간경과)
602	1028	주식회사 덕양전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69-5 우원빌딩 5층 [방배중앙로 178]	지방소득세	4	22,619,730	이사불명
603	1029	주식회사 삼주지앤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23, 402호(잠원동, 거산빌딩)	지방소득세	2	115,545,600	수취인불명
604	1030	주식회사 토브맥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25가길 2, 402호(묵동, 현동빌딩)	지방소득세	1	116,758,540	이사불명
605	1031	(주)제리코홀딩스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2길 37, 1층 109호(보문동4가, 보문하우스토리)	지방소득세	3	37,063,750	이사불명
606	1032	스카이뷰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5, 217호 (방배동, 정호빌딩)	지방소득세	2	40,452,680	이사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제 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607	1033	주식회사 디자인엘린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647494호 (노현동, 강남빌딩)	지방소득세	3	16,675,010	수취인불명
608	1034	(주)엠에스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30, 지하층 (삼성동)	지방소득세	1	17,634,320	수취인불명
609	1035	주식회사 엠엔 에스인베스트먼트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60, 306호(서초동, 플래스빌딩)	지방소득세	3	47,868,270	수취인불명
610	1036	제이케이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4-10 역삼동빌딩(역삼동)	지방소득세	1	69,861,020	수취인불명
611	1038	굿엔굿코퍼레이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120번길 34, 1005동 1502호 호운수님 댁내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	지방소득세	2	40,026,730	수취인불명
612	1039	세일산업 (주)	서울광진구광장동127리버힐오피스텔502호	지방소득세	3	90,907,430	이사불명
613	1040	티에이취에쓰이 엔씨주식회사	서울도봉샘문8-4302호	지방소득세	7	19,596,980	이사불명
614	1041	주식회사 시티오일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32(구로동)	지방소득세	4	24,295,720	수취인불명
615	1042	(주)지엔타네트웍스	경기도시흥시과림동768-21층	취득세	5	16,537,400	수취인불명
616	1043	주식회사 경원디엔피	서울서초구서초동1451-86석탑빌딩2층	지방소득세	3	30,203,290	수취인불명
617	1044	(주)백제대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67-5 2층 [동광로11길 77]	지방소득세	19	41,284,430	수취인불명
618	1045	주식회사 대호시티디엔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1014호(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동관)	지방소득세	7	134,509,030	수취인불명
619	1046	코리아토탈(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8길17, (신사동)	지방소득세	4	39,339,370	수취인불명
620	1047	제이피케이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9, 2층(도곡동)	지방소득세	14	36,591,820	수취인불명
621	1048	리모커뮤니케이션즈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7길 22, 원일빌딩 2층(논현동)	지방소득세	3	53,757,810	수취인불명
622	1049	주식회사시조건설	서울송파구송파동1층	지방소득세	5	52,175,010	주소불명
623	1050	(주)삼용이엔지	서울서대문구연희동78-43옥산빌딩3층0/0	지방소득세	8	55,797,860	이사불명
624	1051	(주)오솔로메디칼빌딩스	서울강남구논현1동1-1퍼스트에비뉴지하1층	지방소득세	4	21,422,940	수취인불명
625	1053	주식회사 스카이컴토피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2 나진상가 18동 기열 353호 [용호로 120]	지방소득세	7	24,199,950	수취인불명
626	1054	주-해커코리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20 [논현로 718]	지방소득세	10	39,076,220	수취인불명
627	1056	(주) 아이에스무역	서울마포구도화동173삼창빌딩1202호	지방소득세	5	64,989,49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628	1057	(주)컴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성로 2, 176.2층(성시동)	취득세	4	33,858,450	수취인불명
629	1058	(주)더파이버인터렉티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3, 860호(노고산동, 병우빌딩)	등록세	2	19,739,660	수취인불명
630	1059	(주)유니온스타즈	서울강남구신사동 533 호암빌딩 4층	지방소득세	9	27,091,600	수취인불명
631	1060	(주)소프트리스트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7가65-7만제빌딩1층103호	지방소득세	14	67,052,550	이사불명
632	1061	(주)마드아트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5길 26, (장안, 3층)	지방소득세	7	25,364,700	수취인불명
633	1062	주식회사 리얼네트웍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7-4 석우빌딩 6층	지방소득세	2	101,146,780	이사불명
634	1063	주식회사 디자인무토	서울마포구성산동633-23층	지방소득세	6	93,779,730	수취인불명
635	1064	아이앤디개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26길 12, 4층(상도동, 명진빌딩)	지방소득세	7	41,187,970	수취인불명
636	1065	(주)더존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5, 203호(역삼동, 남경선능빌딩)	지방소득세	1	24,514,590	수취인불명
637	1066	서화상역	서울송파구송파동58-17레이크사이드타워3층	지방소득세	5	16,497,310	수취인불명
638	1067	아울림에이치큐(주)	서울서초구양재1동3-13엑스트림빌딩4층	지방소득세	7	48,758,810	수취인불명
639	1068	주식회사 예인제이엔에스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2동2층	지방소득세	2	14,211,350	주소불명
640	1069	(주)마이크로어드벤처	서울금천구가산동60-3대륭포스트타워5차16층1605호	등록세	3	19,713,240	수취인불명
641	1070	(주)컴마트	서울용산구원효로64길18,1층(원효로2가)	지방소득세	2	1,633,348,810	이사불명
642	1071	크리에이티브아이콘(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4,201호(동교동, 성진빌딩)	지방소득세	1	33,250,780	수취인불명
643	1072	동인종합개발	서울중구을지로27가10088-0005	지방소득세	2	33,996,190	주소불명
644	1073	풍원약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0가길 6(대림동)	지방소득세	1	28,977,820	이사불명
645	1075	월강건설산업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 77(구의동)	지방소득세	1	140,861,520	이사불명
646	1076	에이엔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28, 지하1층 107호(원효로3가, 이-테크밸리)	지방소득세	3	41,308,870	이사불명
647	1077	주식회사 용산비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81, 21동 3층 110호(한강로2가, 선인상가)	지방소득세	6	37,973,960	수취인불명
648	1078	레인양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21길11-11,1002호(장안동, 황금오피스텔)	지방소득세	3	14,322,200	이사불명
649	1079	(주)중앙주유소	서울성북구보문동7가137번지	취득세	10	37,094,92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650	1080	(주)용담종합건설	서울강서구화곡동1068-32	주민세	28	34,825,360	이사불명
651	1081	한디예건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45, 2층(등촌동, 한디예건빌딩)	지방소득세	24	33,891,870	수취인불명
652	1082	주식회사 렉스모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에스케이 테크노빌 1007호	지방소득세	2	28,931,040	수취인불명
653	1083	PANISCOTECHNOLOGY Co. Ltd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19, 에스케이트윈테크타워 비동 604호 (가산동)	지방소득세	13	15,706,040	수취인불명
654	1084	주식회사 프라임아울렛	서울금천독산299-31(2층)	지방소득세	10	35,932,700	이사불명
655	1085	(주)비엔에스프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2 에이스하이엔드타워9차 1005호	취득세	5	19,813,470	이사불명
656	1086	주식회사 블리츠 엔터테인먼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7, 1504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취득세	19	78,488,960	수취인불명
657	1088	지엠씨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816호(여의도동)	지방소득세	15	42,072,540	수취인불명
658	1089	주-화물터미널연합	서울서초구양재2동226한국트럭터미널348호	지방소득세	6	41,443,770	수취인불명
659	1091	한이오중건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3, 2층(거여동)	지방소득세	7	33,281,290	수취인불명
660	1092	에이지솔루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0길 34, 22동 2035호 (한강로2, 선인상가)	지방소득세	14	106,074,600	수취인불명
661	1093	첨단바르세움종합건설(주)	서울시성동구무학로6길50, 101동215호(도선동, 성동삼성세르빌)	지방소득세	9	39,383,390	이사불명
662	1094	(주)트루이노비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신로 62, 102동818호(영등동, 신실영대우아이 빌리파트)	지방소득세	2	302,710,64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663	1097	미디어앤넷	서울서초구서초대로73길54,921호(서초동, 서초동오피스텔)	지방소득세	1	73,545,860	수취인불명
664	1098	주식회사 위드그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 4층 엘에스-24호(대치동, 대원빌딩)	지방소득세	2	13,023,430	수취인불명
665	1099	(주)폴라리스금융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4길 7, 1층(삼성동, 현죽빌딩)	지방소득세	8	21,615,830	수취인불명
666	1101	(주)관동해피상사	서울관악구중앙동870-62층 2호	지방소득세	3	12,989,580	기타(보관기간경과)
667	1102	주식회사 오에스컴퍼	서울시 마포구 전지로 48(서교동)	지방소득세	1	30,255,340	수취인불명
668	1103	주식회사 쉐란디엠씨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34, 502호 (원효로3가, 대교빌딩)	지방소득세	8	315,295,210	수취인불명
669	1104	(주)다보정보통신	서울용산구한강로2가16-1선인상가21동1층50호	지방소득세	7	204,353,660	수취인불명
670	1105	(주)지세브원	서울 강남구 선릉로100길 30, 지하1층(삼성동)	지방소득세	2	63,230,65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 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671	1106	농업회사법인대 로엘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9, 516호(역삼동, 성일빌딩)	지방소득세	4	39,719,030	수취인불명
672	1107	유한회사 리치문샵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00길30,지하1층(삼성동)	지방소득세	4	41,817,050	수취인불명
673	1108	대부인더스 (주)	서울강서구등촌684-2우리벤처타운902동	지방소득세	1	95,161,190	이사불명
674	1110	(주) 에제르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1518호(가산동, 웰드메르디앙1차)	지방소득세	3	23,610,680	수취인불명
675	1111	주식회사 수송사	서울 중구 필동3가 39-4 [서예로5길 12-21]	지방소득세	4	99,109,150	수취인불명
676	1112	(주) 웰드리치커뮤니	서울 마포구 포은로 14, 수성빌딩 2층(합정동)	지방소득세	3	111,318,840	기타(보관기간경과)
677	1113	주식회사 엔트넷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85호(국제전자센터 5층)	지방소득세	2	16,297,000	수취인불명
678	1114	어울림정보기술(주)	서울송파구가락동780아이티벤처서관10층	지방소득세	2	64,938,470	수취인불명
679	1115	(주)아이엘이티	서울구로구구로동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703	취득세	2	509,229,87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680	1117	가교아이디(주)	서울 동작구 등용로 19 (상도동)	지방소득세	1	23,126,000	수취인불명
681	1118	(주)에이치에스디홀딩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화로350길 12(양재동, 영일빌딩2층)	지방소득세	2	95,907,710	이사불명
682	1119	반스타인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8-8 남승빌딩 402호	지방소득세	1	13,237,310	수취인불명
683	1121	엔앤사이언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43, 1113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취득세	1	70,946,790	수취인불명
684	1123	(주) 상도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22, 5000호(용두동, 한방천하 용두동포스빌)	지방소득세	1	15,988,180	수취인불명
685	1125	주식회사 온샘푸드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40, 502호(마장동, 대해빌딩)	지방소득세	8	23,014,740	수취인불명
686	1126	(주) 에이치큐컴퍼니 (HQcompany)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29, 2층(인암동2가, 에스엠빌딩)	지방소득세	8	30,837,530	수취인불명
687	1127	주식회사아리솔건설산업	서울 노원구 공릉1.3동 584-10 2층 [동일로178길 19-38]	지방소득세	8	20,659,720	수취인불명
688	1128	주식회사 예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절골8길 23, 1층(신월동)	지방소득세	10	25,115,330	수취인불명
689	1129	디지털미디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005호 (가양동, 강서문화 비즈니스메트로2차)	취득세	16	36,670,630	이사불명
690	1130	(주) 엠아이케이테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에이스하이엔드타워5차1104호	취득세	18	53,837,550	수취인불명
691	1131	(주) 에이에프디자인 주식회사	서울금천구가산동371-37STXV-TOWER511호	취득세	7	46,553,130	수취인불명
692	1132	제이할리코스텍	서울금천구가산동345-50아이티프리미어타워1603호	취득세	8	34,916,54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693	1133	피티퍼커뮤니케이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404호(가산동)	취득세	18	30,389,590	수취인불명
694	1134	주-위더스플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7, 6층(반포동, 대현빌딩)	지방소득세	15	23,955,66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
695	1135	주식회사코리아헤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0, (삼성동, 소석빌딩 5층)	지방소득세	8	26,178,000	수취인불명
696	1136	(주)엘시홀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08, 515호(논현동)	지방소득세	18	29,430,340	수취인불명
697	1137	(주)영화사그랑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3길 29, 4층(신사동, 웰트빌딩)	지방소득세	10	165,504,510	수취인불명
698	1138	영재토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7(잠실동)	지방소득세	13	92,121,400	수취인불명
699	1140	(주)리더스이앤씨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3길 23, 1층(한남동)	지방소득세	7	70,007,980	수취인불명
700	1141	(주) 효숙 씨앤씨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도원빌딩219호	지방소득세	2	18,714,370	이사불명
701	1142	(주)정진공영	서울강서구 등촌3동674-3	지방소득세	14	17,871,070	수취인불명
702	1143	용화산업 (주)	서울금천구 신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702호	취득세	4	23,277,100	수취인불명
703	1144	주식회사한결테크놀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13 파트니스타워1 803호	취득세	3	89,193,740	수취인불명
704	1145	알파로직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76, 5층(도곡동, 미래빌딩)	지방소득세	4	21,173,390	수취인불명
705	1146	태이건설	서울관악구 신림동225-29	지방소득세	16	62,956,620	주소불명
706	1147	(주)태연에프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57, 4층 (삼성동, 감영빌딩)	지방소득세	2	26,862,570	수취인불명
707	1148	아시아넥스트 한국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동72441/7로즈데일오피스텔1908호	지방소득세	8	37,145,600	이사불명
708	1149	왕도엔지니어링	서울강남구 대치동966-5신사제2빌딩5층	지방소득세	10	22,091,500	수취인불명
709	1150	주식회사 다올인베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6층 628호(대치동, 롯데골드프로즈2)	지방소득세	2	681,775,740	수취인불명
710	1151	주식회사 큰사람휴먼시스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68길 41-18, 301호(선내동, 큐빅빌딩)	지방소득세	3	171,370,360	이사불명
711	1152	(주)정림플러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39, 405호(장안동, 동광빌딩)	지방소득세	3	40,652,410	이사불명
712	1153	아산약품 (주)	서울동대문구 용두동738-11비전빌딩1층	지방소득세	4	30,716,600	수취인불명
713	1154	(유) 고려푸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59, 2층 207호 (신길, 설탕빌딩)	지방소득세	2	24,744,430	이사불명
714	1155	재원케미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7-7 오피스허브 강남센터 303호	지방소득세	2	28,312,04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715	1156	(주)건축씨피에스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78(양재동)	지방소득세	13	46,760,610	수취인불명
716	1157	일우종합개발	서울강남구도곡동943-2서한빌딩308호	지방소득세	3	13,657,930	수취인불명
717	1158	주식회사 플럼플레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6-14 부원빌딩 4층	지방소득세	5	35,268,590	이사불명
718	1159	제이앤디어소시에이트	서울강남구청담동116-3교묘빌딩3층	지방소득세	1	72,627,950	이사불명
719	1160	(주) 그린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26-7, 201호 (대치동)	지방소득세	4	16,251,400	수취인불명
720	1163	씨크리트서비스(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91, 209호, 212호(신정동, 제이월드빌)	지방소득세	3	53,727,220	기타(보관기간경과)
721	1164	주식회사 이프	서울구로구로182-13대룡포스트타워2차 508호	지방소득세	18	19,748,620	수취인불명
722	1165	성아테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69길 10(대치동)	지방소득세	11	25,651,870	수취인불명
723	1166	주식회사 바이크올데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15길 12, 1층101호(오금동)	지방소득세	4	39,789,950	이사불명
724	1167	주식회사 인제밸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55, 4층(신월동)	지방소득세	6	29,114,560	수취인불명
725	1168	(주) 지에스리카버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8길 56102동 208호 (가산동, 가산삼익아파트)	지방소득세	3	44,312,420	이사불명
726	1169	주식회사 에스지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42, 3층(역삼동, 종원빌딩)	지방소득세	5	255,740,280	이사불명
727	1170	(주) 귀요미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30, 지하 114호(삼성동)	지방소득세	5	19,073,520	수취인불명
728	1171	(주) 태진이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3, 오801호(대치동, 선릉역 풍림아이원래몬)	지방소득세	2	21,321,800	기타(보관기간경과)
729	1172	주식회사 한라아이앤디	서울성동구성수동2가276-9	지방소득세	7	33,954,830	이사불명
730	1173	창주디앤에스 주식회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20, 202호(중곡동)	지방소득세	11	104,640,080	기타(보관기간경과)
731	1174	웅진엠에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7, 6동 2층 50호,51호(한강로3가, 원효로전자상가)	지방소득세	2	434,185,290	수취인불명
732	1175	(주) 메인미디어	서울영등포당산동2영등포유통상가3층라동20호	지방소득세	7	480,612,680	수취인불명
733	1176	홍은동제3주택재건추진 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69(홍은동)	취득세	2	65,169,300	이사불명
734	1177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 선교회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6-1	지방소득세	1	35,271,970	기타(보관기간경과)
735	1178	샘하우징 (주)	서울 강남구 연주로93길 14-7(역삼동, 삼경빌딩)	지방소득세	2	122,665,59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736	1180	주식회사 멀티라이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20길 34, 22동 2층 32호(한강로2가, 선인상가)	지방소득세	3	27,524,840	수취인불명
737	1181	(주)프로토스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92번길 17, 1층우측상가(은의동)	취득세	4	18,616,520	수취인불명
738	1182	(주)더블유메카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33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1203호	취득세	14	214,890,620	수취인불명
739	1183	(주)삼보하이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08 삼보아파트상가 304호	지방소득세	10	76,074,280	수취인불명
740	1184	서림씨앤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5,401호(삼성동,라테라스)	등록세	7	13,873,510	수취인불명
741	1185	서밋에셋스트레티지스 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2층(잠원동, 대능빌딩)	지방소득세	1	18,488,060	수취인불명
742	1186	(주)디자인리더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31, (논현동, 4층)	지방소득세	4	48,337,680	수취인불명
743	1187	중앙메이드건설주식회사	서울송파구송파동47-3영동빌딩401호	지방소득세	26	18,763,130	이사불명
744	1188	주식회사 탐엔시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803호(여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지방소득세	4	19,078,570	수취인불명
745	1189	(주)기든건축디자인	서울구로구고척동92-8기든상가222호	지방소득세	4	89,972,20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746	1190	(주)인성월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719(문래동2가)	지방소득세	4	39,702,720	수취인불명
747	1191	부자령주식회사	서울서초구반포1동708-5	지방소득세	4	43,111,07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
748	1193	다성컴퍼니 주식회사	서울송파구가락본동121-5302호	지방소득세	14	61,959,060	이사불명
749	1194	드웰	서울금천구가산동481-11대룡테크노8차317호	지방소득세	4	20,252,020	수취인불명
750	1196	하나씨이엔씨(주)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84, 102호(구로동, 하나세인스톤2차)	지방소득세	7	41,367,050	수취인불명
751	1197	주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508, 507호(개포동,오피스허브)	지방소득세	4	22,319,300	수취인불명
752	1198	주식회사 영웅티지	서울시용산구청파로125, (한강로2,나진상가 17동 기열 246,247호)	지방소득세	1	45,298,550	수취인불명
753	1199	주식회사 에스마트컴 (SMARTCO)	서울 도봉구 도봉로159길 26, 1층 (도봉동)	지방소득세	5	88,617,130	기타(보관기간경과)
754	1200	농업회사법인팔공주택개 발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지하 20, (역삼현대벤처텔 106호(144호))	지방소득세	1	31,931,270	수취인불명
755	1201	(주)스누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118호(신사동, 성도빌딩)	지방소득세	2	13,494,070	이사불명
756	1202	주식회사 원영아이디	서울중구예장동9삼익아파트상가103	지방소득세	5	43,664,03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757	1203	(주)세화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401, 에이동 311호(기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지방소득세	6	28,545,820	수취인불명
758	1204	(주)노블레스웨딩컨설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20-7, 410호(대치동, 우원빌딩)	지방소득세	4	69,271,910	수취인불명
759	1205	주식회사 노트코리아앤씨	서울송파구원효로37가51-30원효전자상가6동3층122호	지방소득세	5	23,636,740	수취인불명
760	1206	주식회사 지산플레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98길 36, 901호(역삼동, 루트원레지던스)	지방소득세	1	266,048,190	수취인불명
761	1207	(주)한국부동산개발산업	서울시 중구 청파로 443, 2층(종림동)	지방소득세	4	20,571,060	수취인불명
762	1208	(주)맛샘푸드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지방소득세	1	46,575,990	수취인불명
763	1209	세안소프트	서울광진구자양3동553-43한양빌딩408호	지방소득세	1	141,808,190	수취인불명
764	1210	플라리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7, 117호	지방소득세	2	65,749,650	수취인불명
765	1211	주식회사 다올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81, 21동 1층 120호(한강로2가, 선인상가)	지방소득세	2	24,522,240	수취인불명
766	1212	주식회사 태웅로지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기정로 65, 201동 지하1층 206호 (전농동, 레미안크래시티상가)	취득세	4	17,425,81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767	1214	주식회사 제우스컴퍼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125, 3층 나열동 318호 (한강로2가, 나진상가 18동)	지방소득세	1	64,341,660	수취인불명
768	1215	(주)승승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367	지방소득세	1	56,980,400	기타(보관기간경과)
769	1216	원빌디엔씨	서울서초구양재동67해인빌딩5층	지방소득세	1	23,981,850	이사불명
770	1217	유한회사 프리스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4800호	지방소득세	1	38,535,770	수취인불명
771	1218	주식회사 상상갤러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76(신길동)	지방소득세	14	14,739,200	수취인불명
772	1219	(주)아이원 쓰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2-1, 2층(인현동2가, 도원빌딩)	지방소득세	4	13,649,270	이사불명
773	1220	(주)가나인알앤디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1길 47, 상가동 지하층(화양동)	지방소득세	1	41,196,940	이사불명
774	1221	렌더스제원	서울동대문구답십리1동493-5클래식타워803호	지방소득세	3	602,536,190	수취인불명
775	1222	티엔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9, 403호(공릉동, 해중빌딩)	지방소득세	9	26,631,210	수취인불명
776	1224	한일월드(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한신타워501,502,503,504,1108호 (구로동)	지방소득세	18	58,350,010	이사불명
777	1225	(주)제코시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2층 에이-25 (삼성동,코엑스)	지방소득세	10	19,207,980	수취인불명
778	1227	주-드림브릿지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15 [백제고분로41길 19-24]	지방소득세	26	50,217,10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779	1228	진성트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159, 4층(황학동)	지방소득세	2	27,423,970	수취인불명
780	1230	주식회사 피닉스일렉트로닉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길 15, 미동 4310호(구로동, 중앙유통단지)	지방소득세	11	189,222,150	수취인불명
781	1231	(주)로드앤스테이	서울금천구가산동60-69엘리시아605호	취득세	6	44,337,870	이사불명
782	1232	길도건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2호(서초동, 길도빌딩)	등록세	7	47,451,740	수취인불명
783	1233	(주)나노트로닉스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20(암사동, 한일빌딩)	지방소득세	14	33,420,420	폐문부재
784	1234	리스페이스(주)	서울강남구논현2동210-2재정빌딩301호	지방소득세	4	20,296,440	수취인불명
785	1236	(주)타임스토리필름앤북스	서울 강남구 역삼로2길 17, 4층 306호 (역삼동, 제이플러스타워)	취득세	15	14,496,420	수취인불명
786	1237	(주)태원에프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605호 (양평동5가,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A)	지방소득세	7	23,503,930	수취인불명
787	1239	주식회사블랙홀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2로 67, 801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7)	취득세	1	15,505,250	수취인불명
788	1240	주식회사 효원에프씨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368-68401	지방소득세	2	19,964,430	폐문부재
789	1241	(주)에프아이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371-17BYCHIGHCI TYC-1501	취득세	3	58,012,870	수취인불명
790	1242	주식회사 미트라인	서울강남구개포4동1259-4흥진빌딩3층	지방소득세	2	191,477,940	수취인불명
791	1243	남서울글로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6, 446호(역삼동,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씨티)	지방소득세	1	99,415,130	수취인불명
792	1244	(주)나노알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48(논현동)	지방소득세	8	19,757,080	수취인불명
793	1245	버디엔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 550, 6층(역삼동, 장인빌딩)	지방소득세	3	17,150,170	이사불명
794	1246	(주)아이알지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5 2층 200호(역삼동, 남경선능빌딩)	지방소득세	2	38,024,440	수취인불명
795	1247	(유)영화상회	서울송파구가락1동600강동수산(주)544호	지방소득세	3	64,578,820	주소불명
796	1248	아이디인쇄	서울중구필동2가110-60아이인쇄	취득세	8	15,132,020	수취인불명
797	1249	엔엑스홀딩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전자터운상가비동지하2호	지방소득세	3	25,378,290	이사불명
798	1250	주식회사 다일통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05 202호(도봉동, 한영빌딩)	지방소득세	2	17,128,280	이사불명
799	1251	(주)로렉스앤세노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45-18	지방소득세	3	16,585,300	이사불명
800	1252	(주)에스엔이노텍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숲길길 80-5, 에이동	지방소득세	3	78,302,77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801	1253	주식회사 천지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1동오월빌딩3층동	지방소득세	2	23,787,450	수취인불명
802	1254	(유)에코프리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146, 301호(정안동, 부흥빌딩)	지방소득세	1	14,014,400	이사불명
803	1255	휴렉스아이엔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3 삼대양빌딩 201호	지방소득세	3	92,121,400	이사불명
804	1258	(주)인투아이엔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719호(여의도동, 백상빌딩)	지방소득세	1	23,955,660	수취인불명
805	1260	김효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제로92번길 23-1 3동 101호 (부평동, 세종탑스빌)	지방소득세	2	21,383,940	폐문부재
806	1261	기세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 한신5차아파트 117-307	지방소득세	18	69,856,030	이사불명
807	1262	강종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3길 91 101호 (성산동, 한신하이츠빌라)	지방소득세	21	51,182,250	수취인불명
808	1263	박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1 (송인동)	지방소득세	2	25,364,70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809	1264	박종석	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 49 (대성동)	지방소득세	2	39,789,950	폐문부재
810	1272	이명건	서울 마포구 망원로2길 96, 2층 7호 (망원동)	지방소득세	6	19,073,520	수취인불명
811	1275	백금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7길 8 (독산동)	지방소득세	3	602,536,19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812	1276	한석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문화로 39 (모봉리)	지방소득세	7	23,433,820	기타(보관기간경과)
813	1278	이영재	강원도 삼척시 남산길 57 (남양동)	지방소득세	18	130,725,230	수취인불명
814	1283	안재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132번길 43-26 101호 (일산동)	지방소득세	2	292,750,230	폐문부재
815	1286	이동규	서울 용산구 이촌로34길 29, 102동 1903호(이촌동, 현대한강아파트)	지방소득세	2	179,356,280	기타(보관기간경과)
816	1291	최규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6길 17 1702동 203호 (창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8	27,880,750	기타(보관기일경과)
817	1294	권동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16동 1301호 (신천동, 파크리오)	등록세	5	106,550,50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불능)
818	1295	김정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7-11 (인사동)	지방소득세	19	131,407,20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819	1296	장정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126동 1004호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지방소득세	1	247,763,950	기타(보관기간경과)
820	1298	이은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 726동 101호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록세	6	19,713,240	기타(보관기간경과)
821	1299	최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86-2 하안전원빌리지층비01호 (누암동)	지방소득세	4	26,384,480	기타(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822	1303	김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82 202호 (연희동)	지방소득세	1	1,798,781,970	기타(보관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823	1305	조현욱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번길 13 (이동교리)	지방소득세	3	55,996,730	폐문부재
824	1307	임방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니들목로 33 (하리)	등록세	8	95,161,190	기타(보관기일 경과)
825	1310	신승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7 502호 (제송동)	취득세	3	92,981,730	폐문부재
826	1311	최호준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20 (필동3가)	지방소득세	4	22,091,500	수취인불명
827	1313	강석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8가길 46 B02호 (행당동)	취득세	14	72,627,950	기타(보관기간경과)
828	1315	신홍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2길 19-6 (독산동)	지방소득세	3	480,612,680	수취인불명
829	1317	이량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장로220번길 49-16 D동 B01호 (산곡동, 명보빌라)	지방소득세	3	65,169,300	폐문부재
830	1319	이강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91-21 (동자동)	지방소득세	1	214,890,620	수취인불명
831	1320	윤석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7길 53-7 205호 (반배동)	지방소득세	2	31,931,270	기타(보관 유효기간 경과.)
832	1322	이정수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484번길 68-7 105동 1402호 (괴안동, 신일해피트리아파트)	등록세	7	14,109,620	폐문부재
833	1325	이종익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96번길 42 502동 701호 (풍무동, 풍무자이)	지방소득세	5	33,420,420	수취인불명
834	1328	박지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1나길 10-1 (전농동)	지방소득세	12	26,539,23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835	1330	김명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1 610동 1201호 (자곡동, 래미안 강남힐즈)	취득세	15	40,173,860	기타(보관기간경과)
836	1333	김광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207호 (당산동2가)	지방소득세	1	16,773,39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837	1334	이병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28-29 402호 (잠실동, 산호빌라)	지방소득세	10	23,452,210	수취인불명
838	1337	김병수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104번길 9 406호 (삼산동)	지방소득세	5	104,858,060	기타(보관기간경과)
839	1338	남용현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2길 4 (서부동)	지방소득세	7	14,785,090	기타(보관기간경과)
840	1341	이병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7길 40-4 401호 (봉천동, 봉천리젠시빌)	지방소득세	6	26,563,820	기타(보관기간경과)
841	1344	진희평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140 201호 (원정리)	지방소득세	4	68,142,390	폐문부재
842	1347	이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33-5 202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2	43,390,210	기타(보관기간경과)
843	1354	유병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79 가동 (장안동)	지방소득세	2	29,235,860	이사불명
844	1355	박한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4길 38 (묵동)	지방소득세	11	47,292,990	이사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845	1356	이호준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6길 20 102동 901호 (용계동, 용계타운아파트)	취득세	3	64,603,250	폐문부재
846	1358	관성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92 721동 504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4	17,799,15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847	1360	김영석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41 104동 2004호 (남천동, 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지방소득세	2	19,927,400	수취인불명
848	1361	송태강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431 4층 (심곡동)	지방소득세	5	21,151,470	수취인불명
849	1362	류근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164번길 20 102동 2001호 (성북동, 버들치마을 성북자이1차)	지방소득세	6	43,841,340	폐문부재
850	1363	김성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16-2 (매화동)	지방소득세	4	18,343,280	기타(보관기간경과)
851	1364	윤경석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118번길 7 101동 1004호 (신읍동, 휴먼시아 아파트)	취득세	3	32,996,87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852	1365	박상진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 16 405동 304호 (정왕동, 영남아파트)	취득세	4	27,487,860	기타(유치보관경과)
853	1368	이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26길 21-5 202호 (화곡동, 동도빌라)	취득세	1	17,810,650	폐문부재
854	1369	강남식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52번길 37 지층 (인창동)	지방소득세	1	44,237,450	폐문부재
855	1370	우원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78 (월피동)	지방소득세	1	109,970,73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856	1371	한건욱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로159번길 14 105동 202호 (의정부동, 한진그랑빌라)	지방소득세	5	30,191,630	폐문부재
857	1372	신종철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265번길 32-6 (생연동)	지방소득세	8	58,858,580	기타(보관기간경과)
858	1374	신일웅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78 517호 (연희동, 딜라이트타워)	지방소득세	5	102,178,450	폐문부재
859	1375	안정근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102번길 19 A동 B01호 (광명동, 백마빌라)	지방소득세	15	52,242,870	폐문부재
860	1376	김희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156 4004동 801호 (하동, 광교마을40단지)	지방소득세	11	21,120,350	폐문부재
861	1379	강진모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가길 25 (미아동)	지방소득세	4	26,878,750	기타(보관기간경과)
862	1381	최종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방천로153번길 6 101호 (안양동)	취득세	2	38,283,950	수취인불명
863	1386	김기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12-3 (신월동)	지방소득세	8	40,901,860	기타(보관기간경과)
864	1388	조종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방천로28번길 17 102호 (안양동)	지방소득세	1	29,656,680	수취인부재
865	1389	홍영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7 1205동 1203호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12단지)	취득세	2	111,513,440	기타(보관기간경과)
866	1392	서운석	경기도 평택시 지산천로 66 8동 107호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지방소득세	4	34,377,260	주소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867	1393	정제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4 504동 705호 (아탑동, 탑마을)	지방소득세	3	25,322,200	수취인부재
868	1394	이명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3 103동 1301호 (고척동, 삼화로즈빌아파트)	등록세	2	23,016,77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869	1395	정창선	경기도 광명시 광일로 45 301호 (광명동, 대우아트빌라)	취득세	3	15,383,180	폐문부재
870	1397	정철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미등골길 226-12 (신동리)	지방소득세	6	16,197,230	폐문부재
871	1400	최규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4동 601호 (삼성동, 홍실아파트)	지방소득세	1	22,909,980	기타(수취인부재(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872	1403	박현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8가길 4 B동 B01호 (수유동, 신성빌라)	지방소득세	33	22,313,310	기타(보관기간경과)
873	1404	주종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0길 5 (도선동)	지방소득세	4	17,043,030	기타(보관기간경과)
874	1405	박명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양로 19 706동 512호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지방소득세	2	16,180,650	이사불명
875	1407	이성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9길 11 201호 (삼성동)	지방소득세	10	146,133,000	수취인불명
876	1409	이홍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23길 6 지층 2호 (오금동)	지방소득세	28	24,241,540	수취인불명
877	1415	전성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위로11가길 23 (장위동)	지방소득세	1	23,001,430	기타(보관반송)
878	1416	김재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2길 9-1 201호 (응암동, 한남빌라)	지방소득세	9	46,360,860	수취인부재
879	1421	양승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15 314호 (창동, 한성빌딩)	지방소득세	2	22,628,100	기타(보관기간경과)
880	1422	이종필	경기도 양평군 양문면 양문산로 125 (덕촌리)	지방소득세	3	116,758,540	폐문부재
881	1423	박종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98번길 59-3 102호 (가경동)	지방소득세	2	37,063,750	수취인불명
882	1425	김영숙	인천광역시 남구 동신로12번길 6-1 (도화동)	지방소득세	2	40,452,680	폐문부재
883	1426	이준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7길 17 103호 (동소문동7가, 현대기든빌라)	지방소득세	3	40,026,730	기타(보관반송)
884	1427	김효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92번길 23-1 3동 101호 (부평동, 세종탑스빌)	지방소득세	1	24,295,720	폐문부재
885	1430	이옥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외홀로 363-12 1층 101호 (외홀리)	지방소득세	7	16,537,400	폐문부재
886	1433	정성필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867 (교리리)	지방소득세	3	52,175,010	수취인불명
887	1434	박찬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개너루길 6 (포진리)	지방소득세	19	55,797,860	수취인불명
888	1439	손태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2 403호 (삼성동)	지방소득세	4	39,076,22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889	1441	권제순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70번길 5-7 나동 302호 (여곡동, 파인캐슬)	지방소득세	7	64,989,490	폐문부재
890	1444	박진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5번길 3 689호 (상현동, 광교U-TOWER)	취득세	4	19,739,66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891	1445	이태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5길 48 202호 (가산동)	등록세	2	27,091,60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
892	1446	윤례성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18 2211동 205호 (호평동, 호평미울 호성 백년가옥)	지방소득세	14	16,497,310	기타(보관기간 경과)
893	1447	김숙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72길 83 (고덕동)	지방소득세	7	33,996,190	폐문부재
894	1453	진성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3길 28-7 101호 (연남동)	지방소득세	2	28,977,820	기타(보관기간경과)
895	1457	최기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3가길 18 (이문동)	지방소득세	1	41,308,87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896	1458	안세강	경기도 의왕시 민백2길 11 (내손동)	지방소득세	3	37,973,960	폐문부재
897	1460	최용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0길 38 104동 701호 (답십리동, 대림아파트)	지방소득세	3	33,891,870	기타(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필요)
898	1461	이근용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삼곡봉하길 85 (삼곡리)	취득세	10	28,931,040	기타(보관기간경과)
899	1465	주정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47 (부전동)	지방소득세	13	78,488,960	폐문부재
900	1466	정길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레로11길 21 101동 102호 (신월동, 길훈에트런스빌)	지방소득세	10	42,072,540	수취인불명
901	1470	김상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00-19 202호 (양재동, 삼원빌라)	지방소득세	6	33,281,290	이사불명
902	1471	한만철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장미길 9-1 105호 (마정리)	지방소득세	7	106,074,600	이사불명
903	1472	방석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29 124동 1516호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지방소득세	9	13,023,430	수취인불명
904	1473	최경호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32번길 10 201호 (광명동, 영호빌라)	지방소득세	2	12,989,580	수취인불명
905	1476	남희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65번길 5-26 (봉곡동)	지방소득세	3	204,353,660	기타(보관기간경과)
906	1478	김용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81 107동 1304호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지방소득세	8	63,230,650	폐문부재
907	1479	문성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제당길 166 (신선동27가)	지방소득세	4	39,719,030	이사불명
908	1480	안이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87 (중동)	지방소득세	4	36,382,110	기타(보관기간경과)
909	1481	강병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4길 17 (혜화동)	지방소득세	1	64,938,470	주소불명
910	1487	추교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3길 11-5 204호 (삼성동)	취득세	3	95,907,710	기타(보관기간경과)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911	1488	신지하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06-40 202동 2203호 (고암동, 주원미들)	지방소득세	1	70,946,790	기타(재접수반송)
912	1492	이태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 A동 1205호 (여의도동, 공작아파트)	취득세	1	15,988,180	수취인불명
913	1494	최영철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387-6 (삼곡동)	지방소득세	8	20,659,720	폐문부재
914	1495	김동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25번길 53-1 4동 303호 (묵현리, 대영빌라)	지방소득세	8	53,837,550	기타(보관기간 경과)
915	1498	황성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5 (덕은동)	취득세	16	46,553,130	이사불명
916	1501	조재형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01-24 2층 (인사동)	취득세	8	34,916,54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불요.)
917	1502	황등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15번길 21 101동 1409호 (남촌동, 풍림아파트)	취득세	18	30,389,590	폐문부재
918	1503	엄태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길 3-12 (신림동)	지방소득세	15	29,430,340	기타(보관기간 경과)
919	1504	정철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5길 44 202호 (쌍문동)	지방소득세	8	165,504,510	기타(보관기간 경과)
920	1506	인봉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6-18 702호 (신사동, 에이플러스포리스빌)	지방소득세	13	23,277,100	폐문부재
921	1507	김형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57-6 옥탑층 (냉천동)	지방소득세	7	26,862,570	수취인불명
922	1510	반도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88 284동 304호 (상현동, 상현미원현대성우3차아파트)	지방소득세	4	681,775,74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923	1513	유영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기길 13 (이화동)	지방소득세	10	171,370,36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불요.)
924	1514	서형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관문2길 7-1 (양근리)	지방소득세	3	40,652,410	수취인불명
925	1515	김재권	서울특별시 상북구 중앙로24가길 80 108동 1103호 (종암동, 래미안 리센트)	지방소득세	4	28,312,040	기타(보관반송)
926	1516	김정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59 (사당동)	지방소득세	2	25,651,870	기타(보관기간 경과)
927	1519	송광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13 302호 (고잔동, 현우주택)	지방소득세	3	44,312,42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928	1525	서소옥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134 105동 801호 (목길동, 부천옥길H1단지)	지방소득세	6	255,740,280	폐문부재
929	1527	이점순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478-51 <3/7>	지방소득세	5	21,321,800	수취인부재
930	1528	민경철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66 102동 1007호 (광명동, 광명영화아너스아파트)	지방소득세	2	104,640,080	폐문부재
931	1529	서동완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58번길 115 606동 702호 (삼승동, 양주자이아파트)	지방소득세	11	18,488,060	폐문부재
932	1531	이재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60번길 5 2동 1403호 (송죽동, 동진아파트)	지방소득세	7	18,763,130	수취인불명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933	1536	김종옥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내앞길 39-1 (천천리)	지방소득세	26	89,972,200	수취인불명
934	1537	방대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길 120 105호 (개봉동)	지방소득세	4	39,702,720	이사불명
935	1539	이창학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11길 56-5 (송정동)	지방소득세	4	20,252,020	기타(보관기간경과)
936	1540	양명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6길 38 401호 (가락동)	지방소득세	14	22,319,300	수취인불명
937	1543	조명환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252 (연지동)	지방소득세	4	88,617,130	폐문부재
938	1545	유용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43 (중곡동)	지방소득세	5	13,494,070	수취인불명
939	1546	박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45 301호 (역삼동, 로얄팰라스아파트)	지방소득세	2	43,664,030	수취인불명
940	1547	김규미	경상북도 상주시 남원1길 16 106동 202호 (낙양동, 현대피스텔)	지방소득세	6	46,575,990	기타(보관기간 경과 반송)
941	1548	서홍석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독정1길 16 (만정리)	지방소득세	4	141,808,190	이사불명
942	1552	최제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3나길 1 (신림동)	지방소득세	2	65,749,650	기타(보관기간경과)
943	1553	김동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29 (명륜동)	지방소득세	2	38,535,77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
944	1554	김봉희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40번길 13 2동 610호 (인창동, 삼호아파트)	취득세	4	14,739,200	수취인불명
945	1558	이정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03번길 24-4 (청천동)	지방소득세	4	26,631,210	폐문부재
946	1559	한태용	경기도 동두천시 큰시장로 64 B.41호 (생연동, 세아프라자아파트)	지방소득세	1	189,222,150	수취인불명
947	1562	양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26동 602호 (잠실동, 잠실엘스)	지방소득세	10	44,337,870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불능)
948	1566	조동락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0길 39 102동 606호 (서초동, 서초동롯데캐슬리버티)	등록세	7	47,451,740	수취인불명
949	1567	장성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166번길 44-6 (마두동)	지방소득세	14	14,496,420	폐문부재
950	1568	김명호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75-6 (증산리)	지방소득세	4	23,503,930	수취인불명
951	1572	서진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4-10 8동 304호 (고양동, 청림빌라)	취득세	1	19,964,430	폐문부재
952	1573	박병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40 (송파동)	지방소득세	2	191,477,940	수취인불명
953	1575	이상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47 (상도동)	지방소득세	2	99,415,130	주소불명
954	1577	장성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166번길 44-6 (마두동)	지방소득세	8	38,024,440	폐문부재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955	1578	최병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1길 28 C동 202호 (대림동, 경성빌라)	지방소득세	3	64,578,820	기타(수취인부재 (보관기간경과반송) [특수계])
956	1581	이영선	경기도 이천시 읍면 고월로289번길 116-5 (월포리)	취득세	8	15,132,020	폐문부재
957	1582	박정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365 104동 1103호 (구래동, 엘에이치한강엔트럴리버)	지방소득세	3	25,378,290	폐문부재
958	1583	공명화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63번길 27-2 (광명동)	지방소득세	2	78,302,770	폐문부재
959	1584	정영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6번길 24-59 (탄현동)	지방소득세	3	122,665,590	주소불명
960	1587	정혜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길 37-1 (신월동)	지방소득세	1	106,444,640	수취인불명
961	1591	박동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4 102호 (구월동, 성마을)	취득세	4	27423970	폐문부재
962	1592	김의택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13동 204호 (광장동, 워커히아파트)	지방소득세	6	33134760	폐문부재
963	1593	공선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31 28/1	취득세	6	901582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64	1594	손금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74 152동 1903호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지방소득세	3	916187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65	1595	김정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5 201동 603호 (여월동, 여월휴먼시아)	지방소득세	3	392876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66	1596	윤명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17-5 (동자동)	지방소득세	4	1664516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67	1597	이봉춘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77 502동 1904호 (수택동, 금호아파트)	취득세	1	16333488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68	1598	김윤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5길 4-8 2층 201호 (갈현동, 수정빌라)	지방소득세	1	236367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69	1599	신창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95-2 3층 (을지로2가)	지방소득세	2	1678029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0	1600	이호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9길 9 3층 (청담동)	지방소득세	4	1580756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1	1601	김주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길 96 (등촌동)	지방소득세	17	129193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2	1602	캐나다국민 공헨리	서울영등포구양평동2가137-1909	취득세	2	629566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3	1603		서울특별시종로구구기동26-26	취득세	1	467606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4	1604	CHONG KEAT LEONG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72441/7로즈데일오피스텔1908호	지방소득세	8	452985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5	1605	조승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6-14 부원빌딩 4층	지방소득세	5	26804819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6	1606	최규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지하 20, (역삼현대벤처텔 106호(144호))	지방소득세	1	409810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977	1607	송영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지방소득세	1	6332895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이민등)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978	160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0층	지방소득세	3	118195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79	1609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744-4	취득세	1	657444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0	1610	이운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87-5 104동 401호 (청천동, 수정홀타운)	지방소득세	2	226197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1	1611	이홍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37 (고등동)	지방소득세	2	176343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2	1612	한재덕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양로 299 (수유동)	지방소득세	1	359327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3	1613	황광호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59 (주안동)	지방소득세	1	414437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4	1614	김정숙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150 1605동 102호 (상동, 사령마을)	취득세	19	3152952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5	1615	김정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11 (만수동)	지방소득세	14	371456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6	1616	한명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05-1 (산곡동)	지방소득세	2	483376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7	1617	유창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115번길 8 103호 (신성동)	지방소득세	2	502171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8	1618	김종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6-16 E동 101호 (내유동, 봉래타운)	지방소득세	4	760742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89	1619	최성복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나길 15-4 (고척동)	지방소득세	11	476453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0	1620	크리스영동유	미합중국 워싱턴주 메디나 에버그린 포인트로드 1641	지방소득세	1	259690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1	1621	JIN ZIJING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3-2	지방소득세	1	3948599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2	1622	이용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1, (사직동)	지방소득세	1	2042496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3	1623	이상준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1-9 8/2	지방소득세	3	3545816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4	1624	신승엽	국적이탈(말소자)	지방소득세	1	842496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5	1625	서정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1306호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지방소득세	3	108704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6	1626	김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7	지방소득세	1	2548666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7	1627	김옥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2 (성산동)	지방소득세	1	242352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8	1628	שלמנש	서울 서초구 우면동 57 26/6 대림아파트 106동 1304호	지방소득세	1	153290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999	1629	조경현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1276 32/6 청암아파트 202동 901호	지방소득세	1	127314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0	1630	김명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8-16 22/8	지방소득세	1	4037049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001	1631	XU MEIHU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27가길 16-15(이문동)	지방소득세	1	247097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2	1632	유제이	서울강남구압구정동514미성아파트2동503호	지방소득세	5	138380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3	1633	윤길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8 501호 (연남동)	지방소득세	2	242964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4	1634	김은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 18/1 우성아파트 17동 401호	지방소득세	1	459845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5	1635	유제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0길 24-3 (대조동, 대조동주민센터)	지방소득세	4	192491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6	1636	정남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8-9 (신림동)	지방소득세	14	143916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7	1637	임종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3-9 (광희동1가)	지방소득세	2	124505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8	1638	이순구	서울 마포구 현석동 108	지방소득세	1	244934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09	1639	유광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1길 3-6 103호 (용수리)	지방소득세	1	242677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0	1640	허정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36 (삼전동, 삼전동주민센터)	지방소득세	4	262682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1	1641	박수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B동 204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방소득세	6	437972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2	1642	윤순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65 (백석동)	지방소득세	1	20328279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3	1643	김정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924호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지방소득세	4	245874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4	1644	박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동)	지방소득세	4	709837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5	1645	안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2 101동 2801호 (청담동, 청담자이아파트)	지방소득세	3	341451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6	1646	이태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95 (도화동)	지방소득세	4	290049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7	1647	도기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2 송파1동 주민센터 (송파동)	지방소득세	5	231282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8	1648	안민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 103동 804호 (계산동, 계산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1	346424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19	1649	김준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7길 75 403호 (북아현동, 에이플러스리빌텔)	지방소득세	3	257754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0	1650	김창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47가길 5 (봉천동)	지방소득세	3	155805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1	1651	이찬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22 방이1동 주민센터 (방이동)	지방소득세	5	135077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2	1652	이예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6-10 B02호 (수유동, 명가빌라)	지방소득세	1	416167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3	1653	김성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다길 64 (삼선동1가)	지방소득세	1	377734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024	1654	강신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3가길 5 (화곡동, 지층)	지방소득세	9	147767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5	1655	김일천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4길 8(천호동)	지방소득세	1	695548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6	1656	이재준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43(현대116동501호)	지방소득세	1	2737529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7	1657	CHEN KUAN YU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8, (한강로3가, 용산전자오피스텔 1509,1510)	지방소득세	1	153904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8	1658	정케네스근	서울송파구잠실동35트리지움345동404호	지방소득세	3	380048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29	1659	서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13(토정동)	지방소득세	1	118813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0	1660	엘리자베스정	서울광진구능동237-18	지방소득세	1	487159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1	1661	김진진	서울마포상암1655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407-1501	지방소득세	1	193088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2	1662	손영록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50 807동 1206호 (다을동, 청석마을 동문굿모닝힐)	지방소득세	1	145043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3	1663	정부천	강서구 공항대로 53길 24(303호, 등촌동)	지방소득세	2	239690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4	1664	CHIN EDGAR HON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1-62프레스타운504호	지방소득세	1	323501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5	1665	오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93 3층 303호 (영천동)	지방소득세	5	145567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6	1666	이경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4다길 16 (삼선동1가)	지방소득세	3	539605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7	1667	김평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 (문배동)	지방소득세	18	217123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8	1668	조명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90길 120 102동 401호 (청담동, 씨티아파트)	지방소득세	1	190559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39	1669	황정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왕도로23길 7 (천호동)	지방소득세	2	1562348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0	1670	김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임로5길 18 503호 (암사동)	지방소득세	6	1467747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1	1671	유태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93-5 (상봉동)	지방소득세	11	165661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2	1672	김은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	지방소득세	3	3813006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3	1673	곽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지방소득세	2	183535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4	1674	박석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1길 24 (이촌동)	지방소득세	2	3160371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5	1675	정형모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0길 35-20 302호 (가락동)	지방소득세	15	741599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6	1676	이대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66 413호 (옥수동, 성원상떼뷰)	지방소득세	4	448989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연번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대표세목명	건수	지방세체납액	반송(공시송달)사유
1047	1677	김운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길 38 (북아현동)	지방소득세	71	13170772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8	1678	박청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고개로24길 54-7 101호 (울현동)	지방소득세	6	241855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49	1679	장양수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예술인길 57 (온당리)	지방소득세	3	277979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0	1680	황낙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7길 12 103동 2005호 (풍납동, 쌍용아파트)	지방소득세	1	1144607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1	1681	김영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4길 20 404호 (신사동)	지방소득세	7	832688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2	1682	김금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동)	지방소득세	4	256036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3	1683	김용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숲샘로 77-1 (정릉동)	지방소득세	14	134138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4	1684	윤광열	서울특별시은평구대조동168코아빌라자층1호	지방소득세	1	119408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5	1685	조정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38 (독산동)	지방소득세	7	1330270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6	1686	유세결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7길 38-9 (미아동, 1층차측)	지방소득세	1	14538909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7	1687	고정옥	경기 구리시 교문2동, 808 덕현(아)102-805	지방소득세	1	825524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8	1688	박진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길 54 (내발산동)	지방소득세	3	6275886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59	1689	서순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길 46-6 1동 301호 (궁동, 뉴그린빌라)	지방소득세	2	187391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0	1690	이동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길 38 (북아현동)	지방소득세	3	4658775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1	1691	홍기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27 104동 204호 (청담동, 대림아파트)	지방소득세	7	9031357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2	1692	윤성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2-18, (이태원동)	지방소득세	1	1435933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3	1693	김종석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2 13동 1206호	지방소득세	1	395854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4	1694	탐킨제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91, (봉천동)	지방소득세	2	2271479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5	1695	YIN CHING YU	서울중구명동2가189	지방소득세	2	2114469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6	1696	윤승민	현지어민자	지방소득세	1	201198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7	1697	경효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15/8 신동아아파트 16동 902호	지방소득세	1	5457932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8	1698	빈센트이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36길 15-1, (전농동)	지방소득세	1	2011988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1069	1699	문준호	서울 송파구 산천동 7 5/4 장미아파트 13동 806호	취득세	4	545793240	기타(국적이탈, 말소자, 현지어민등)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65번지 일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종로구청장

1. 결정 취지

신영제1재개발구역과 인접한 신영동 165번지 일대 도로 단절된 구간에 대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6	국지 도로	30	신영동 165	신영동 165	일반 도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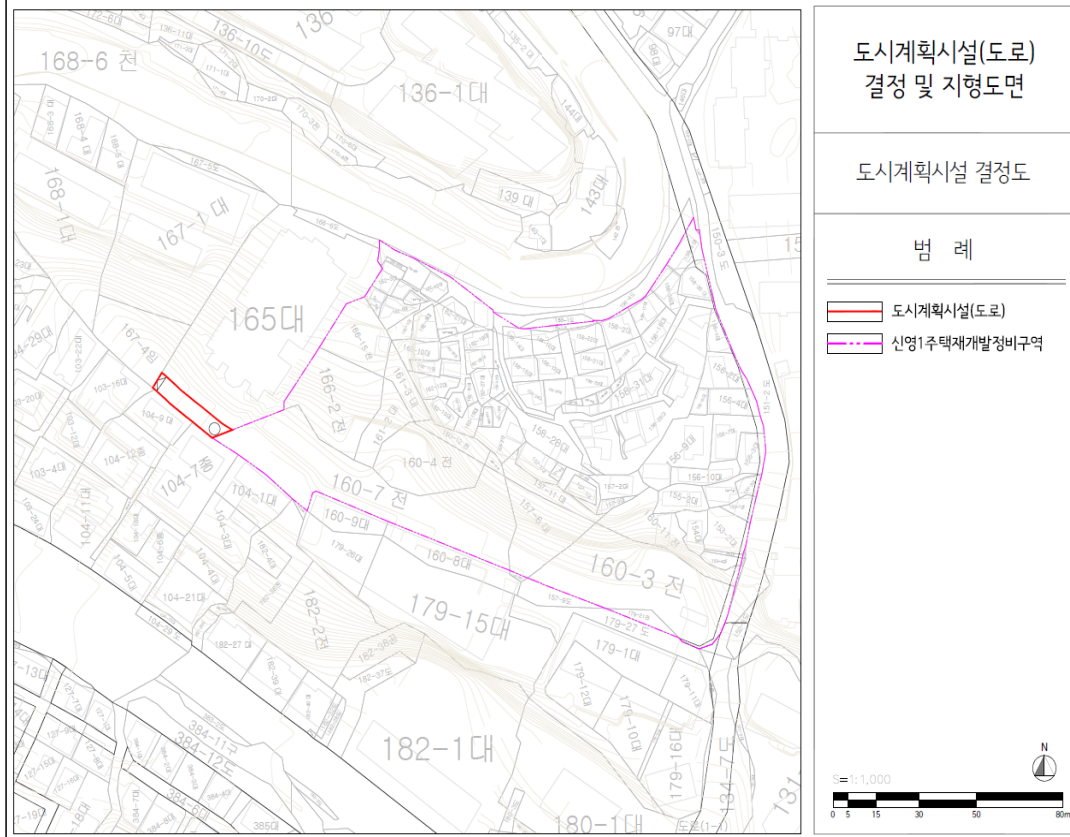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3) 및 도로과(☎2148-31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 종로구고시 제2017-47호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결정(변경)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청동 62-13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3.31.)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건축한계선변경)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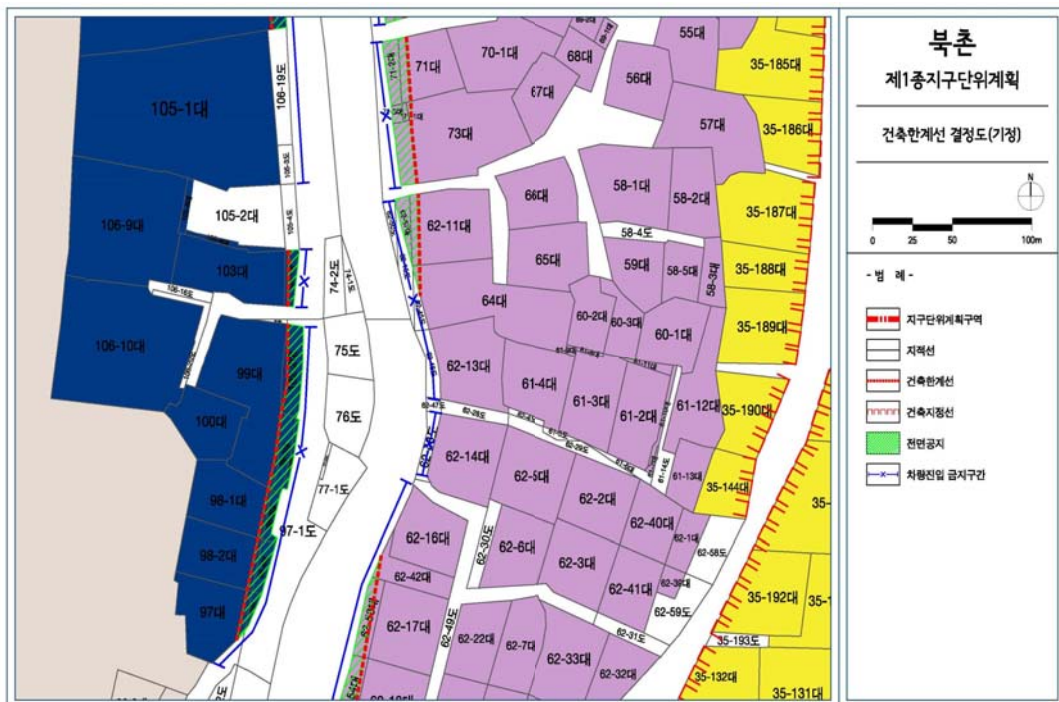
2017년 4월 6일
종로구청장

1.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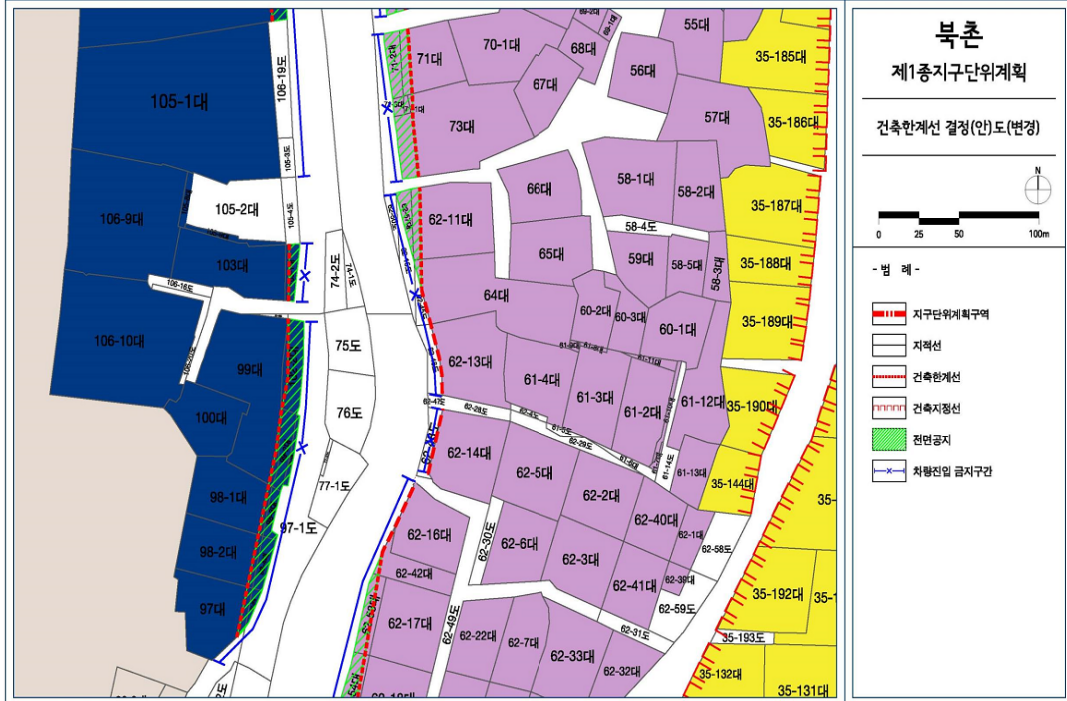
○ 건축선 지정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 한계선	가회로변 삼청동길변 을곡로변	-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공간의 조성 - 전면도로의 보도와 통합하여 보행공간 조성 - 차면시설, 설비시설, 적치물 금지 -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 - 차량 출입 금지 및 가로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대지경계선에 저층 식재	-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단,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확보되어 있으나 도로에 건축한계선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공간의 조성 - 전면도로의 보도와 통합하여 보행공간 조성 - 차면시설, 설비시설, 적치물 금지 -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 - 차량 출입 금지 및 가로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대지경계선에 저층 식재	- 해당부분 도면표기 - 단, 가회로변, 삼청동길변 한옥건축시 건축한계선을 적용하지 않음. 이 때, 한옥은 본 지침 제3조 제⑤항 및 제25조에 부합하여야 함. - 후퇴한 부분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및 본 지침 제22조 준수

□ 건축한계선 결정도(기정)



□ 건축한계선 결정도(변경)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고시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 제367호(1973.9.6.)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1호(2007.5.25.)로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중구 다동 5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다동공원(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 규모 : 3,936.20㎡ 중 427.3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주)하나은행

2) 주 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15 KEB하나은행 본점신축추진실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06.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다동	51-14	대	379.0	379.0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	
2	다동	51-2	대	48.30	48.3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3396-5783) 및 공원녹지과(☎3396-58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고시 제2017-2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관내 회현동1가 64-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중 구 청 장

1. 결정취지 : 회현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중구고시 제2016-107호(2016.11.17.)호로 변경결정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에 대하여 비고란에 작성한 층수표기를 삭제하고 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선형 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2,427.9	감)39.1	2,388.8	중구고시 제2003-20 (03.4.7)	○중복결정 • 지상 : 공공청사 • 지하 : 주차장 ※층수 표시 삭제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2,427.9	감)39.1	2,388.8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중복결정 • 지상 : 공공청사 • 지하 : 주차장 ※층수 표시 삭제 ※선형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노형	분류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28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40	회현동1가 퇴계로선	회현동1가 남산밀	건설부고시 제177호 (62.12.8.)	
변경	중로	1	28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40	회현동1가 퇴계로선	회현동1가 남산밀	건설부고시 제177호 (62.12.8.)	일부 구간 확폭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도로) (변경)결정도(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5) 및 토지관리과(☎02-3396-592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 (변경)결정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도(변경) >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도

<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도(변경) >



◆ 용산구고시 제2017-3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7-6호(2017.1.9)로 실시계획 인가된 우리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394)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17년 4월 6일
용 산 구 청 장

가. 변경인가 내용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국방부 교육센터 건립사업
-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의 28필지
-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4) 사업기간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19. '12. 30.
-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면적(㎡)	시설계획			비 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시설명	
기 정	276,970.9	49,646.04 (17.92%)	336,459.48 (72.61%)	기존 본관동 포함 52동	지상층 연면적 201,097.95㎡
변 경	276,970.9	50,429.16 (18.21%)	343,531.02 (73.84%)	기존 본관동 포함 50동	지상층 연면적 204,514.48㎡

※ 주요 변경내용

- 금회 사업내용
 - 교육센터 신축 : 1동(지하2층/지상4층), 건축면적 1,617.17㎡, 연면적 9,111.22㎡
 - 발전기실 등 철거 : 3동(지상2층), 건축면적 834.05㎡, 연면적 2,039.68㎡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84,064.9	276,97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대지	63,718.0	63,718.0	국방부장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2	도로	2,891.3	782.9	국방부장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3	도로	543.1	543.1	국방부장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1	대지	23,655.2	23,655.2	국방부장관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3	대지	2,756.0	2,756.0	국방부장관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4	대지	1,901.5	1,901.5	국방부장관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5	대지	2,199.7	2,199.7	국방부장관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5-1	대지	33,588.9	32,141.6	국방부장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	대지	15,299.7	15,259.4	국방부장관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4	도로	17,070.3	13,455.4	국방부장관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9	대지	30,476.0	30,476.0	국방부장관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1	대지	17,300.2	7,851.8	국방부장관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2	대지	13,255.2	13,255.2	국방부장관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	대지	1,510.7	1,510.7	국방부장관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1	대지	58,021.3	3,452.3	국방부장관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4	대지	10,145.4	10,145.4	국방부장관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5	대지	3,071.1	3,071.1	국방부장관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6	대지	416.5	416.5	국방부장관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5	대지	1,471.1	109.6	국방부장관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65	대지	4,393.5	3,418.0	국방부장관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1	대지	39,661.0	14,956.5	국방부장관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2	대지	4,934.0	4,934.0	국방부장관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4	대지	7,206.6	7,206.6	국방부장관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5-1	대지	859.7	859.7	국방부장관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1	대지	10,637.0	10,637.0	국방부장관	
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	대지	6,576.2	2,114.7	국방부장관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2	대지	284.9	284.9	국방부장관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	대지	7,083.7	2,721.0	국방부장관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781	도로	3,137.1	3,137.1	국방부장관	

◆ 강북구고시 제2017-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738호(1963.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108호(2016.7.7.), 제2016-187호(2016.12.29.)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고, 강북구공고 제2017-240호(2017. 3.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 공고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비고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강북구 미아동 245-73번지 외 2필지 일대	폭 12m~16m 연장 40m	강북구고시 제2016-187호 (2016.12.29.)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245-73	임야	449.5	449.5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23-5	보승사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의한 추가
2	미아동 245-74	대지	0.8	0.8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23-5	보승사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의한 추가
3	미아동 245-75	대지	72	72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23-5	보승사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의한 추가

□ 위치도



◆ 은평구고시 제2017-33호

양천리누리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77호(2007. 8. 16.)로 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3호(2010. 2. 4.)로 공원조성계획(최초)이 결정되어 은평구 고시 제56호(2015. 7. 30.)로 공원조성 완료 고시된 양천리누리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양천리누리터 어린이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81-4호

다. 면 적 : 5,153.3m²

라. 주요 변경내용

- 1) 산책로 면적 증가 : 27.04m²
- 2) 녹지면적 감소 : 27.04m²
- 3) 시설율 증가 : 0.52%

마. 변경사유 : 공원 인접지에 서울녹원초등학교 신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마을결합형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공원 환경을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도모

바. 공원조성계획(변경)도



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5,153.30	2,762.92	-	-	-	175	5,153.30	2,789.96	-	-	-	176	
기반 시설	소계	1043.29	1043.29	-	-	-	1,043.29	1070.33	-	-	-	-	
	산책로	623.22	623.22	-	-	-	650.26	650.26	-	-	-	-	증 27.04㎡
	광장	420.07	420.07	-	-	-	420.07	420.07	-	-	-	-	
조경시설	380.55	380.55	-	-	-	107	380.55	380.55	-	-	-	107	
휴양시설	617.36	617.36	-	-	-	15	617.36	617.36	-	-	-	15	
관리시설	-	-	-	-	-	38	-	-	-	-	-	38	
운동시설	23.60	23.60	-	-	-	3	23.60	23.60	-	-	-	4	
유치시설	698.12	698.12	-	-	-	12	698.12	698.12	-	-	-	12	
녹지· 기타	2,390.38	-	-	-	-	-	2,363.34	-	-	-	-	-	감 27.04㎡
공원시설율 (법정60%)	53.62 %						54.14 %						

◆ 서대문구고시 제2017-4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호 및 서울시 고시 제251호(2016.8.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2-56호(2012.3.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안산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7-188호(2017. 2. 16.)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41-29번지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안산도시자연공원(송죽원)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0,2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사. 사업의 주요내용 : 공원 조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홍제동 산41-29	임	3,236	3,236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홍제동 산41-30	임	2,555	2,555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홍제동 산41-28	임	3,101	1,259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홍제동 산41-2	임	33,835	3,150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 서대문구고시 제2017-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2-32외 12필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와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결정 취지

- 서대문구 홍제동 192-32외 12필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경로당의 설치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휴게시설 및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공지	휴게공간	홍제2동 192-32 외 7필지	홍제2동 192-32 외 3필지	398	감)121	179	2005.06.02. (서고 제2005-71호)	
	②				홍제2동 194-2 외 2필지			98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398㎡ → 277㎡ (감 121㎡)	- 장기미집행 시설인 공공공지에 사회복지시설(경로당)을 신축하고 주민휴게 공간을 확보하고자 변경결정	
②		- 시설 분할 277㎡ → 공공공지 ① : 179㎡ → 공공공지 ② : 98㎡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결정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사회복지 시설	홍제2동 192-32 외 9필지	0	증)236	236	-	노인종합 커뮤니티센터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범위 결정 조서

시 설 명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사회복지시설	50%	250%	8m, 2층 이하	노인종합 커뮤니티센터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③	사회복지 시설	- 시설 신설 : 236㎡ - 건축범위 결정 : 건폐율 50%, 용적률 250% 높이 8m, 2층 이하	- 장기미집행 시설인 공공공지에 사회복지 시설(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시설 신규 결 정	

다.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기 결정도면과 변동없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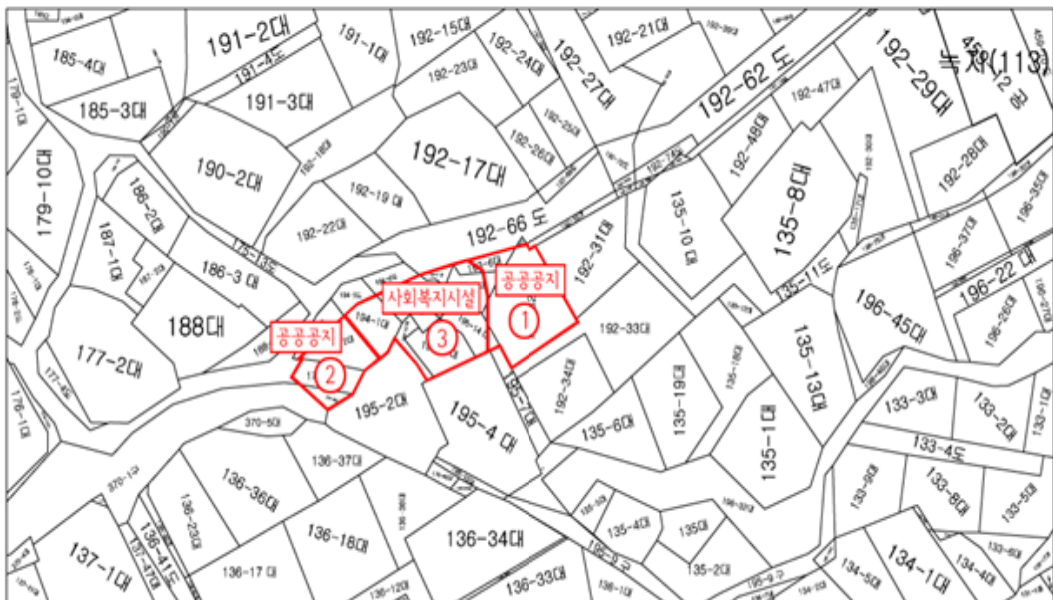
라.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330-1644), 푸른도시과(☎ 330-1907)

□ 지형도면

기 정



변 경



◆ 양천구고시 제2017-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조서
가. 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목 동 717-21	111.4	감) 111.4	-	2001.1.10. (서고시 제2307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나.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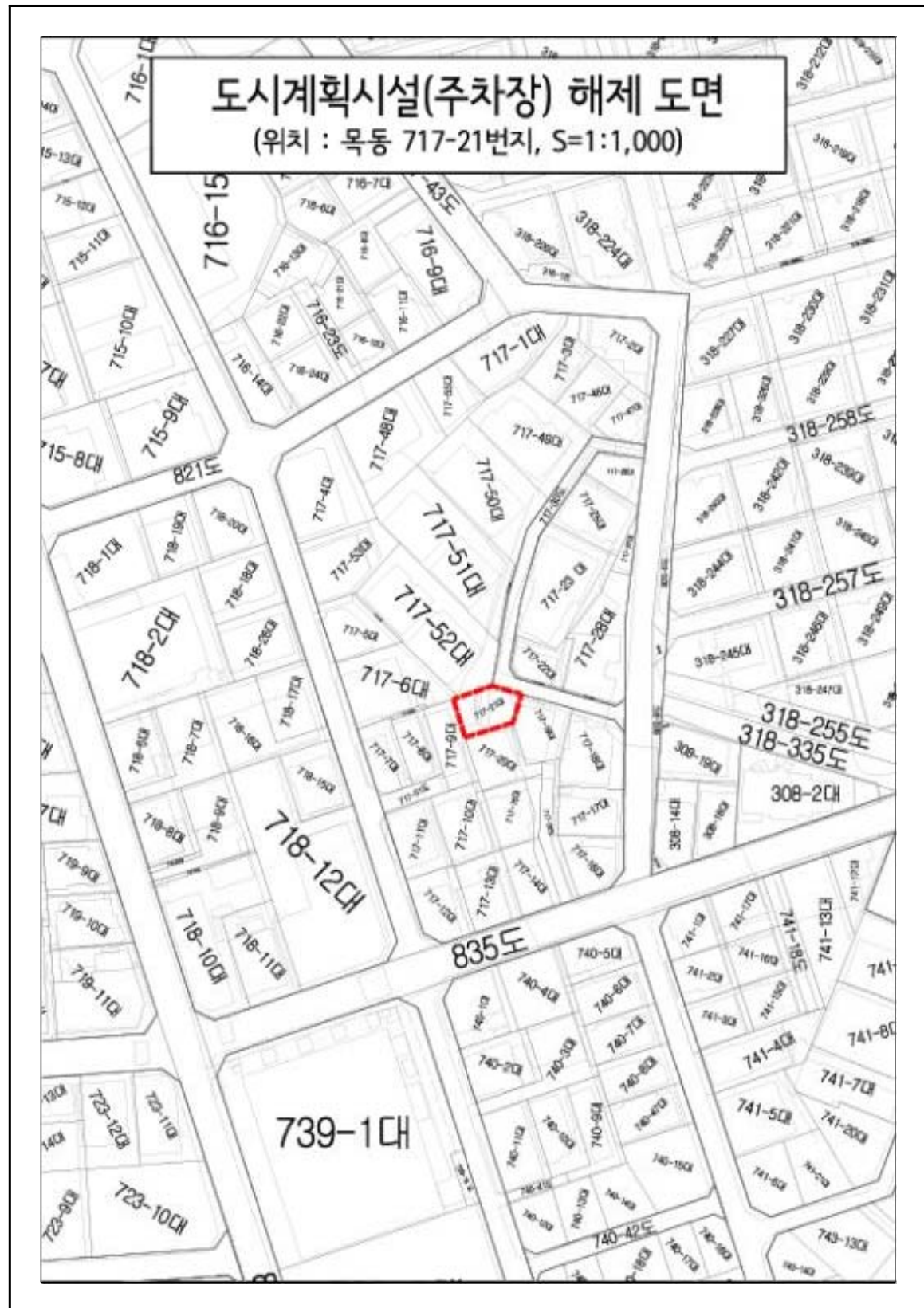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은 소규모 부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양천구 의회 의견청취결과 해제권고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 모하고자 함

2.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 할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2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 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고시 제2017-21호

신정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2-302(2012.11.8.)호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서울시 고시 제 2014-242(2014.6.26.)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및 양천구 고시 제2015-44 (2015.7.30.)호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된 「신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수립되었기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 지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양 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신정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원
3. 면 적 : 33,844㎡
4. 시 행 자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5. 시 행 방 식 : 환지방식(평가식)
6.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2014.6.26.) ~ 환지처분일(2017.12.31.)
7. 환지계획

환 지 전					기 정		변 경		
구분	소유자별	지목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비고
총 계			33,844.0	108	33,844.0	9	33,844.0	9	
집단 환지	사 유 지	대	18,356.0	62	16,140.7	1	17,051.4	1	공동주택
		잡	7,584.0	8	3,926.3	1	3,015.6	1	체비지
		전	4,479.0	10					
		임	645.0	6					
		도	28.0	2					
	계		31,092.0	88	20,067.0	2	20,067.0	2	
금전 청산	사 유 지	임	1,158.0	6					
		잡	47.0	1					
	기획재정부	대	51.0	(2)					이지목
	국토교통부	도	3.0	(1)					이지목
	양 천 구	차	183.5	(1)					이지목
		도	465.0	2					
		잡	111.6	1					
	서울특별시	공	91.0	(2)					이지목
	계		2,110.1	10(6)					

환 지 전					기 정		변 경		
구분	소유자별	지목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비고
합 계			33,202.1	98	20,067.0	2	20,067.0	2	
도시 기반	서울특별시				4,374.0	1	4,374.0	1	도로
					3,968.0	2	3,968.0	2	공원
					210.0	1	210.0	1	주차장
					195.0	1	195.0	1	공공공지
					3,530.0	1	3,530.0	1	임대주택
					1,500.0	1	1,500.0	1	문화복합
	계				13,777.0	7	13,777.0	7	
법33조 토지	기획재정부	대	62.0	4					
	국토교통부	도	77.0	2					
	양 천 구	차	210.0	1					
	서울특별시	임	155.1	1					
		공	138.0	2					
	계		642.1	10					
합 계			642.1	10	13,777.0	7	13,777.0	7	
지적 불부합 면적			- 0.2						

8. 평균부담률 : 45.3%

9. 기타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21) 및 SH공사주거재생팀(☎3410-73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7-50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06.02)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2008.05.29)로 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84호(2011.09.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6호(2013.0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1호(2014.05.05)로 변경 결정된 우리구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 1차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2017.03.24.)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구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온수동 23번지(외 3필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획지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30%이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온수동 50 번지 일대	550,338	-	550,338	서고 제2005-165호 (2005.06.02)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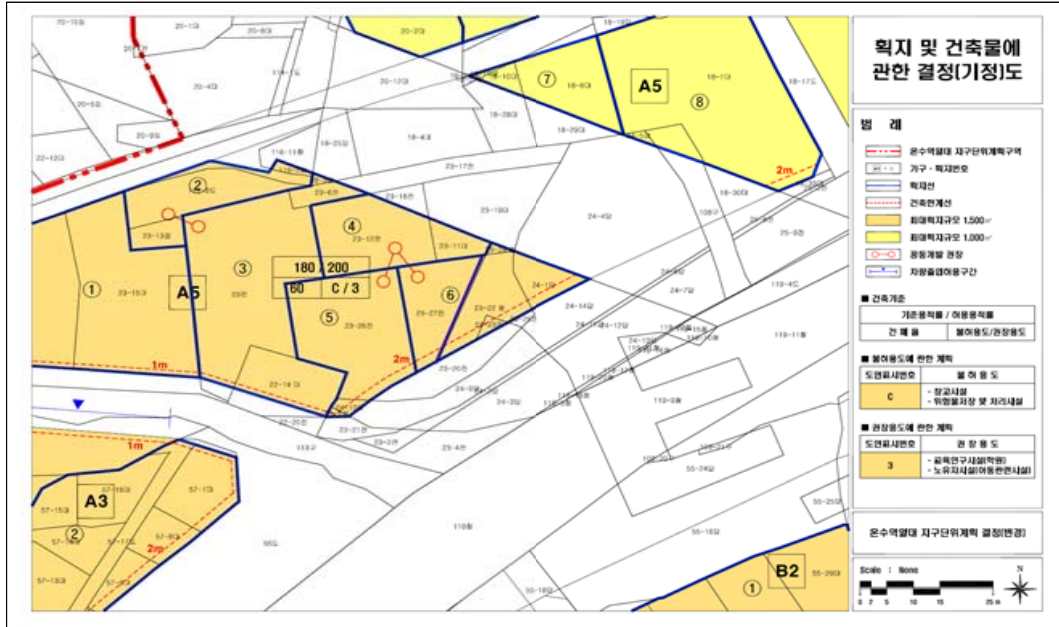
가구 번호	획지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지 번	면적(㎡)	
A5	기정	③	702	온수동 23전	931	- 동일 소유자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해소
			43	온수동 23-6전		
			5	온수동 18-3답		
			181	온수동 22-14대		
	변경	③	702	온수동 23전	750	- 공동개발 미참여자에 대한 획지 분리 - 동일 소유자에 의한 공동건축
			43	온수동 23-6전		
			5	온수동 18-3답		
			181	온수동 22-14대	181	

3.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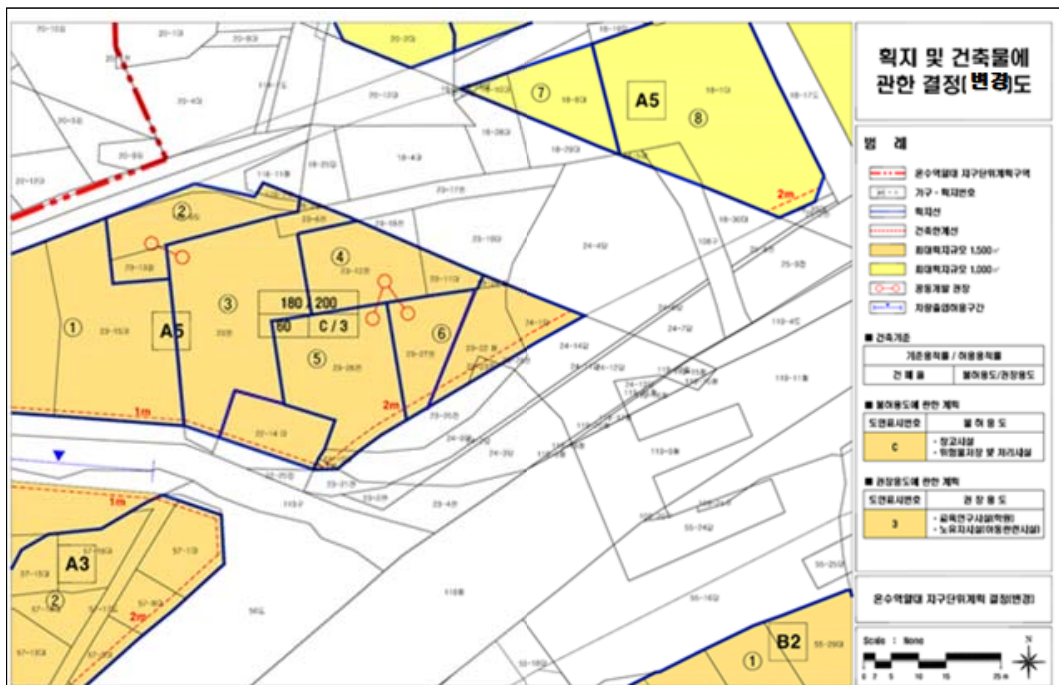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획지계획 결정도(기정 ·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구로구고시 제2017-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어, 구로구고시 제2016-17호(2016.2.4)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로구고시 제2016-137호(2016.9.1)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하여, 구로구공고 제2017-409호(2017.3.9)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76호~551-88호
 ▮ 변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210호~551-88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ㄱ 당초 : 도로개설 폭8m, 연장25m

↳ 변경 : 도로개설 폭8m, 연장5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없음									
1	추가	구로동 551-210	대	103	103	구로구					

물 건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없음										

◆ 서초구고시 제2017-26호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마스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주)·현대건설(주)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와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 초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 마스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주) 대표 장현주 외 1

[현대건설(주) 대표 정수현]

나. 주 소 :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역삼동, PCA라이프타워)/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위치 :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의 25필지

4.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종류	사업내용	비고
주택건설	○ 구역면적 : 9,241.8㎡ ○ 대지면적 : 8,054.74㎡ ○ 연면적 : 99,266.27㎡ ○ 건폐율 : 38.26% ○ 용적률 : 826.94% ○ 주 용 도 : 공동주택(318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480실, 사무소),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4개동, 지하6층/지상18층~33층 -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 전용80㎡형 318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업무시설(사무실) 1개동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차대수 : 725대	

5. 사업시행기간 : 2017. 03. ~ 2019. 12. 예정
6.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초구 서초동 1582-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동 1582-3 일대	-	증)9,241.8	9,241.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	서초동 1582-3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일반상업지역내 노후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241.8	-	9,241.8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9.0	-	69.0	0.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172.8	-	9,172.8	99.3	

2)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보조 간선	1,825 (-)	서초동 1582-2	서초동 1337-34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1	1	20~23	보조 간선	1,825 (95)	서초동 1582-2	서초동 1337-34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A	6~8.6	국지 도로	61	서초동 1582-26	서초동 1592-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B	6~8	국지 도로	65 (58)	서초동 1596-2	서초동 1592-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41 (107)	서초동 1596-8	서초동 1582-25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66 (-)	서초동 1596-8	서초동 1596-9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62 (-)	서초동 1582-27	서초동 1582-2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57 (-)	서초동 1592-17	서초동 1592-20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3	4~6	국지 도로	57 (29)	서초동 1592-17	서초동 1592-20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50	서초동 1582-5	서초동 1582-6	일반 도로		-	

주) ()는 구역내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 변경 - 폭원 : 20~23m - 연장 : 1,825m(95m)	사임당로 확폭에 따른 폭원 및 선형 변경
-	소로 3-A	- 신설 - 폭원 : 6~8.6m - 연장 : 61m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B	- 신설 - 폭원 : 6~8m - 연장 : 65m(58m)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2	소로3-2	- 변경 - 연장 : 66m(-)	통합개발에 따른 도로분리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2	소로3-4	- 변경 - 연장 : 62m(-)	통합개발에 따른 도로분리로 인한 도로명 및 연장 변경
소로3-3	소로3-3	- 변경 - 폭원 : 4~6m - 연장 : 57m(29m)	도로확폭에 따른 폭원 및 선형 변경
소로3-1	-	폐지	통합개발에 따른 도로폐지

주) ()는 구역내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② 공간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노외주차장	서초동 1592-1	561.6	감)561.6	-	2003.3.31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노외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561.6㎡	임시 폐지중인 주차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획지 ①	서초구 서초동 1582-3 외 23필지	8,054.7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①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전용시설(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설치제공업소,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 운수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갯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묘지관련시설	
	권장용도 (1)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② 건폐율 결정조서

획지번호	계획 내용	비고
①	60% 이하	

③ 용적률 결정조서

획지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①	기준용적률	530% 이하	
	허용용적률	700% 이하	
	상한용적률	830% 이하	

④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획지번호	계획 내용	비고
①	최고높이 100m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공고 (서울시공고 제2015-1586호) 적용 기준높이(91.8m)+높이완화(공개공지(9.3m)) = 101.1m > 건축계획 : 99.8m

⑤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조서

획지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①	건축한계선	획지 전구역 건축한계선 3m	

⑥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획지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사임당로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건축물 외관	재료 /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야간 조명	- 폭 20m이상 도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건축 설비	- 에어컨 실외기 등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 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 금지	
	기타	옥외 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⑦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세분		운영기준		비고	
계 획 유 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n=획지내 필지수, n=20 → α=0.1 n=21 → α=0.2 n=22이상 → α=0.3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1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위치 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필로티 구조 α=2 •개방형 구조 α=3	
		건축 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5		•건축선 준수에 의한 후퇴부분 면 적으로 산정	
		공공보행 통로 (보차혼용 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3			
친 환 경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등	인증시	구분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기준용적률 × 0.08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기준용적률 × 0.08	기준용적률 × 0.06	기준용적률 × 0.10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기준용적률 × 0.04	기준용적률 × 0.08
				4등급	—	—	기준용적률 × 0.06
				5등급	—	—	기준용적률 × 0.04
		중수도시설 설치	인증시	기준용적률× 0.04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 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인증시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 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 지면적×0.02이상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설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0.2		•기준용적률 × 0.05이내			

주) 인센티브 유형은 계획유도 및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분하며,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 계획

■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187.1㎡ (순부담)	· 1,187.1㎡	
가중치	0.9626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69.0 \times 250\%) + (1,118.1 \times 700\%) / 1,187.1\} / 700\%$ = 0.9626	
α	0.1474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1,187.1 / (9,241.8 - 1,187.1) = 0.1474$	
상한 용적률	829.1%이하	· 상한용적률 = $700\% \times (1 + 1.3 \times 0.9626 \times 0.1474)$ = 829.1%	

주)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 또는 교환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 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① 전면공지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사임당로) : 폭 3m - 이면도로변(반포대로18길) : 폭 3m	

② 차폐조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차폐조경	전면공지를 제외한 대지경계선 : 폭 3m	

③ 공공보행통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대지 동서방향 : 서측 도로변에서 동측 도로변까지 폭 4m - 대지 남북방향 : 남측 도로변에서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까지 폭 3m	

④ 공개공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주요 보행 결절점에 지정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사항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사임당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② 주차출입구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주차출입구간	• 이면도로변(반포대로18길) : 2개소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에 의한 설치 권장	
담장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설치 권장	

4)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분	면적(㎡)	순부담율(%)	비고
중로 1-1	286.4	3.1	
소로 3-A	435.3	4.7	
소로 3-B	405.4	4.4	
소로 3-3	60.0	0.6	
합 계	1,187.1	12.8	

※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및 순부담율이 변경될 수 있음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계획 내용	비고
대지의 분할·합병·교환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신설, 폐지 포함)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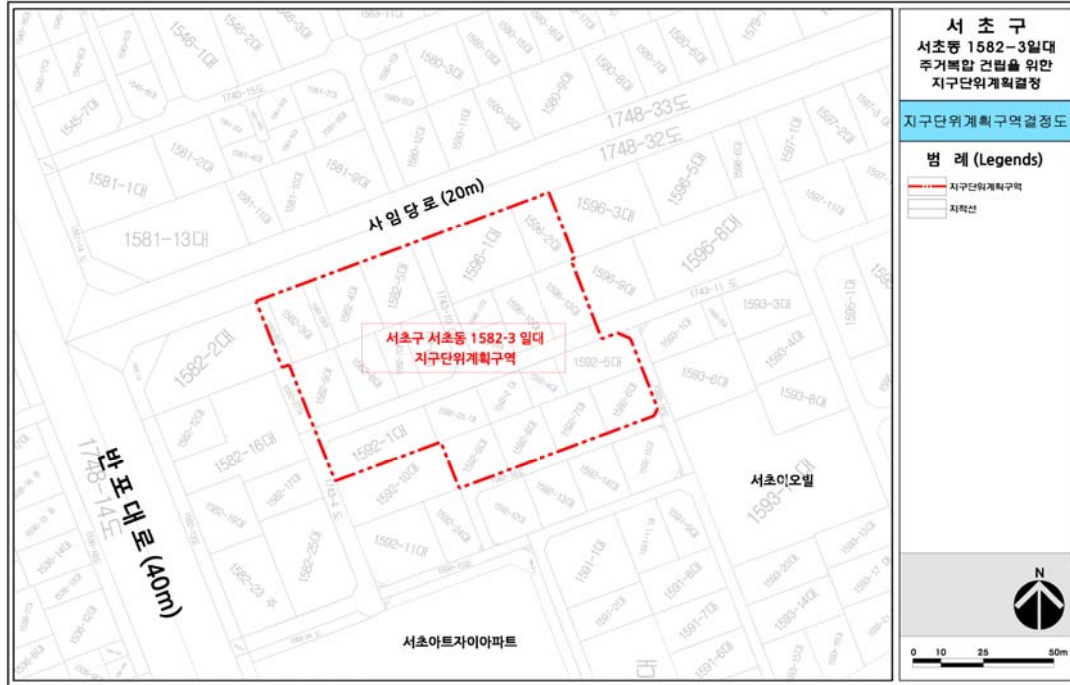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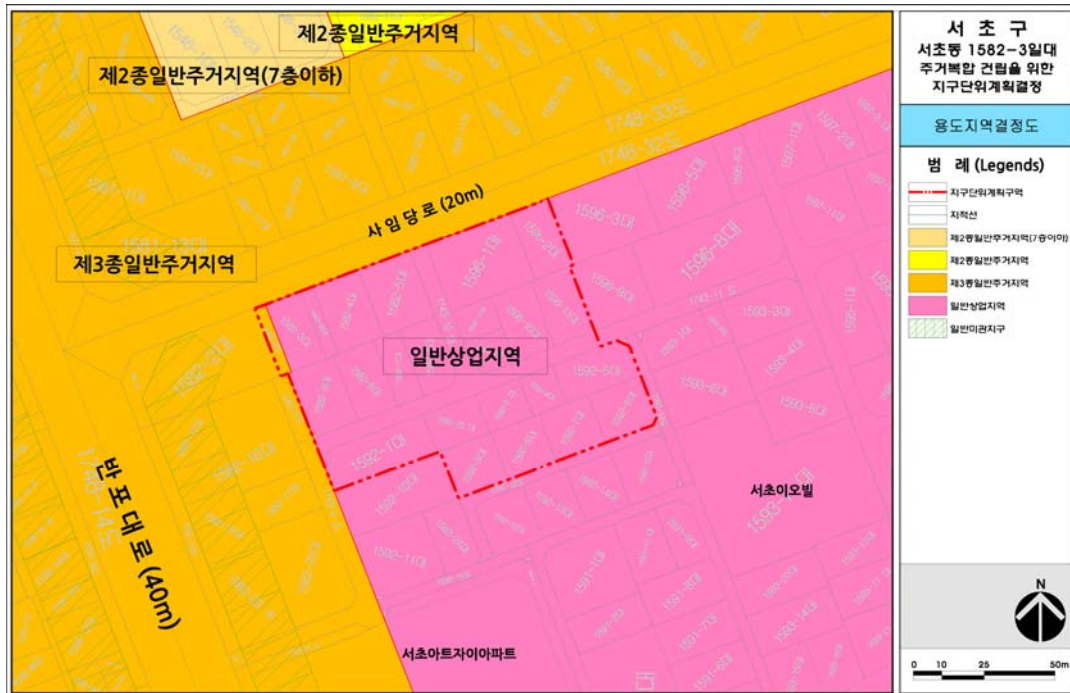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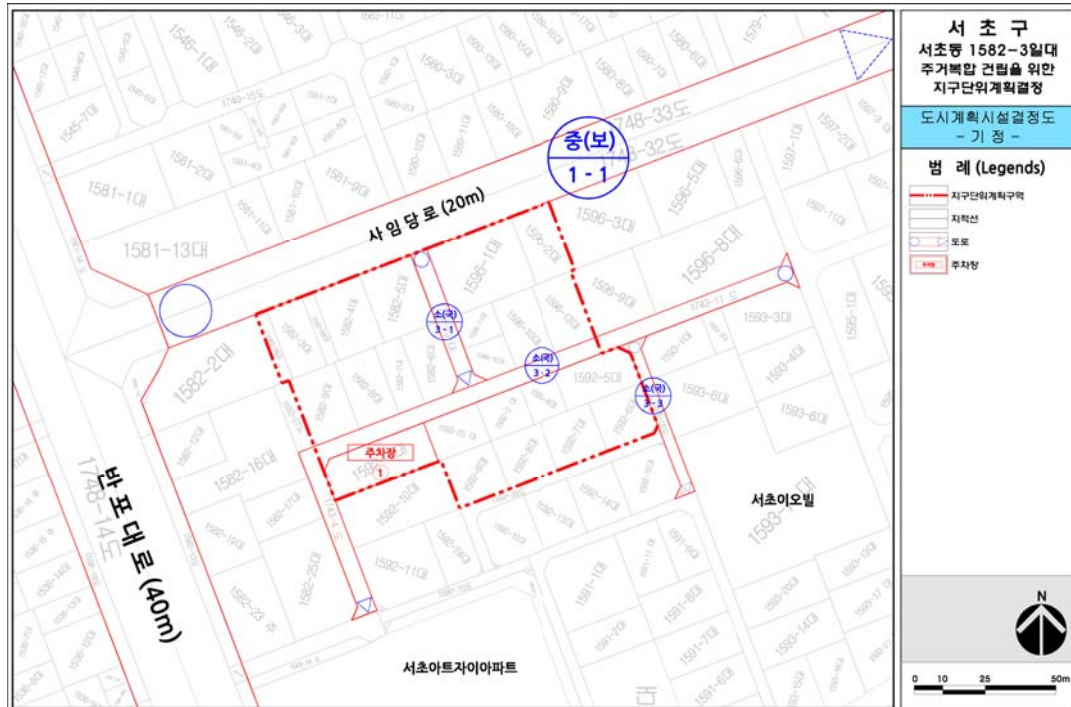
- 붙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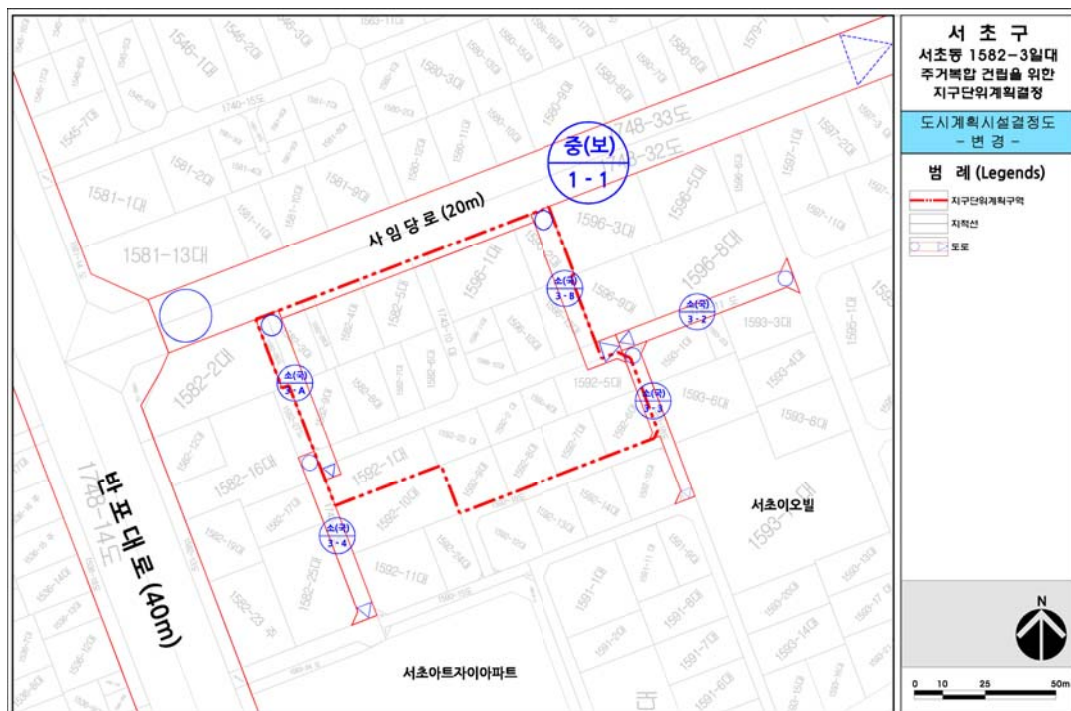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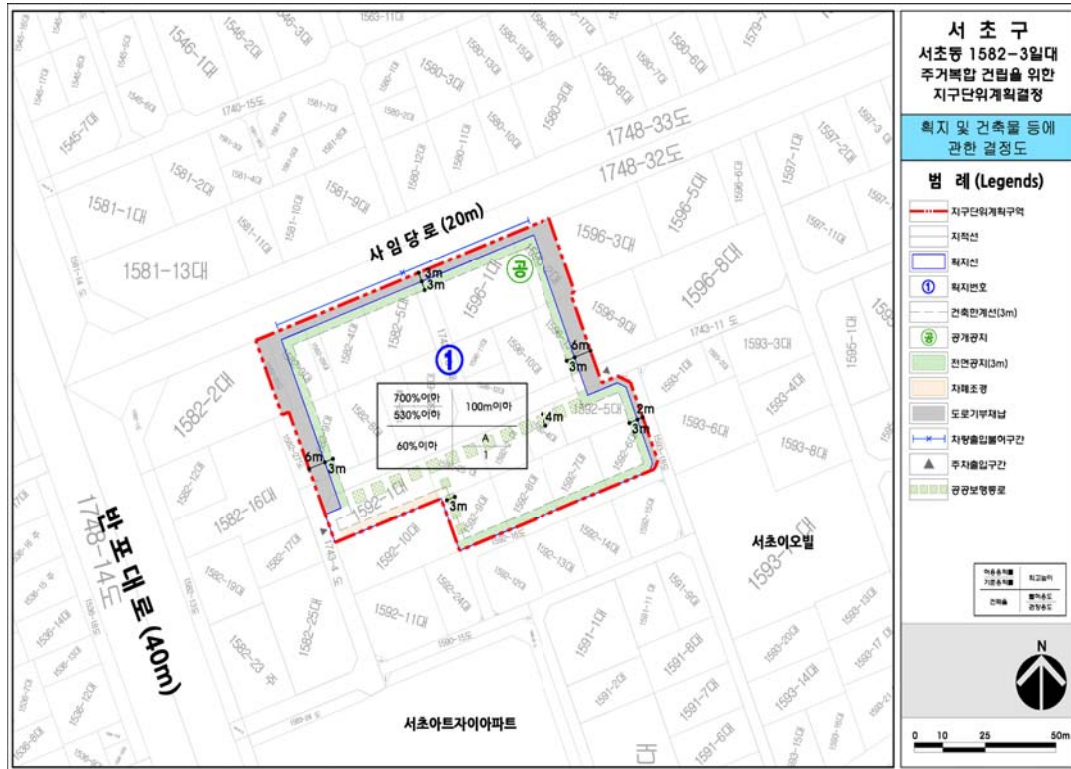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송파구고시 제2017-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643호(1983.11.21.)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7-14호(2017.02.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 : 잠실롯데 종합관광 유통시설 공사)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송 파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명 칭 : 잠실롯데 종합관광 유통시설 공사
- 다. 면적 및 규모

○사업부지 면적 (변경없음)

토지 소재지	면 적(㎡)	비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128,246.20	변경 없음

○사업의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76,940.47	76,940.47	변경 없음
건축연면적	584,138.36	584,204.23	증65.87
시장연면적	340,664.42	340,664.42	변경 없음
비도시계획시설	243,473.94	243,539.81	증65.87
층 수	지하4층/지상33층	지하4층/지상33층	변경 없음
용 도	숙박시설,판매시설 외	숙박시설,판매시설 외	변경 없음

※ 금회 변경내용: 어드벤처동 지하2층 위락시설(유원시설) 65.87㎡ 증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성명		소재지	
법인의명칭	대표자	주소	비고
(주)호텔롯데	송용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변경없음
(주)호텔롯데(롯데월드)	박동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올림픽로 240(잠실동)	변경없음
롯데쇼핑(주)	이원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1(소공동)	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17.12.31.(예정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없음)

지번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128,246.20	(주)호텔롯데 롯데쇼핑(주)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27) 및 도시계획과(☎ 02-2147-2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17-4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1호(2007.8.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강동구 공고 제2017-257호(2017.2.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37번지 외 2필지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 외 2필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명일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당 초 : 토지보상 8,357㎡
 - 변 경 : 토지보상 2,073㎡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아.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권 리명세	
	계	3필지		8,357	8,357						
당초	1	산37	임	5,950	5,950	이선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101동 1506호(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993.33/ 5950	
						알렉산더 훈강	미합중국 7800 케논 크로버 드라이브 베커스필드 캘리포니아 93313			990/ 5950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 리명세	
당초	1	산37	임	5,950	5,950	전광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A동 1203호(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793.33/5950	
						이승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11-8(수택동)			1190/5950	
						김재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101동 1001호(정릉동, 정릉푸르지오아파트)			661.09/5950	
						김상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길 12-8(보문동1가)			661.09/5950	
						김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05, 1201호(공덕동, 백상프로포즈오피스텔)			661.16/5950	
변경	1	산37	임	5,950	1,050	이선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101동 1506호(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993.33/5950	
						알렉산더 훈강	미합중국 7800 케논 크로버 드라이브 베커스필드 캘리포니아 93313			990/5950	
						전광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A동 1203호(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793.33/5950	
						이승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11-8(수택동)			1190/5950	
						김재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101동 1001호(정릉동, 정릉푸르지오아파트)			661.09/5950	
						김상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길 12-8(보문동1가)			661.09/5950	
						김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05, 1201호(공덕동, 백상프로포즈오피스텔)			661.16/5950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당초	2	162-1	전	463	463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변경	2	162-1	전	463	463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당초	3	산50	임	1,944	1,944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변경	3	산50	임	1,944	560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지장물(건축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건 물 면 적(㎡)		소 유 자		세대주	세대원	용 도	구조
			계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성 명	주 소				
당초	1	162-1	53.55㎡	주거용	김옥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71(상일동)			주거용	
				화장실						
				창 고						
				관정						
변경	1	162-1	53.55㎡	주거용	김옥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71(상일동)			주거용	
				화장실						
				창 고						
				관정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7-258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중 구 청 장

가.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나. 공고의 기간 : 2017. 4. 4. ~ 2017. 5. 4. (31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건물번호 이하 생략)
1	2016-서울중구-0055(대부업)	코아파트너스대부㈜	김*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1602호
2	2016-서울중구-0076(대부중개)	진영크레딧대부	백*진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43, 218호
3	2014-서울중구-0135(대부업)	에스투앤대부	송*식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1403호
4	2014-서울중구-0136(대부중개)			
5	2016-서울중구-0079(대부업)	럭키편대부	홍*의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21-7, 102호
6	2016-서울중구-0080(대부중개)			
7	2016-서울중구-0100(대부업)	글로벌스타대부	홍*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2743R-18호
8	2016-서울중구-0101(대부중개)			
9	2014-서울중구-0088(대부업)	마이인베스트먼트대부	이*송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 521호

라.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마. 소재확인 통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5층 시장경제과(예관동, 중구청)
- 담당자 : 오태진 (☎ 02-3396-5074, FAX : 02-3396-8685)
- 통지기한 : 2017년 5월 4일(목) 까지

바. 공시송달 내용

- 1) 위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소재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 등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성동구공고 제2017-2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17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동구 용답동 39-15번지 외 4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61)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39-15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다. 사업의 규모 : 447.6㎡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시장(사무수임자 성동구청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 별첨

사.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61)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용답	39-13	대	94.9	94.9	용답동 용답21길 3-3 (용답동)	고순상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담심리역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황명자	근저당권		
									황명자	근저당권		
2	용답	39-14	대	106.8	106.8	용답동 용답21길 3 (용답동)	이상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용답동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용답동 용답21길 3 (용답동)	최은주					
3	용답	39-15	대	151.1	151.1	용답동 용답21길 1 (용답동)	박춘호	성동구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	용답	39-16	대	64.1	64.1	용답동 39-16	김상규	성동구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5	용답	39-27	대	30.7	30.7	용답동 39-16	김상규	성동구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별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1	용답동 39-13	건물 (지하1층)	연외조	11.57	11.57	창고	용답21길 3-3 (용답동)	고순상 이미숙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답십리역지점)	주식회 사 하나는 행	근저당권	
		건 물 (1층)		54.15	76	주거						
		건물 (2층)		-	59	주거						
		기건물 (지붕층)	판넬 등	-	29	주거			용답동 용답21길 3-3 (용답동)	화명자		
			조립식	-	4	창고						
2	용답동 39-14	건물 (지하1층)	연외조	25.79	27	공장 및 사무실	용답동 용답21길 3 (용답동)	이성호 최은주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용답동지점)	주식회 사 국민은 행	근저당권	
		건물 (1층)		56.36	65	주거						
		건물 (2층)		49.35	78	주거						
		부속건물 (1층)	세멘블럭조	2.7	6	창고						
		부속건물 (1층)	세멘블럭조	-	5	부여						

별첨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3	용답동 39-15	건물 (지하1층)	연와조	67.77	94	주거	용답2길 1 (용답동)	박준호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세마 을금고	근저당권	
		건물 (1층)		81.98	89	주거						
		건물 (2층)		48.93	79	주거						
		부속건물 (1층)	세멘블럭조	-	5	보일러실						
			세멘블럭조	-	1	보일러실						
4	용답동 39-16외 (39-27)	건물 (지하1층)	연와조	11.67	11.67	창고	용답동 39-16	김상규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세마 을금고	근저당권	
		건물 (1층)		56.33	74	주거						
		건물 (2층)		-	62	주거						
		부속건물 (지붕층)	세멘블럭조	-	30	주거						
		부속건물 (지붕층)	세멘블럭조	-	3	창고						

영업권 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류 (사업지등특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용답동 39-14	지하 1층	제조	대일피혁	1식	제조 (피혁임가공)	용답동 39-14	이성호	

◆ 성북구공고 제2017-4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성북구고시 제1978-666호(1978.12.18.)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성북동길 확장공사(성북동266-1~266-2간)”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도로과 (☎ 02-2241-3542)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성북동길 확장공사	성북동266-1 ~ 266-2간	B = 12m→30m L = 30m	서울특별시 고시 제666호 (1978.12.18.)	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2018.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10층 도로과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의 명칭 : 성북동길 확장공사(266-1 ~ 26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66-9	대	20	20	송백채	서울 강동구 고덕로92길 82 (강일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266-1에서 분할
2	성북구 성북동 266-10	대	17	17	송백채	서울 강동구 고덕로92길 82 (강일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266-2에서 분할
3	성북구 성북동 266-11	대	45	45	송백채	서울 강동구 고덕로92길 82 (강일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의 명칭 : 성북동길 확장공사(266-1 ~ 26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66-1	건물	연외조 기와지붕	18.0	상가	송백채	서울 강동구 고덕로92길 82 (강일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2	성북구 성북동 266-4	건물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57.0	상가	송백채	서울 강동구 고덕로92길 82 (강일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 도봉구청 제2017-388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6-140호(2006.4.2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13-14번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도 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 2091-3563)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조서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경	
마들로변 방학동 713-14번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차량출입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마들로변 방학동 713-30,31	차량출입불허구간	공동주차출입구간	차량출입을 위한 공동주차출입구간 신설
마들로변 방학동 713-34,35	방학동 713-35 차량출입허용구간	방학동 713-34,35 공동주차출입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을 공동주차출입구간으로 변경

■ 변경사유서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마들로변 방학동 713-14번지	마들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6m)	이면도로를 통해 차량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미개설에 따른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마들로변으로 차량출입구간을 신설함
마들로변 방학동 713-30,31	공동주차출입구간신설 (6m)	공동개발(권장)으로 지정되었으나 필지별 개별건축을 위하여 마들로변으로 공동주차출입구간을 신설함
마들로변 방학동 713-34,35	공동주차출입구간변경 (6m)	공동개발(권장)으로 지정되었으나 필지별 개별건축을 위하여 차량출입허용구 간을 이동 공동주차출입 구간으로 변경함

※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차량출입불허구간 (기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강서구공고 제2017-466호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65호(1979.04.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서구 가양동 산4-7번지 일대 공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강 서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공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산4-7번지 일대

다. 면 적 : 113,900.0㎡(기정) → 135,002.7㎡(변경)

2.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가. 주요 변경 내용 : 공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산책로 정비, 영유아 놀이터 조성에 따른 공원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 기반시설 : 14,872.0㎡ → 16,337.6㎡ (증1,465.6㎡)
- 조경시설 : 30㎡ → 0㎡ (감30.0㎡)
- 휴양시설 : 6,448.0㎡ → 1,138.0㎡ (감5,310.0㎡)
- 유희시설 : 792.0㎡ → 1,284.1㎡ (증492.1㎡)
- 운동시설 : 2,124㎡ → 1,309.8㎡ (감814.2㎡)
- 교양시설 : 0㎡ → 3,529.5㎡ (증3,529.5㎡)
- 편익시설 : 188㎡ → 107.2㎡ (감80.8㎡)
- 관리시설 : 150.0㎡ → 0㎡ (감150.0㎡)
- 녹지 및 기타 : 89,296.0㎡ → 111,296.5㎡ (증22,000.5㎡)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2600-4185)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강서구 가양동 산4-7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계	113,900.0	24,604.0	172.03	172.03		130,002.7	23,706.2	779.0	880.7	
기	14,872.0	14,872.0	-	-		16,337.6	16,337.6	-	-	증1,465.6㎡
반	12,910.0	12,910.0	-	-		16,337.6	16,337.6	-	-	
시	1,962	1,962	-	-		-	-	-	-	
설	30.0	30.0	-	-		-	-	-	-	감30.0㎡
조경시설	6,448.0	6,448.0	85.45	85.45		1,138.0	1,138.0	-	-	감5,310.0㎡
휴양시설	792.0	792.0	-	-		1,284.1	1,284.1	-	-	증492.1㎡
유희시설	2,124.0	2,124.0	-	-		1,309.8	1,309.8	686.8	788.5	감814.2㎡
운동시설	-	-	-	-		3,529.5	3,529.5	-	-	증3,529.5㎡
교양시설	188.0	188.0	-	-		107.2	107.2	92.2	92.2	감80.8㎡
편익시설	150.0	150.0	86.58	86.58		-	-	-	-	감150.0㎡
관리시설	89,296.0	-	-	-		106,296.5	-	-	-	증17,000.5㎡
녹지 및 기타										
시설율 (법정 40%)	(24,604.0 / 113,900.0) X 100 = 21.60%					(23,706.2 / 130,002.7) X 100 = 18.24%				
건폐율 (법정 10%)	(172.03 / 113,900.0) X 100 = 0.15%					(779.0 / 130,002.7) X 100 = 0.60%				

나.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비고	변 경 후							비고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EA)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EA)	
도로 및 광장	총	계	113,900.0	24,581.85	172.03	172.03			총	계	130,002.7	23,706.2	779.0	880.7		
	소	계	14,872.0	14,872.0					소	계	16,337.6	16,337.6				
	-	도 로	12,910.0	12,910.0					-	도 로	16,337.6	16,337.6				
	가-1	광 장 1	1,584.0	1,584.0							-	-				
	가-2	광 장 2	378.0	378.0							-	-				
조경 시설	소	계	30.0	30.0					소	계	-	-				
	ㄱ	파고라	30.0	30.0			1		-	-	-	-				
	소	계	6,448.0	6,445.58	85.45	85.45			소	계	1,138.0	1,138.0				
휴양 시설	나	정상부 휴식시설	2,952.0	2,952.0					가-1	데크쉼터1	54.6	54.6				
	다-1	간이 휴식시설1	612.0	612.0					가-2	데크쉼터2	185.5	185.5				
	다-2	간이 휴식시설2	1,152.0	1,152.0					가-3	데크쉼터3	136.5	136.5				
	다-3	간이 휴식시설3	918.0	918.0					가-4	데크쉼터4	10.8	10.8				
	다-4	간이 휴식시설4	684.0	684.0					나	소악루휴게공간	750.6	750.6				
	1	정자	130.0	127.58	85.45	85.45	1		-	파고라	-	-			2	
	-	장의자	-	-			50		-	등의자	-	-			23	
									-	평의자	-	-			20	
									-	야외테이블	-	-			8	
	소	계	792.0	792.0					소	계	1,284.1	1,284.1				
유취 시설	라	어린이놀이터	792.0	792.0					마	유아놀이터	1,284.1	1,284.1				
	-	놀이시설	-	-			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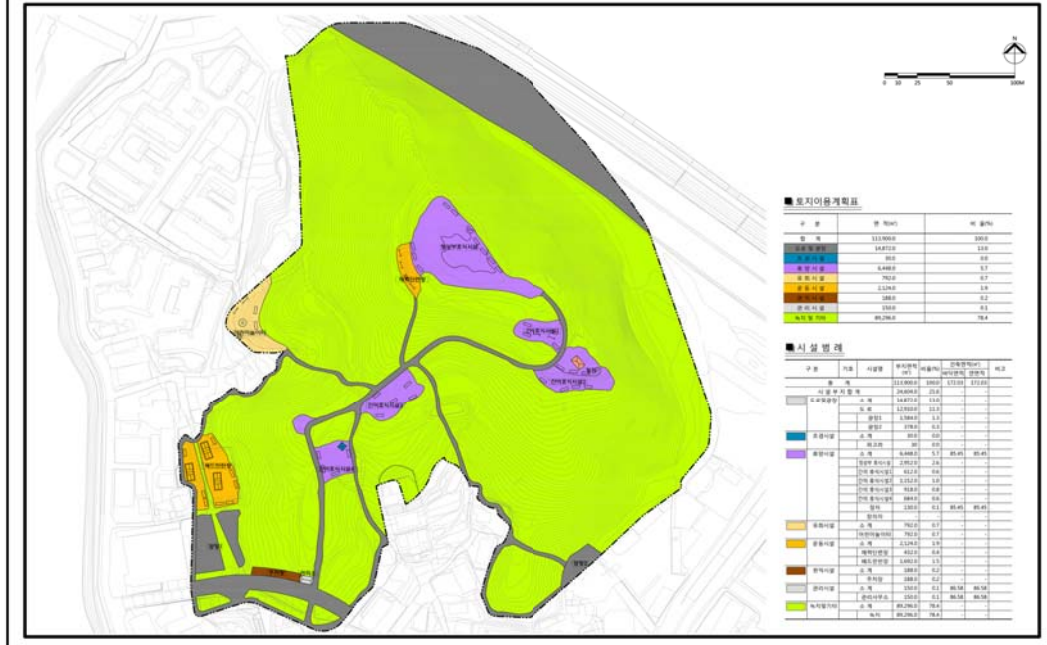
구분	변 경 전							비고	변 경 후							비고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EA)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EA)	
운동 시설	소	계	2,124.0	2,124.0				소	계	1,309.8	1,309.8	686.8	788.5			
	마	체력단련장	432.0	432.0				다	다목적체육관	998.4	998.4	686.8	788.5		신설	
	-	체력단련시설	-	-			5	라-1	체력단련장1	221.1	221.1					
	바	배드민턴장	1,692.0	1,692.0				라-2	체력단련장2	90.3	90.3					
								-	주민운동시설	-	-			17		
								-	역기올리기	-	-			2		
교양 시설								-	철봉	-	-			8		
								-	평행봉	-	-			2		
	소	계						소	계	3,529.5	3,529.5					
								바	양천고성지	3,429.7	3,429.7					
편의 시설								사	야외학습장	99.8	99.8					
	소	계	188.0	188.0				소	계	107.2	107.2	92.2	92.2			
	사	주차장	188.0	188.0				자-1	화장실 1	86.2	86.2	86.2	86.2			
								자-2	화장실 2	6.0	6.0	6.0	6.0			
								자-3	휴먼지털이기	15.0	15.0					
									음수전	-	-			1		
관리 시설	소	계	150.0	130.0	86.58	86.58		소	계	-	-	-	-			
	2	관리사무소	150.0	130.0	86.58	86.58			안내관	-	-			16		
기타 시설	소	계	89,296.0	-				소	계	106,296.5	-					
	-	녹 지	89,296.0	-					녹 지	106,296.5	-					

다. 도로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산책로	신규	4	1	3.0	131.2	603.5	부진입로	소 1-1	부출입구	
	당초	4	2	6.0	180.0	1,280.0	주진입로	가양동 산10	가양동 산9	
	당초	4	3	5.0	190.0	1,184.0	산책로	사양동 산9	가양동 산 8-4	
	신규	4	4	4.5	34.5	190.1	산책로	산 4-3	데크쉼터3	
	신규	4	5	4.0	9.0	59.0	산책로	데크쉼터3	소악루 휴게공간	
	변경	4	6	2.0	98.8	197.5	부진입로	부출입구	산 4-2	
	신규	4	7	1.5	561.6	827.4	산책로	산 4-81-1	가양동 120-88	
	신규	4	8	4.0	129.4	538.3	산책로	산 4-3	산 4-10	
	신규	4	9	1.5	112.4	256.7	산책로	산 4-1	산 4-13	
	변경	4	10	1.5	405.8	650.1	부진입로	산 4-3	산 4-8	
	변경	4	11	1.5	110.4	178.4	산책로	산 4-3	데크쉼터2	
	신규	4	12	2.0	28.1	86.1	산책로	산 4-6	산 4-2	
	신규	4	13	1.4	51.8	72.5	산책로	체력단련장2	체험학습장	
	신규	4	14	1.5	49.5	90.6	부진입로	부출입구	산책로	
	신규	4	15	1.5	25.7	45.9	산책로	산 4-14	산 4-16	
	신규	4	16	1.5	156.5	279.1	산책로	산 4-15	산 4-17	
	신규	4	17	1.3	140.7	220.3	산책로	산 4-16	산 4-7	
	신규	4	18	1.5	52.4	111.6	산책로	산 4-16	산 4-19	
	신규	4	19	1.5	64.0	107.9	산책로	산 4-18	산 4-4	
	신규	4	20	3.0	137.1	415.7	산책로	산 4-16	가양동 1456	
광로	당초		1	60.0	260.0	7,747.0		가양동 439-1	가양동 439-1	
소로	당초	1	1	10.0	128.0	1,280.0		마곡동 산5	가양동 산10	
	기정	합 계			2,255.1	12,910.0				
	변경	합 계			3,069.4	16,3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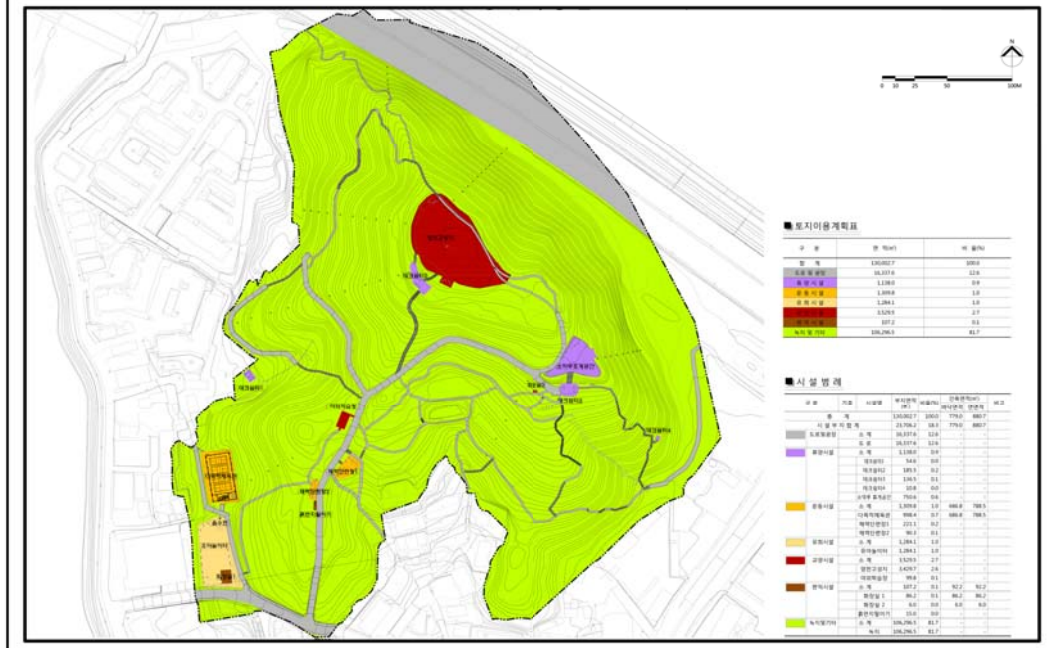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공산근린공원



◆ 강서구공고 제2017-467호

수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7호(2003.12.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49호(1993.08.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서구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 수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강 서 구 청 장

1. 공원현황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수명산근린공원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
- 다. 면 적 : 83,597.0㎡(기정) → 83,807.1㎡(변경)

2.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가. 주요 변경 내용 : 수명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및 소규모 화장실 설치, 산책로 정비 등에 따른 공원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 기반시설 : 4,346.0㎡ → 4,139.3㎡ (감206.7㎡)
 - 운동시설 : 3,096.6㎡ → 3,942.0㎡ (증845.4㎡)
 - 편익시설 : 0㎡ → 78.4㎡ (증78.4㎡)
 - 녹지 및 기타 : 74,497.4㎡ → 73,990.4㎡ (감507.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2600-4185)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강서구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83,597.0	9,099.6	27.0	27.0		83,807.1	9,816.7	813.4	813.4		증210.1
기 반 시 설	소계	4,346.0	-	-		4,139.3	4,139.3	-	-		감206.7㎡
	도로	3,885.0	-	-		3,678.3	3,678.3	-	-		
	광장	461.0	-	-		461.0	461.0	-	-		
조경시설	20.0	20.0	-	-		20.0	20.0	-	-		
휴양시설	1,016.5	1,016.5	-	-		1,016.5	1,016.5	-	-		
운동시설	3,096.6	3,096.6	-	-		3,942.0	3,942.0	758.0	758.0		증845.4㎡
유흥시설	590.8	590.8	-	-		590.8	590.8	-	-		
편익시설	-	-	-	-		78.4	78.4	28.4	28.4		증78.4㎡
관리시설	29.7	29.7	27.0	27.0		29.7	29.7	27.0	27.0		
누지 및 기타	74,497.4	-	-	-		73,990.4	-	-	-		감507.0㎡
시설율 (법정 40%)	(9,099.6 / 83,597.0) X 100 = 10.89%					(9,816.7 / 83,807.1) X 100 = 11.71%					
건폐율 (법정 10%)	(27.0 / 83,597.0) X 100 = 0.03%					(813.4 / 83,807.1) X 100 = 0.97%					

나.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비고	변 경 후						비고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담면적 (㎡)	연면적 (㎡)		공작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담면적 (㎡)	연면적 (㎡)	공작물	
도로 및 광장	총	계	83,597.0	9,099.6	27.0	27.0		총	계	83,807.1	9,816.7	813.4	813.4	
	소	계	4,346.0	4,346.0				소	계	4,139.3	4,139.3			
	-	도 로	3,885.0	3,885.0				-	도 로	3,678.3	3,678.3			
	0-1	광 장 1	276.3	276.3				0-1	광 장 1	276.3	276.3			
	0-2	광 장 2	40.3	40.3				0-2	광 장 2	40.3	40.3			
	0-3	광 장 3	144.4	144.4				0-3	광 장 3	144.4	144.4			
	소	계	20.0	20.0				소	계	20.0	20.0			
	①	팔각정자					2EA	①	팔각정자				2EA	
	②	파고라A					3EA	②	파고라A				4EA	1EA추가
	③	수목보호덮개					2EA	③	수목보호덮개				1EA	
조경 시설	④	석교					1EA	④	석교				1EA	
	⑤	목재데크					1식	⑤	목재데크				1식	
	⑥	목계단					382단	⑥	목계단				382단	
	⑦	수로					1식	⑦	수로				1식	
	⑧	우물정비					1식	⑧	우물정비				1식	
	⑨	연못					1식	⑨	연못				1식	
	⑩	로생백쌓기					1식	⑩	로생백쌓기				1식	
	⑪	로포난간					191경간	⑪	로포난간				191경간	1경간=2m
	⑫	웬스 A type					56경간	⑫	웬스 A type				56경간	1경간=2m
	⑬	웬스 B type					50경간	⑬	웬스 B type				50경간	1경간=2m
	⑭	조경석쌓기A					1EA	⑭	조경석쌓기A				1EA	
	⑮	조경석쌓기B					1EA	⑮	조경석쌓기B				1EA	
	⑯	조경석쌓기C					362.33ton	⑯	조경석쌓기C				362.33ton	
	⑰	점토블럭계단A					1EA	⑰	점토블럭계단A				1EA	
	⑱	자연석계단A					1EA	⑱	자연석계단A				1EA	
	⑲	자연석계단B					1EA	⑲	자연석계단B				1EA	
	㉔	핸드레일B					1EA							

구분	변 경 전						비고	변 경 후						비고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 시설	소	계	1,016.5	1,016.5				소	계	1,016.5	1016.5				
	2-1	휴 게 소 1	514.0	514.0				2-1	휴 게 소 1	514.0	514.0				
	2-2	휴 게 소 2	187.4	187.4				2-2	휴 게 소 2	187.4	187.4				
	2-3	휴 게 소 3	231.7	231.7				2-3	휴 게 소 3	231.7	231.7				
	2-4	휴 게 소 4	38.4	38.4				2-4	휴 게 소 4	38.4	38.4				
	2-5	휴 게 소 5	45.0	45.0				2-5	휴 게 소 5	45.0	45.0				
	㉑	평의자					22EA	㉑	평의자					25EA	3EA추가
	㉒	등의자					19EA	㉒	등의자					17EA	
	㉓	앞음벽					90.5m	㉓	앞음벽					90.5m	
	㉔	야외탁자					5EA	㉔	야외탁자					4EA	1EA철거
운동 시설	소	계	3,096.6	3,096.6				소	계	3,942.0	3,942.0	758.0	758.0		
	3-1	운동구역 1	198.4	198.4				3-1	운동구역 1	198.4	198.4				
	3-2	운동구역 2	402.9	402.9				3-2	운동구역 2	402.9	402.9				
	3-3	운동구역 3	1,231.0	1,231.0				3-3	운동구역 3	1,231.0	1,231.0				
	3-4	운동구역 4	458.9	458.9				3-4	운동구역 4	458.9	458.9				
	3-5	운동구역 5	740.7	740.7				3-5	운동구역 5	758.0	758.0	758.0	758.0		변경
	3-6	운동구역 6	64.7	64.7				3-6	운동구역 6	64.7	64.7				
	3-7	운동구역 7						3-7	운동구역 7	186.4	186.4				신설
	3-8	운동구역 8						3-8	운동구역 8	641.7	641.7				신설
	㉕	운동시설1					4EA	㉕	운동시설1					4EA	하리둘리기
	㉖	운동시설2					4EA	㉖	운동시설2					4EA	윗몸일으키기
	㉗	운동시설3					1EA	㉗	운동시설3					1EA	폴마운트
	㉘	운동시설4					2EA	㉘	운동시설4					2EA	팔굽혀펴기
	㉙	운동시설5					2EA	㉙	운동시설5					2EA	철봉
	㉚	운동시설6					2조	㉚	운동시설6					2조	테니스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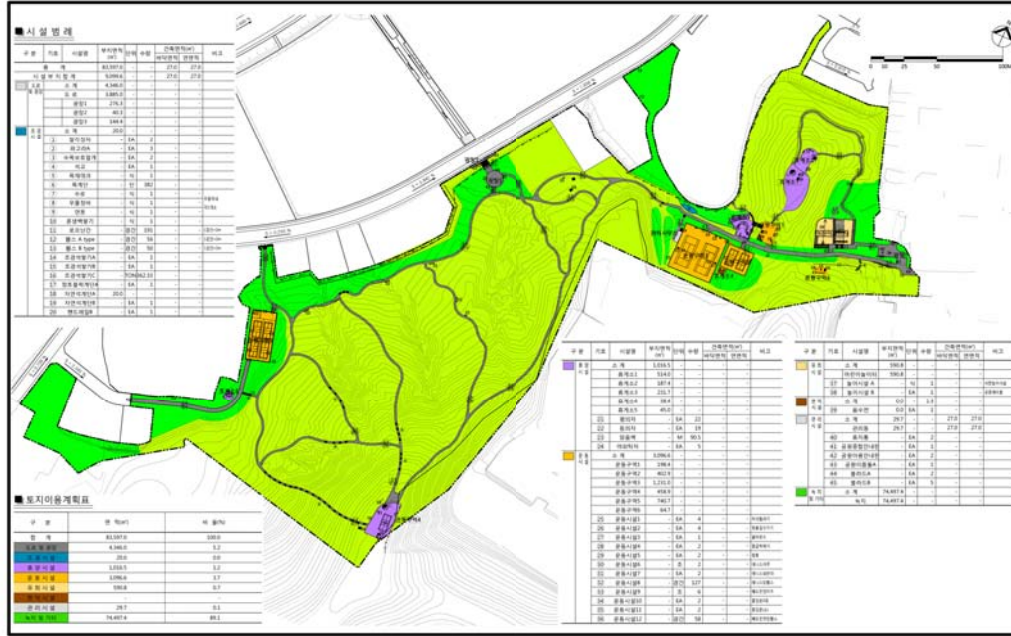
구분	변경 전						비고	변경 후						비고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운동 시설	㉓	운동시설7					테니스심판대	2EA	㉓	운동시설7					2EA	테니스심판대
	㉔	운동시설8					테니스장웬스	127경간	㉔	운동시설8					127경간	테니스장웬스
	㉕	운동시설9					배드민턴지주	6조	㉕	운동시설9					2조	배드민턴지주
	㉖	운동시설10					출입문(대)	2EA	㉖	운동시설10					6EA	주민운동시설
	㉗	운동시설11					출입문(소)	2EA	㉗	운동시설11					8EA	주민운동시설
	㉘	운동시설12					배드민턴장웬스	58경간								
유하 시설	소	계	590.8	590.8					소	계	590.8	590.8				
	4-1	어린이놀이터	590.8	590.8					4-1	어린이놀이터	590.8	590.8				
	㉙	놀이시설A					사면놀이시설	1식	㉙	놀이시설A					1식	사면놀이시설
	㉚	놀이시설B					공중케이블	1EA	㉚	놀이시설B					1EA	공중케이블
편의 시설	소	계	0.0	0.0					소	계	78.4	78.4	28.4	28.4		
									5-1	화장실	63.4	63.4	28.4	28.4		신설
									5-2	휴먼지탈이기	15.0	15.0				신설
	㉛	음수전						1EA	㉛	음수전					3EA	
관리 시설	소	계	29.7	29.7	27.0	27.0			소	계	29.7	29.7	27.0	27.0		
	5-1	관리동	29.7	29.7	27.0	27.0			6-1	관리동	29.7	29.7	27.0	27.0		
	㉜	휴지통						2EA	㉜	휴지통					2EA	
	㉝	공원종합안내판						1EA	㉝	공원종합안내판					1EA	
	㉞	공원이용안내판						2EA	㉞	공원이용안내판					2EA	
	㉟	공원이름돌A						1EA	㉟	공원이름돌A					1EA	
	㊱	블라드A						2EA	㊱	블라드A					2EA	
기타 시설	㊲	블라드B						5EA	㊲	블라드B					5EA	
	소	계	74,497.4	-					소	계	73,990.4					
	6-1	녹지	74,497.4	-					7-1	녹지	73,990.4					

다. 도로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당초	3	진1	2.7	186.0	502.2	진입로	광장1	산책로4	변경없음
	당초	3	진2	5.0	10.0	53.8	진입로	중로2-2	광장4	변경없음
	당초	3	진3	1.5	68.2	102.3	진입로	중로2-2	산책로12	변경없음
	당초	3	진4	3.0	116.6	350.3	진입로	소로1-3	운동구역5	변경없음
	당초	3	연1	2.6	42.0	109.2	연결로	광장1	진입로1	변경없음
	당초	3	연2	2.5	3.0	7.8	연결로	진입로1	운동구역1	변경없음
	당초	3	연3	3.0	5.0	15.0	연결로	운동구역2	진입로1	변경없음
	당초	3	연4	3.0	5.6	16.8	연결로	운동구역3	진입로1	변경없음
	당초	3	연5	1.2	18.2	21.9	연결로	휴게시설2	8단지	변경없음
	당초	3	연6	1.5	21.6	34.0	연결로	진입로1	관리사무소	변경없음
	당초	3	연7	1.5	5.0	7.5	연결로	광장4	산책로12	변경없음
	당초	3	연8	2.0	5.0	10.6	연결로	운동구역5	진입로3	변경없음
	당초	3	산1	1.5	133.5	200.3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1	변경없음
	당초	3	산2	1.5	25.7	38.5	산책로	산책로1	휴게시설2	변경없음
	당초	3	산3	1.5	9.1	13.7	산책로	운동구역1	휴게시설1	변경없음
	당초	3	산4	1.5	357.4	536.1	산책로	진입로1	운동구역4	변경없음
	변경	3	산5	1.5	70.2	105.3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2	폐지
	당초	3	산6	1.5	72.8	109.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3	변경없음
	당초	3	산7	1.5	26.8	40.3	산책로	광장4	산책로13	변경없음
	당초	3	산8	1.5	151.0	226.5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2	변경없음
	당초	3	산9	1.5	113.6	170.4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2	변경없음
	당초	3	산10	1.5	180.4	270.6	산책로	운동구역4	산책로12	변경없음
	당초	3	산11	1.5	92.4	138.6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2	변경없음
	당초	3	산12	1.5	457.8	686.7	산책로	운동구역4	산책로4	변경없음
	변경	3	산13	1.5	67.6	101.4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4	폐지
	당초	3	산14	1.5	10.6	16.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산책로1	변경없음
	당초	합 계			2,255.1	3,885.0				
	변경	합 계			2,117.3	3,678.3				

조성계획도(변경전)

수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수명산근린공원



◆ 구로구공고 제2017-581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7-38호(2017.03.16)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용도변경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고척동 50-4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용도변경 사업

2) 명 칭 : 고척프라자 용도변경 공사

다. 사업의 내용

1) 사업면적 : 3,966㎡

2) 건축물의 규모 : 지하1층/지상5층 2개동, 연면적 11,964.85㎡

3) 용도변경 내용

구 분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동	층별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가	지하1	판매시설(소매시장)	319.5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193.10
				판매시설(소매시장)	126.40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너지강습소)	319.50	운동시설(체력단련장)	319.50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술계학원)	319.50	종교시설(교회)	319.50
나	지하1	제1종근린생활시설(다방)	198	판매시설(소매시장)	198
	1층	판매시설(소매시장)	1,831.50	제1종근린생활시설(한의원)	159.84
				판매시설(소매시장)	1,671.66
	2층	판매시설(소매시장)	1,773.26	운동시설(체력단련장)	456.66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181.50
	3층	판매시설(소매시장)	105.02	판매시설(소매시장)	1,135.10
		대중목욕탕	1,726.48	종교시설(교회)	1,831.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이 종 웅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08번지

마. 사업기간 : 2017.03.16.~ 2017.03.23.

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건축과(☎ 860-2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17-39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번지 일대 금천소방서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 도시계획과 및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금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1553, fax 02-2251-171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02-3706-1328, fax 02-3706-1329)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취지

- 금천구는 서울시 중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로서 금천소방서를 건립하여 구민의 안전 및 소방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사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금천 소방서	금천구 독산2동 1054-8번지 일대	-	증)3,192.0	3,192.0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물의 범위 결정사항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층)	비 고
50% 이하	250% 이하	7층이하 (옥탑층 제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관악구공고 제2017-4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59-5일대)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 2) 면 적 : 2,70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조서 : 따로붙임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합계				2,700					
1	신림동 산159-5	임야	29,855	1,20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2	신림동 산159-34	임야	33,481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 관악구공고 제2017-4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59-5일대)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2) 면 적 : 2,70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조서 : 따로붙임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02-879-6524)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차. 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합계				2,700					
1	신림동 산159-5	임야	29,855	1,20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2	신림동 산159-34	임야	33,481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메트로사장 (토목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방배동)	잠실철교	선박 3척	잠실철교 성능개선을 위한 내진보강공사	2017.4.1.~ 2017.7.6	2017. 3.2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척수)	점용목적	점용기간	
㈜프라이어스이노 베이션	송파구 잠실동 1-2	잠실대교~영동대교남단 1km	-동력선 4척 -무동력 6대	수상레저사업	2017.4.1. ~ 2017.10.31	2017. 3.31.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